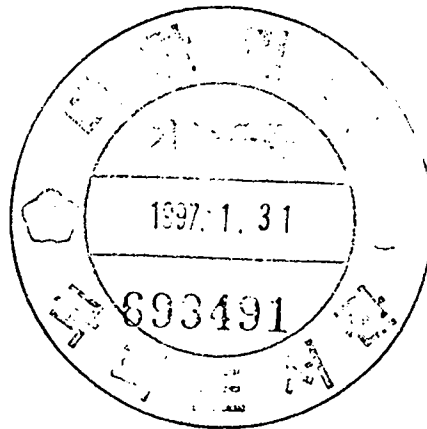


1997년 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6. 11. 18

[농촌개발]

총6권중 제5권



**농 립 부**

##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시책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7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19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7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AFFIS를 통하여 PC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정보센터(전화 02-589-2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례

##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	1
1. 배경 .....	3
2. 특징 .....	5
3. 보완사항 .....	6
4. 해설 .....	12
제1장 총칙 .....	12
제2장 자율사업 .....	16
제3장 공공사업 .....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	23
제5장 보칙 .....	25
[별표]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도 .....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	27
1. 배경 .....	29
2. 농림사업자금 현황 .....	29
3. 주요골자 .....	30
4. 해설 .....	31
III. 시책안내 .....	43
1. 42조원 지원계획 .....	45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	47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	49
4. 농림사업 평가제도 .....	56
[참고자료] .....	57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877호) .....	59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875호) .....	104

##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	117
1. 영농규모적정화(자율) .....	119
2. 농약안전사용장비보급(자율) .....	150
3. 토양개량사업(자율) .....	158
(토양개량제공급, 객토)	
4. 감자원증망실재배농가지원*(자율) .....	179
5. 밭기반정비(공공) .....	187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	203
7. 일반경지정리(공공) .....	218
8. 배수개선(공공) .....	226
9. 수리시설개보수(공공) .....	248
(농조수리시설개보수,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농조저수지준설)	
10.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	297
11. 지표수보강개발(공공) .....	325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	347
13. 대구획경지재정리(공공) .....	366
14. 소규모농업기반시설및농정시책추진(공공) .....	384
(농지관리위원회운영, 공동·항공방제, 지하수개발, 지표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한우쌍자생산, 개량물꼬보급, 지역특화작목개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15. 서남해안간척(공공) .....	476
16. 농지정보화(공공) .....	493
17.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지원*(공공) .....	497
18. 인공씨감자대량생산시설(공공) .....	502
II. 농업기계화 .....	509
19. 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	511
20. 생산자조직농기계구입지원(자율) .....	576
21. 농기계보관창고설치(자율) .....	596
22. 농기계사후관리(공공) .....	606
23. 시설농업기자재생산시설및생산비축지원(공공) .....	627
24.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공공) .....	635
III. 생산및유통개선 .....	639
25. 미곡종합처리장(자율) .....	641
26. 임도정공장시설대체(자율) .....	667
27. 직접지불제실시(공공) .....	675

###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	677
28. 부적지감굴과원정비(자율) .....	679
29.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공공) .....	686
30. 한국자생란보존육성(공공) .....	690
31. 버섯종균접종원생산보급시설(공공) .....	692
32. 화훼계열화(공공) .....	699
II. 생산및유통개선 .....	703
33. 과실생산유통(자율) .....	705
34. 시설채소생산유통(자율) .....	723
35. 양념채소생산유통(자율) .....	746
36. 고랭지채소생산유통(자율) .....	759
37. 화훼작물생산유통(자율) .....	770
38. 특용작물생산유통(자율) .....	791
39. 인삼생산지원(자율) .....	808
40. 농산물규격출하(자율) .....	824
41.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자율) .....	834
42. 과수대표생산(자율) .....	850
43. 인삼종합처리장(공공) .....	859
44.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공) .....	866
45. 농산물공판장건설(공공) .....	883
46. 꽃박람회개최(공공) .....	896
4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	897
48. 과실·화훼판매촉진(공공) .....	903
49.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	907
50.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	920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 수출활성화사업, 수출홍보사업, 해외시장정보조사)	
51. 농산물무역진흥센터건립(공공) .....	947
52. 수출농산물수송체계지원(공공) .....	952
53. 농산물물류센터건설(공공) .....	955
54. 농산물포장센터건설(공공) .....	969
55. 생산자단체출하조절(공공) .....	989
56. 공동규격출하지원(공공) .....	994
57. 출하촉진자금(공공) .....	1008
58.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공공) .....	1013
59. 채소가격안정사업(공공) .....	1018

##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I. 사육기반확충 .....	1025
60. 한우경쟁력강화(자율) .....	1027
61. 젓소경쟁력강화(자율) .....	1041
62. 돼지경쟁력강화(자율) .....	1051
63. 닭경쟁력강화(자율) .....	1061
64. 기타가축육성(자율) .....	1072
6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율) .....	1081
66. 축산분뇨처리시설(공공) .....	1099
67. 축산단지조성(공공) .....	1129
68. 가축계열화(공공) .....	1140
II. 생산및유통개선 .....	1163
69.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공공) .....	1165
70. 도축도매시설개선(공공) .....	1176
(축산물공판장건설, 위생도축시설확충)	
71. 가공판매시설및운영(공공) .....	1188
(가공직판장설치, 계란가공시설, 한우전문판매점설치, 냉장육전문판매점시설개선)	
72. 축산물품질향상및안전성강화(공공) .....	1223
(돼지고기품질개선, 규격돈구매자금, 축산물등급판정,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폐사축위생처리,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부정축산물유통지도단속, 한우고급육생산기술개발, 재래닭품질육용화, 가축개량전산망구축)	
73. 소수급관리전산화(공공) .....	1325
74. 축산경영여건개선(공공) .....	1334
(경영상담지도, 양축농가해외연수, 축사표준설계제도개발보급, 축산자조금, 특수가축 공제시범사업, 가축박람회, 교육홍보사업, 축분처리용膨軟왕겨생산시설)	
75. 축산업협동조합육성지원(공공) .....	1369
76. 사료제조시설설치(공공) .....	1373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음식찌꺼기사료화시설)	
77. 축산기자재생산시설(공공) .....	1385
78. 학교우유급식(공공) .....	1391
79. 사료원료수입(공공) .....	1397
80. 조사사업(공공) .....	1401
(축산물가격및유통현황조사, 축산관측, 축산물생산조사)	
III. 소득원개발 .....	1411
81. 축산경영자금(공공) .....	1413
IV. 가축개량 .....	1417
82. 소정액생산및공급(공공) .....	1419
(한우개량단지운영, 한우정액생산공급, 젓소정액생산공급, 가축개량신기술보급, 가축인공수정사업)	
83. 종축등록및검정(공공) .....	1458
(종축등록, 젓소산유능력검정, 돼지능력검정, 닭경제능력검정, 가축개량협의회운영)	
84. 전문종돈업육성(공공) .....	1476
V. 기타사업 .....	1485
85. 수의기술교육관건립(공공) .....	1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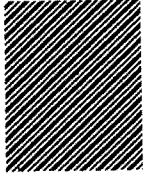
##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및유통개선 .....	1489
86.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차율) .....	1491
87. 농산물가공산업육성(공공) .....	1501
II. 기술개발및정보화 .....	1559
88.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차율) .....	1561
89.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	1568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지역특화시범사업)	
90. 농림수산정보화(공공) .....	1581
91. 농림수산기술개발(공공) .....	1585
92. 기술지도사업*(공공) .....	1595
(새기술보급및환경보전농업시범사업,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농업학습단체육성및품목별전문교육)	
III. 인력육성 .....	1627
93. 농업인후계자육성(차율) .....	1629
94. 전업농육성(차율) .....	1664
95. 선도농업경영체육성(차율) .....	1697
96. 농업인자녀학자금(공공) .....	1714
97.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공공) .....	1726
98. 자영농고육성(공공) .....	1733
99. 농업전문대학지원(공공) .....	1736
100.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공공) .....	1739
IV. 소득원개발 .....	1743
10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차율) .....	1745
102. 농촌특산단지육성(차율) .....	1810
103. 농공단지육성(공공) .....	1843
104. 농촌특산품판매장설치(공공) .....	1859
105. 한계농지정비(공공) .....	1867
106. 농업경영자금(공공) .....	1883
V. 생활환경개선 .....	1889
107. 식생활개선교육홍보(공공) .....	1891
10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	1895
(일반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농촌마을하수도설치)1951	
109. 농촌생활용수개발(공공) .....	1951
VI. 기타사업 .....	1981
110. 농업인의날행사지원(공공) .....	1983

## 제6권 [임업및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	1985
111. 산림경영장비지원[자료] .....	1987
112. 사유림협업경영(공공) .....	1993
113. 임도시설(공공) .....	1997
114. 영림계획(공공) .....	2001
115.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공공) .....	2005
116.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	2010
117. 임업기술보급(공공) .....	2012
(임업기술지도, 임업기술개발지원)	
II. 생산및유통개선 .....	2021
118. 임목생산[자료] .....	2023
119. 임산소득증대[자료] .....	2028
(표고생산기반조성, 조경수분재생산, 단기소득임산물생산)	
120. 임산물가공지원[자료] .....	2047
(임산물이용가공원자재구입,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산지가공공장설치, 팽이용가공시설, 임산물저장시설)	
121. 표고종균생산시설(공공) .....	2067
122.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	2070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간벌재활용장비, 임산물유통시설설치)	
123. 합판및보드류시설지원(공공) .....	2086
III. 인력육성 .....	2093
124.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자료] .....	2095
125. 임업전문인력양성(공공) .....	2104
(임업기능인훈련, 임업기능인영림단장배치)	
126.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	2116
IV. 환경임업육성 .....	2121
12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	2123
(자연휴양림조성, 산림박물관건립및수목원조성)	
128. 산불방지대책(공공) .....	2130
129. 사방사업(공공) .....	2134
130. 산림생태보전(공공) .....	2138
(산림환경관리, 산림입지조사, 야생조수보호)	
131. 산촌종합개발(공공) .....	2150
V. 산림자원조성 .....	2157
132. 해외조림사업[자료] .....	2159
133. 산림조성(공공) .....	2167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사업, 조림용묘목생산)	
134. 산림병해충방제(공공) .....	2199





# I. 생 산 및 유 통 개 선

여 백

86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입니다.

### 1. 목 적

-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에 의거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 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가 유기·자연·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임

### 2. 추진방향

- 유기·자연·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소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 단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성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
- 유기·자연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중소농단지는 가급적 상수원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농업기반 구축
- 단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품질인증 등 유통지원

### 3. 근거법령

- 농특세특별회계법제3조(회계의 세입 및 세출) 및 농어촌발전대책(중소농지원대책)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1,000	개소 100	100	118	100	582
사 업 비	계	250,000	25,000	25,000	29,500	25,000	145,500
	보 조	105,000	12,500	12,500	11,800	10,000	58,200
	읍 자	45,000	2,500	2,500	5,900	5,000	29,100
	지방비 자 담	50,000 50,000	5,000 5,000	5,000 5,000	5,900 5,900	5,000 5,000	29,100 29,1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사업배경

- 전업농육성 등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남게되는 중소 농지원대책을 환경농업육성과 연계하여 농특세 재원으로 '95년도 부터 사업 시작

##### (2)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작목

- 벼, 일반 발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전작목

###### ○ 지원대상단지

- 소유농지 1.0ha이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유기·자연·토종 농업 조직, 우수농산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복합경영 농가조직)으로서 10ha이상 규모의 단지, 단, 단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는 소유농지 1.0ha이상 규모의 농가도 참여토록 하거나 10ha이하의 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음

※ 단지에는 축산 또는 비닐하우스 농가외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반드시 포함(시·군 관내에 벼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 되어야 하며, 1.0ha이상의 농가가 참여하거나 10ha이하의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함.

- 유기·자연·토종농업의 경우, 가급적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되 시장·군수가 사업목적에 적합한 지구를 지정하여 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음.

(3) 지원시설

단 지 별	구 분	시 설 내 역	지 원 한 도
유기·자연농업 단지	공동시설	○ 토착미생물생산시설(생산 시설 및 창고, 배합기, 로다, 운반차량 등 포함)	백만원 100
		○ 예냉시설	30
		○ 냉 장 차	20
	개별시설	○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	60 40
기타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			250

- 시장·군수는 지역실정과 사업목적에 감안하여 단지당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공동·개별시설 상호간 사업의 규모 및 사업내용의 조정이 가능함
- 시장·군수는 타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은 사업중에서 중소농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신규 발굴될 경우 단지조성과 함께 이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 토착미생물을 접종·증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배양기, 간이건축물도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로 지원할 수 있으며 운반, 뒤집기, 콘베어벨트, 분쇄기, 톱밥제조기 등 필요한 기구도 지원대상에 포함
- ※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은 원하는 단지에만 지원하되, 원하지 않는 단지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대신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또는 하우스 등의 시설 사업량을 확대할 수 있음

(4) 지원조건

- 지원단가 : 단지당 250백만원 (국고40%, 지방비20%, 읍자20%, 자부담20%)
- ※ 읍자조건 : 연5%, 3년거치 7년상환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안(농특세)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118	백만원 29,500	17,700 (60%)	11,800 (40%)	5,900 (20%)	5,900 (20%)	5,900 (20%)

※ 융자조건 : 연리5%, 3년거치 7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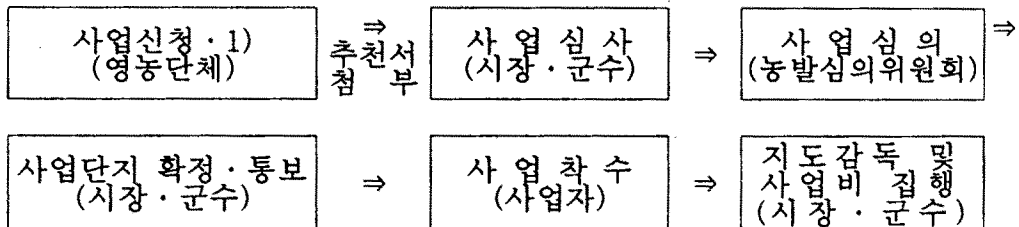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직할시 : 농정과)
- 시·군 : 산업·농정과, 농촌지도소

다. 자금지원예정자 : '97사업확정단지

라. 사업시행

(1) 사업시행 체계



주 : 1) 추천기관 : 농촌지도소, 농검, 농·축협, 유기, 자연농업협회 등

## (2) 시설설계

-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
  - 기 개발되어 있는 농가보급형 하우스(예: 1-2W형, 무기동형 등)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 기 개발되어 있는 「가변형축사표준설계도」 또는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사)한국자연농업협회가 공동 개발 보급한 「유기·자연농업형 축사설계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규모를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도를 작성 시공
  
- 예냉시설
  - 기 개발되어 있는 예냉시설 설계도를 이용(농과원, 식품개발연구원의 설계도)
  
- 토착미생물생산시설고
  - 자체설계도 작성 시공
  
-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기타시설
  - 기 유사모델이 있을 경우 또는 농가에서 직접 제작이 가능한 간단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되,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농진공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기존시설 활용
  - 시장·군수는 예냉시설, 냉장차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생산품목, 물량,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근의 기존예냉시설, 냉장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설치된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 축사에 대한 규모확대가 가능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음.

### (3)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 사업계획 수립

- 시설별(공동·개별)소유자(이용자)를 명시하고 단지 참여농가의 합의를 얻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사업계획 변경

- 농발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승인된 단지(참여농가포함) 및 사업내용변경시
  - 사업계획변경(시설, 참여농가)은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 읍·면·리간 변경은 시장·군수가, 시·군간 변경은 시·도지사가 변경신청을 받아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시공업체 선정

- 단지대표자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농민 스스로 시공

### (5)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시 시장·군수는 농진공에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6)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1차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단지대표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시공업체(농가 직접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단지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 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유인비 등 필요한 경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마. 기타사항

- 소유농지 1ha는 토지대장상 논, 밭의 소유 개념이며 동일거주인(처, 부모)은 동일인으로 간주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토착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비료는 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판매시는 비료 관리법 제11조에 의한 판매허가를 받아서 판매
- 단지별로 생산된 농산물은 희망에 따라 품질인증 또는 보증을 받아 출하
- 추천기관·단체는 매년 3월말까지 기술·경영지도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사업비 회수 명령을 할 수 있음
- 동 사업시설·장비는 사후관리기간내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중소농사업(보조금)으로 취득한 모든 시설·장비	준공·구입후	10년	타용도 및 사업 목적외에 사용금지	시장·군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사항 등을 기록

※ '95, '96 중소농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도 소급적용함.

- 중요재산의 관리는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나. 보고 기타

○ 사업계획 보고

- 시·군 → (3월20일까지) 시·도 → (3월말까지) 농림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시·군 → (6월20일, 10월20일까지) 시·도 → (6월말, 10월말까지) 농림부

※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은 배부된 전산 양식으로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 시·군 → (3월20일까지) 시·도 → (3월말까지) 농림부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의가(2)"항의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영농조직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 조직의 대표는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 농협, 축협 및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 회원인 각 단체의 추천을 받고, 추천기관·단체의 지도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추천기관·단체는 기술, 경영지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추천서, 사업계획 및 신청서

## 마.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

- “5<사업개요>의가(2)”항의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영농조직으로서 논에 타작물재배,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설치시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군을 경유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함.

### ○ 우선순위

**공통** :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여건이 적합하고 지도자가 있는 영농조직  
※ 동일 조건시는 단지내에 소유농지 1.0ha이하의 중소농가 참여가 많은 영농조직을 사업자 선정에서 우선함.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증산간지 등으로 유기·자연·토종농업 선도농가가 있는 영농조직으로서 단지참여 희망농가중 신청일 현재 1농가 이상이 농점의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아 출하하고 있는 영농조직

**2순위** : 유기·자연·토종농업을 하고 있는 영농조직

**3순위** : 중소농으로서 고품질농산물생산 단지화가 가능한 영농조직

### ○ 선정절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87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공산업과 입니다.

## I. 농수산물가공산업 시설비지원

### 1. 목 적

- 가. 우리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가소득 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 나. 원료농수산물의 구매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다.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 2. 추진방향

- 가. 우리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가소득 증대

< 기본 방향 >

-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로 육성
- 전통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 3. 근거법령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등)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억원)

		계(목표)	'89~'95	'96	'97	'98	'99~2004
사업량		2,000	1,053	160	134	130	523
사업비	계	33,784	2,792	981	630	663	28,718
	보조	9,832	750	376	185	128	8,393
	음자	15,772	1,347	382	298	379	13,366
	자부담	8,180	695	223	147	156	6,959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 전통식품개발사업 >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전통식품 (농림수산부 고시제 1994-55호로 지정한 품목)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농어가공동 및 생산자단체
  - ※ 농어가공동이란 농어가5호 이상이 출자, 취업, 원료제공형태 등으로 참여하고 운영은 공동운영 또는 단독운영
- 기 지정된 특산단지 지정업체(식품분야)는 전통식품개발사업에 포함지원
  - ※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지원
    - 공동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통식품”에 준하여 지원
    - 개인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일반”에 준하여 지원

##### < 산지일반가공사업 >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사업자의 경영능력,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 가공사업에 대한 단순한 의지보다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업자
  - 공장입지여건과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한 적정투자 및 구체적인 생산·판매계획 수립여부 등

#### 나. 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중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각종 법규의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 (법 제2조 제4항)
    - 군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읍·면은 전지역,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지원대상품목

- 전통식품 : 농림수산부고시 제1994-55호에 의거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 국내산 농수산물로써 원료조달이 용이한 품목
  -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유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공품목
  - 수요가 크고, 대규모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품목
  - 원료 또는 제품의 보관과 수송이 용이한 품목
  - 동일지역내, 동일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원료의 경합 및 판매전망 등을 감안하여 지원
- ※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제조면허를 얻은 품목에 한정, 다만 농림부장관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자 선정심의회 개최 1주일전까지 주류제조 면허증사본을 제출하면 대상자로 인정.

라. 지원조건

(1) 신규지원

- 기준사업비 이내인 사업 :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 : 기준사업비 보조지원한도액과 신청사업비의 20%인 자부담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담보가능한 경우에 융자금으로 지원가능

구 분		기 준 사업비	지원기준(%)			비 고
			보조	융자	자담	
전통식품 개발사업	농어가공동 생산자단체	250 <small>백만원</small>	30	50	20	○ 농어가5호이상, 자부담 금액 이상 출자 ○ 영농조합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어가 5호이상이며, 운영기간 1년이상일것
	산지일반 가공업	1,000	"	"	"	○ 영농조합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어가 20호이상이며, 운영기간 1년이상일 것.
	일반업체	-	-	70	30	○ 한도 제한 없음

※ 기준사업비는 예산확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 : 전통식품개발사업비가 300백만원인 경우(산지일반 생산자단체도 같은 요령임)

- 보조 : 기준사업비 250백만원의 30%인 75백만원
- 융자 : 300백만원(사업비)-75백만원(보조)-60백만원(자담)=165백만원
- 자담 : 300백만원의 20%인 60백만원

(2) 지원부문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일반창고, 저온창고, 기타부속건물, 오페수 처리시설 등 (부지구입비 제외)
- 가공기계류
  - ※ 저장시설면적이 총 시설투자면적의 40%를 초과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융자조건

- 농어가공동, 생산자단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일반업체 : 연리 8%, 3년거치 7년상환

(4) 추가지원

- 추가지원대상은 기존 시설비를 지원받은 공장으로서, 수출 또는 내수분야의 매출실적이 양호하고 성장이 유망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증설, 시설현대화 등으로 사업규모를 확장하려는 업체
- 추가지원은 융자만 가능하며 추가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 사업기간 : '98.1.1 ~ 12.31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가공산업과  
(02) 504-9417~8  
(02) 500-2577~8
- 시·도 : 농정국(농수산국) 농산물유통과(유통특작과, 감귤과)
- 시·군, 자치구 : 유통과 또는 산업과



## 다. 대상자 자격요건

### (1) 가공공장 시설부지 확보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확보
-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 논에 가공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담보물

- 본인(법인)소유 : 본인(법인)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 등본 첨부)
- 타인소유 :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등기부 등본 첨부)

###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운영기간 1년 이상 된 법인으로 다음 서류 첨부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친 의사록 (참석자 명단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시장·군수가 확인한 조합원별 출자내역)

### (4) 기타사항

- 협동조합은 군지부 및 도지역본부와 사전협의하여 반드시 조합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청 (시장, 군수는 조합이사회의 의결내용이 수록된 의사록을 확인한 후 도지사에 진달)
- 산지일반가공사업중 생산자단체는 부지를 제외한 시설투자비 규모가 1,0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경영인을 갖추는 조건으로 자금지원(사업계획서에 위반시 융자금을 반납한다는 각서 별도 첨부)
- 농어가공동은 공동출자, 취업, 원료제공형태 등으로 참여하고 공동운영 또는 단독경영도 가능
-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최저 1억원이상 출자된 법인으로 조합원은 가구당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정관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추천
  - 특히, 출자비율 확인(1인당 출자비율 25% 이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총출자비율 준수 등)
- 보조사업의 경우 직계 존·비속 또는 부부간 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라. 대상자 선정절차

- (1) 지원대상자 지정신청 → 관할 시장·군수
  - 구비서류 

[	전통식품개발 : 별지제1호, 별지제4호, 별지제6호서식 3부씩
	산지일반가공 : 별지제1호, 별지제5호, 별지제6호서식 3부씩
  - 제출기한 : 사업실시 전년도 1. 31까지
- (2) 지원지정후보자 선정진달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한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조서(별지제2호 서식)와 농어촌지도소장 및 시장·군수 의견서 등을 첨부 지원대상자 추천
  - 제출시한 : 사업실시 전년도 2. 28까지
- (3) 지원대상자 추천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조서(별지제3호 서식) 및 시·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원대상을 선정 추천
  - 제출기한 : 사업실시 전년도 3. 31까지
- (4) 농·수·축·임·삼협중앙회장 : 회원조합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 부지확보 등 사업착수 가능여부 검토
  - 자체자금 조달능력 여부
  - 제품개발 내역 검토
  - 사업 타당성 검토 (적정투자규모를 위한 사업규모 축소 또는 확대)
    - ※ 사업성이 낮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토록 유도
- (5) 지원대상자 지정 및 통보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시행규칙 제7조)
  - 각도별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타당성 검토와 가공산업육성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예산범위내에서 장관이 최종사업 대상자를 지정
  - 지원대상자 지정결과를 각 시·도지사에 시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선정된 대상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 마. 지원대상 예비후보자 지정

- (1) 장관은 사업자 선정의 신속한 대체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평가와 가공산업육성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지정할 수 있음.

- (2) 장관은 지정업체 대체선정이 필요할 경우 기 예비후보자 중에서 대체 사업자를 지정
- (3) 장관은 대체지정된 예비후보자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선정된 예비후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바. 사업시행

사업계획수립

- (1)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2)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계획을 승인(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45일 이내)
  -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된 날로 부터 6월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을 승인신청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대체지정 요청
  - 농어가공동(전통식품)의 사업대표자는 공동참여자와 함께 주요자산의 출자 내역, 공장건설, 경영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자체정관을 작성

사업비 지원방법

- (1) 보조금
  - 보조금 배정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 신청 : 사업자 → 시장·군수경유 → 시·도지사
    - └ 결정 : 시·도지사 → 사업자
  - 보조금확정(정산) : 시·도지사가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융자금

- 배정 : 농림부장관 → 농협중앙회장(농특회계사무국) → 농·수·축협중앙회장  
→ 농·수·축협 시·도지회 → 농·수·축협 시·군지부
- 신청 및 지급
  - 〔 신청 : 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 결정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자 (시·군지부에서 지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실시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 실시
-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 (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사업승인후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여 보고
  - 지원금액의 변동을 요하는 계획 변경 : 농림부장관 승인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
  - 품목변경 : 시·도지사 승인
  - 품목추가 또는 일부변경 : 신고(시장·군수)
  - 사업장 변경
    - 〔 시·군내 : 시장·군수 승인
    - 〔 시·군간 : 시·도지사 승인
  - 구성원내 대표자 변경
    - 〔 농어가공동, 생산자단체 : 시장·군수 신고
    - 〔 일반업체 : 시장·군수 승인
  - 상호변경 및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신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 부동산과 그종물	준공검사일	10년간	보조사업자는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농림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동산에는 당초 보조금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한 대지를 포함 ○ 가공기계류의 신규교체시에 예외 ○ 기타필요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관련조항 준용
○ 가공기계류	설 치 일	7년간		

나. 보고, 기타

(1) 사업추진 관련 보고사항

보 고 서 명	보고기한	보고기관	수보기관	서 식
1.사업추진및 자금집행 실적	○ 매분기익월10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별지12호
2.생산및 판매실적	○ 매반기익월10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3.보조금 정산실적	○ 익년1월20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2) 사업별로 사업현황 및 관리카드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 상황일지를 작성 비치

(3) 시·도지사는 정부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준공전 안내판 및 준공후 부착물을 설치토록 함.

(4) 수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

(5) 산지가공공장 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825호, '95.7.6)에 의거 사업자는 가공공장 건설 및 가동상황을 성실히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⑧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 ㉡ 총회 의사록 (참석자 명부 포함)
    - ㉢ 조합원 명부 (조합원별 출자내역 및 지분율 기재)
    - ㉣ 법인 운영실적 1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시장·군수 확인)
  
  - ⑨ 농어가공동
    - ㉠ 농어가공동(전통식품)의 자체정관
- ※ 위 순서에 의해 편철

## II. 포장개선사업 지원

### 1. 목 적

- 농수산물 가공제품의 포장개선(디자인 및 용기)을 통한 상품성 제고 및 판로확대 도모
- 수출상품의 포장개선을 통한 수출확대 도모

### 2. 추진방향

- 포장디자인개발부문(용기 디자인개발 포함)에 우선 지원
- 수출용(디자인 및 용기구입) 개발에 우선지원

### 3. 근거법령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제5조, 동시행령 11조①항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백만원)

		계(목표)	'92~'95	'96	'97	'98	'99~2004
사업량		3,064	378	294	291	300	1,800
사업비	계	62,921	7,246	7,855	5,820	6,000	36,000
	보조	22,478	3,623	3,927	2,328	1,800	10,800
	음자	27,665	1,980	2,357	2,328	3,000	18,000
	자부담	12,778	1,643	1,571	1,164	1,200	7,2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정부지원 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산지일반 가공사업 지원업체중 생산자단체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 지원제외 대상자 ]

- 디자인개발은 하지않고 용기구입(100%)만 신청한 경우
  - 단, 전년도에 디자인만 개발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자가개발(포장디자인 및 용기)의 경우
- 예산의 지원목적외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지원기준 및 지원부문

① 포장디자인개발

- 업체당 3회까지 지원가능
- 수출용은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수출을 적극 장려
  - 수출용 추가지원시는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내용확인 후 지원

② 포장용기 구입

- 업체당 3회까지 지원가능
- 수출용 디자인개발에 따른 포장재 구입이 필요한 경우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 수출용은 추가지원시는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내용 확인후 지원
- ※ 포장용기 구입지원은 '97년도까지로 한정하며, '98년부터 지원중단 예정임.

③ 지원부문 : · 포장디자인개발 및 포장용기 구입

· 제품홍보물 디자인개발 포함

※ 용어의 정의

- 홍보물 디자인 : 기업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미지 전달과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포장디자인과 함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팜플렛”(10페이지 이상), “리플렛”(10페이지 이하), “전단”(1~2페이지)으로 분류함.

다. 지원규모

- 지원단가
  - 업체당 최고 2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라. '97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자 담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농특회계)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291	백만원 5,820	4,656	2,328	2,328	1,164
디자인개발	-	2,910	2,328	1,164	1,164	582
용 기 구 입	-	2,910	2,328	1,164	1,164	582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주체 : 시·도지사
- 사업기간 : '98. 1. 1 ~ 12. 31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가공산업과  
- 전 화 : (02) 504-9417~8, 500-2677~8
- 시·도 : 농정국(농수산물) 농산물유통과(유통특작과, 감귤과)
- 시·군, 자치구 : 유통과 또는 산업과

다. 포장디자인 개발 의뢰기관

- (1)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림수산물정보센터(포장디자인연구소)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 (3)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으로 부터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포장디자인분야)의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
- (4) 수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디자인 전문업체도 가능.

## 라. 대상자 (사업자)선정

- 사업자 선정 기준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업체중 지원횟수 초과 및 예산의 지원목적의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여부를 감안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
- 우선순위
  - 디자인개발 위주업체, 특히 수출용 디자인개발 업체 우선 선정
- 선정절차  
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신청           (검토)   보고           (선정)   보고

## 마. 사업시행

###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도지사는 업체별, 용도별(디자인, 용기)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장디자인 개발의뢰기관과 협의하여 디자인 개발계약 체결 등 사업실시
-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디자인 개발 보다는 용기구입
  - 포장디자인 개발의뢰기관 이외의 무자격 디자인회사와 계약

### (2)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배정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 신청 : 사업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 └ 결정 : 시·도지사 → 사업자
  - 보조금확정(정산) : 시·도지사가 보조금을 정산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융자금 지급
  - 재원 : 농특회계
  - 지원조건 : 연리 5%. 1년거치 4년상환
  - 융자금 배정 : 농림부장관 → 농협중앙회장
  - 융자 요령 : 농림수산물가공업육성지침(시설비지원)에 준함

(3) 기타사항

- 디자인개발(60%)과 용기구입(40%) 비율 가급적 유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의거 년내 사업으로 완료토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불가피한 경우 당초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후 농림부장관에 보고토록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보조조건,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디자인개발용 필름및 영수증	계약일	5년간	○ 농림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 목적 -이면·허위계약방지 -보조금정산자료활용
용기구입영수증 등 관련자료	"	"		

## 나. 보고, 기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고 특히, 본 지침에서 정하는 디자인개발기관 또는 업체와 디자인개발 계약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본 지침에서 정하는 업체 이외의 다른업체와 계약시 재계약토록 지도)
- 시·도지사는 업체별 사업비 정산시 포장디자인개발 및 용기구입 사실을 철저히 확인(필요시 사진 및 증빙서 비치)하되, 지원자금이 지원목적 외 사용 또는 사업계획을 위배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조치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용자금을 미대출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참조
- 사업추진관련 보고사항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지침(시설비지원)에 의함
  - 포장개선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별지제12-4호 서식)
  - 포장개선사업 추진실적 보고 (별지 제12-5호 서식)
  - 포장개선사업 정산실적 보고 (별지 제12-6호 서식)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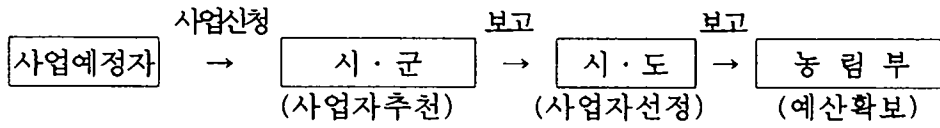
### 가. 신청서 제출

- 제출기관 : 시·군 유통과 또는 산업과 (시·도 → 농림부)
- 제출기한
  - 신청자 → 시·군 ('97. 1. 31일까지)
  - 시·군 → 시·도 ( 2. 28 " )
  - 시·도 → 농림부 ( 3. 31 " )

### 나. 신청자격

- 정부지원 전통식품 개발사업체
- 산지일반 가공사업 지원업체중 생산자단체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 '98년도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전통식품개발업체 및 산지일반 가공사업 지원업체중 생산자단체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포장개선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첨부서류
    - 사업현황(공통) 1부
    - 수출실적 입증서류(수출용) 1부.
- 포장개선사업신청현황 보고 (별지 제7-1호 서식)

### Ⅲ.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요령

#### 1. 목 적

- 정부지원 농수산물 가공업체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와 전통식품명인 지정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가공원료 구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근거법령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3. 자금지원대상 : 정부지원 농수산물 가공업체(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및 전통식품 명인 포함)

#### 4. 자금의 재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한다)

#### 5. 자금의 용도

- 자금을 대출받은자는 가공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6. 지원기준 및 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원료구입자금 소요액의 70% 이내)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와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3억원 이내에서 초과 지원할 수 있다.

#### 7. 대출기간 : 2년이내

#### 8. 대출금리 및 이자징수

- 농어민 공동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는 연 5%, 산지일반업체 및 정부시설비지원을 받지않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와 명인지정업체는 연 8%로 한다.
-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후취한다.

## 9.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및 지부(이하 “대출기관”이라 한다)

## 10. 자금지원 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은 매회계연도 마다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안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농안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림부장관은 분기별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분기별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협지원금액과 농협이외의 가공업체 지원액을 구분하여야 하며, 농협지원액은 연간 지원규모의 30% 수준으로 한다.

## 11. 자금지원 신청

- 가공원료 구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공업체는 매분기시작 40일전까지 다음분기의 자금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신청서에는 신청내용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경영상태, 수출·판매 실적, 담보물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각시·도지회장의 추천서(별지제9호 서식)를 첨부(생산자단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명인은 제외)하여야 한다.
  -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각 시·도지회장은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한후 도지회 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신청서를 매분기 시작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금신청총괄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업체별 자금신청서와 함께 매분기 시작 2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자금신청서 심사 및 결과보고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자금신청서를 검토한 후 농협회원조합 신청서는 농협중앙회장에게, 그 이외의 신청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송부된 자금신청서를 심사 기준(별표1)에 의거 심사하고 분기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업체별 지원액을 정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별지제11호 서식)를 매분기 5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13. 자금지원액 확정통보

- 농림부장관은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업체별 지원액을 확정된 후, 지원내역을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확정된 지원내역을 즉시 가공업체에 통보하여 대출기한내에 대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14. 자금의 대출 및 채권보전

-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공업체는 대출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기한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 대출기관은 대출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대출하여야 한다.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하여는 대출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 가공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채권보전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 규정”에 의하되, 신용대출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다.

## 15. 자금의 사후관리 및 위반업체 제재

- 시·도지사 및 대출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자가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 대출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농림부장관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가공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1~5년간 자금지원을 정지하고(“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 '96. 8.13 참조)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을 받지 않은 가공업체에 대하여는 1년간 자금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 16. 기타 행정사항

- 가공업체가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기한내에 자금을 대출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출기한 20일 이전에 시·도지사에게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하거나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기한 10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에게 다음 분기말일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포기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상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농협중앙회장은 매분기 업체별 대출실적을 작성하여 대출기한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실시요령”을 적용한다.

## IV. 신청서식

### 1. 농수산물가공산업 시설비지원

-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 (별지제1호 서식)
- 산지가공 지원후보자 선정조서 (별지제2호 서식)
-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추천조서 (별지제3호 서식)
- 전통식품개발사업계획서 (별지제4호 서식)
- 산지일반가공사업계획서 (별지제5호 서식)
- 의견서(전통식품 및 산지가공사업 공통) (별지제6호 서식)
  - 행정기관 의견서 (별지제6-1호 서식)
  - 농촌지도소 의견서 (별지제6-2호 서식)
  - 농협지부장 의견서 (별지제6-3호 서식)
  - 식품관계 전문가 의견서 (별지제6-4호 서식)

### 2. 포장개선사업지원

- 포장개선사업 지원신청서 (별지제7호 서식)
- 포장개선사업 신청현황 보고 (별지제7-1호 서식)

### 3. 가공원료구입자금지원

-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신청서 (별지제8호 서식)
-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추천서 (별지제9호 서식)
- 가공원료 구입자금 신청총괄표 (별지제10호 서식)
- 업체별 자금신청서 심사결과 보고서 (별지제1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앞면)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월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소		☞					
	사업명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설비		종
	재원조달 (백만원)		구분 주1)	계	정부보조	정부음자	자부담	
			기준사업비					
			초과사업비		-			
			총사업비					
	사업형태				구성원내역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3부.						수수료		
						없음		

- ※ 주1) · 기준사업비 : 정부보조, 정부음자, 자부담은 각각 기준사업비의 30% 50%, 20%를 기재  
 · 초과사업비(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정부보조 : 없음.  
 - 정부음자 : 초과비용중 자부담(초과비용의 20%)을 제외한 금액  
 - 자 부 담 : 초과비용의 20%

【 별지 제2호 서식 】

산지가공지원후보자 선정조서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구분	항목	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	
자격요건	1. 대표자의 지도력					
	2. 구성원					
공장입지	3. 인·허가요건					
	4. 기존사업자와의 경합성					
	5. 원료권 형성					
	6. 주변환경					
사업계획	7. 시설계획					
	8. 생산계획					
	9. 원료조달계획					
	10. 자금조달계획					
	11. 판매계획					
신용상태	12. 부채					
	13. 자기자본 확보					
	14. 담보물 보유					
사업전망	15. 국내시장 경쟁력					
	16. 해외시장 경쟁력					
종합평가				우선순위		
구비서류 : 1. 시장·군수 의견서 1부. 2. 전문가 의견서 1부.						

##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추천조서

(단위: 백만원)

순 위	사업 체명	공 장 예정지	대표자	사업명	가공 품목	주원 료	사업 형태	구성 원	시설규모			자 금 조 달 계 획					
									부 지 (m')	건 물 (m')	설 비 (m')	구분	계	정부 보조	정부 융자	금융 기관 차입	자부 담
1												기준					
												초과		-			
												계					
2												기준					
												초과		-			
												계					
계												기준					
												초과		-			
												계					

【 별지 제4호 서식 】

## 전통식품개발사업계획서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

품 목 :

전화번호 :

※ 사업대상

- 농어가공동
- 5호이상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기준사업비 250백만원 이하인 농협등 생산자단체

##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사업의 필요성
- 기대효과

## 2. 사업주체

### 가. 개 요

사업명(품목)		사업구분	창설·증설
소재지			
사업규모	부지 : m', 건물 : m'	시설자금소요액	백만원
공동참여농가수	명	출자총액	백만원, 1인당 평균 만원

※ 공동참여자의 출자내역이 명시된 연명날인 증빙서 첨부

###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연령	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기재		전화번호	지역번호도 포함	
주요경력	기간	내용		재산현황(백만원)	
				계	
지역내 현직책				동산	
				부동산 기타	



### 3. 세부사업계획

#### 가. 재원조달계획(가공공장건설사업)

항 목	규모(m <sup>2</sup> )	단가(천원)	재원조달(백만원)				비고
			계	보조	융자	자담	
부 지(자담)							
시 설	건물	소계					
		작업장					
		창고등					
자 금	기계 및 설비	소 계					
합 계							

※ 건 물 : 작업장, 저온창고, 일반창고 등으로 세분화

※ 기계 및 설비 : 가공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시설자금의 합계란은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별지 1호서식)의 재원조달중 총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 나. 원료조달계획

년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 고

※ 원료수매자금조달방안(구체적으로) :

다.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제품명	규격	단가	생산 및 판매물량				판매방법 및 판매처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kg	천원	톤	백만원				
계								

※ 판매회사명칭과 물량을 기재(OEM은 비고란에 명시)하고 판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지원대상자로 우선선정 가능함.

라. 공동참여 농가현황

성명	주소	참여형태 출자액 (만원)	소요경지 면적(평)	제품원료 생산량		비고
				원료(톤)	금액(백만원)	
계						

마. 수출, 판매실적

년도	구분	품목	물량	금액	주수출국	비고

※ 추가지원 요구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하되 신규업체도 실적이 있으면 기재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첨부

**바. 금융기관 차입내역(사업계획 신청일 이전)**

거래은행	차입금액 (백만원)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일	상환잔액 (백만원)	비 고
계						

**사. 사업부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평)	소유주	소재지	전용가능여부	비 고
계						

※ 지목이 논인 경우에는 사업대상부지로 인정안됨.

**아. 담보물 현황(미담보 상태인 담보물만 기재)**

소유자	종 류	추정가격 (백만원)	위 치	비 고
계				

【 별지 제5호 서식 】

## 산지일반가공사업계획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품 목 :

전화번호 :

※ 사업대상

- 기준사업비 250백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은 20호 이상)
- 용자지원받는 일반업체

##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가. 사업의 필요성

- 1) 입지조건
- 2) 타당성
- 3) 기타

### 나. 기대효과

- 1) 농가소득증대 측면
- 2) 지역내부존자원 활용측면
- 3) 고용효과
- 4) 향후전망
- 5) 기 타

## 2. 사업주체

### 가. 사업개요

사업명		주요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부지 평, 기계류 점 건물 평	사업구분	창업, 증설
시설자금 총소요액	백만원	시설자금 지원요청액	백만원 (보조 : ) (융자 : )

###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소					
주요경력	기간	내용			
지역내 현직책					
재산현황 (백만원)	동산	부동산	기타	계	

※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별첨

### 다. 영농법인체 현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등기년월일	
설립목적			
출자현황	- 출자자수 : 명 (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자액 : 억원(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사업실적			

### 3. 제품개발 내역(계획)

품 목	원 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개발내역(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조달 :</li> <li>- 제조가공방법 :</li> <li>- 제품특징 및 내용 :</li> </ul> </li> <li>○ 연구용역상황(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 약 일 :</li> <li>- 계약완료일 :</li> <li>- 계 약 기 간 :</li> <li>- 계 약 내 용 :</li> <li>- 비 용 :</li> </ul> </li> </ul>	

### 4. 건설계획

#### 가. 입지계획

소재지			
규모	대지	평	기계류 : 종, 점
	건물		
입지조건	원료구입, 판로, 고용조건 등과 연계하여 기재		
용수	월사용량 기재		
전력	월사용량 기재		
도로			
통신			
기타			
공사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나. 주요투자시설 명세

(단위 : 천원)

항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대지(자부담)					
2. 건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3. 구축물					
가.					
나.					
다.					
4. 가공기계					
5. 공기구비품					
6. 냉장·냉동차량 등					
7. 전기공사					
8. 설계비					
계					



다. 주요가공기계 명세

(단위 : 천원)

기 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구 입 처

라. 사업부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평)	소유주	소재지	전용가능여부	비고
계						

※ 지목이 논인 경우에는 사업대상부지로 인정안됨.

## 5.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가. 세부투자계획

항 목	규모 (평)	단가 (천원)	소 요 자 금(백만원)							
			합계	업 체 부 담			정부지원요청			
				계	자부담	외부 차입	계	보조	융자	
부지매입(자담)										
시 설 자 금	건물 - 작업장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사무실등 부대건물 - 기 타									
	구축물 - 용수시설 - 시배전 시설 - 오·폐수 시설 - 기 타									
	가공기계									
시설자금합계										
총 계										

※ 저온창고는 100평기준으로 평당 250만원을 초과 못함.

※ 시설자금 합계란은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별지1호 서식)의 재원 조달중 총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나.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기자금				
외부차입				
계				

※ 외부차입 : 정부지원 요청액은 제외

다. 금융기관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차입조건	상환일	상환잔액
계						

※ 차입조건 : 금리기재

라. 담보물 현황

(단위: 백만원)

소 유 자	종 류	추정가격	소 재 지	비 고
계				

### 6. 원료조달계획

년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7.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제품명	단 가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천원/ kg	톤							
2차년도										
3차년도										

### 8. 판매계획

제 품 명	수 량	금 액	판 매 처	비 고

※ 판매회사별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OEM은 비고란에 명시)하고 판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가능

### 9. 수출·판매실적

구분 년도별	품 목	물 량	금 액	주수출국	비 고
			백만원		

※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실적 있으면 기재

【 별지 6호 서식 】

( 6-1 행정기관 의견서)

## 의 건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견)

- 대표자의 경력 및 사업의지 등
- 부지확보 및 전용가능여부, 타규정 저촉여부 등은필히 기재
- 사업의 필요성, 판매전망,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
- 시장·군수와 시·도지사 의견서를 업체별로 각각 별도작성

199 . . . .

시·도지사(시장, 군수) 직인

( 6-2 농촌지도소 의견서)

## 의견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견)

- 해당품목 원료의 관내 생산, 조달가능, 품질 및 농어가 소득기여도 등

199 . . .

농 촌 지 도 소 장 직인

( 6-3 농협지부장 의견서)

## 의견서

사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

- 자기자본 및 수매자금 조달능력과 구성원의 신용상태 조사
- 담보물에 대한 융자가능액 검토 의견
- 투자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199 . . . . .

농협                      군    지부장    직인



( 6-4 식품관계전문가)

## 의 건 서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견)

- 사업전망, 지역특성상 적합여부 등 검토
- 제품의 상품성, 판매전망 등

199 . . . .

대학교            학과            교수            인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명 직위 성명)

【 별지 제7호 서식 】

## 포장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업 채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지원형태	전통( ) 산지일반( ) 기타( )		지정년도 공장가동일	
	주생산품			전년 매출액	백만원
	공장품목	대지: 평, 건물: 평(공장: 평, 창고: 평, 기타: 평)			
사 업 계 획	사업명			총소요액	백만원
	재원조달 (백만원)	정부유자신청	금융기관차입		자 부 담
	담보제공방법	신용보증서( ) 지급보증서( ) 부동산( ) 기타( )			
<p>상기와 같이 포장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인)</p>					
<p>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p>					
<p>첨부서류 : 1.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2. 수출실적 입증서류 1부.(수출용 개발의 경우)</p>					

< 첨부서류 >

## 사 업 현 황

### 1. 가공능력

제 품 명	연생산능력(톤)	주 원 료	비 고
1.			
2.			
3.			
계			

### 2.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

제품명	생 산		판 매				재 고	
	물량	금액	국 내		수 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2.								
3.								
계								

### 3. 담보제공계획

(단위 : 천원)

보 증 서			부 동 산				
발행처	보증금액	기 간	물건명	소유자	소 재 지	추정가액	선순위액

【 별지 제7-1호 서식 】

## 포장개선사업 신청현황보고

시도별	소재지 (업체명)	생산품목	사 업 비 (천원)				사 업 내 용		지 원 형 태		
			계	보조	융자	자담	디자인 개발	용기 구입	전통	산지	인증

【 별지 제8호서식 】

##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지원형태		지정년도		
			공장가동일		
	주생산품		전년매출액	백만원	
공장규모	대지 : 평, 건물 : 평(공장 : 평, 창고 : 평, 기타 : 평)				
사 업 계 획	구입원료		총소요액	백만원	
	재원조달 (백만원)	정부융자신청	금융기관차입	자 부 담	
	담보제공방법	신용보증서( ) 지급보증서( ) 부동산( ) 기타( )			
<p>상기와 같이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199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신 청 자                    (인)</p>					
<p>농림부장관</p> <p>시·도지사    귀하</p> <p>시장·군수</p>					
<p>첨부서류 :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p>					

# 1. 사업현황

## 가. 가공능력

제 품 명	연생산능력(톤)	주 원 료	비 고
1.			
2.			
3.			
계			

## 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	생 산		판 매				재 고	
	물 량	금 액	국 내		수 출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1.								
2.								
3.								
계								

##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

가 동 율			수 율			
연가동가능일 (A)	실가동일 (B)	가동율 (C)	제품명	원료투입량 (C)	가공량 (D)	수율 (D/C)

-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라. 원료수급 상황

구 분	계 약 재 배			수 매			기 타( )			합 계		
	품목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금액
전년 실적												
금년 계획												

※ 가 kg

마. 담보제공계획

보 증 서			부 동 산				
발 행 처	보증금액	기 간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	추정가액	선순위액

【 별지 제9호서식 】

##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 추천서

업 체 명 :

대 표 :

생산품목 :

지원신청액 :

위 업체의 199 년도 /4분기 가공원료 구입자금 신청서는 사실과 상위없으므로 지원대상업체로 추천합니다.

199 년 월 일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 ○ 지회장 (인)



【 별지 제10호서식 】

## 가공원료 구입자금 신청총괄표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지원년도, 구분)	대표자	소재지	주 요 생산품목	원료구입 총소요액	신청액	비 고

※ 소재지는 시·군·읍·면 까지만 표시

【 별지 제11호서식 】

## 업체별 자금신청서 심사결과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지원년도, 구분)	대표자	소재지	신청액	조정액	조정사유

【 별 표 1 】

## 자금신청서 심사기준

항 목	검 토 사 항	비 고
1. 원료구입시기와 자금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구입에 적기</li> <li>○ 일부는 맞고 일부는 시기에 안맞음</li> <li>○ 원료구입 시기가 아님</li> </ul>	
2. 원료소요량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소요량이 생산능력과 일치</li> <li>○ 원료소요량이 생산능력보다 많음</li> <li>○ 원료가 생산품목과 맞지 않음</li> </ul>	
3. 담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물건이 충분함.</li> <li>○ 추정액이 신청액과 비슷함.</li> <li>○ 담보물이 없음.</li> </ul>	
4. 수출, 판매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량 전량 판매</li> <li>○ 생산제품을 일부 판매</li> <li>○ 생산제품을 못팔고 있음.</li> </ul>	
5. 원료구입의 적정성,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와 계약재배하고 있음.</li> <li>○ 관내에 원료가 충분함.</li> <li>○ 타지에서 구입하거나 상인으로 부터 구입하여야 함.</li> </ul>	
6.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또는 납품계약에 따른 원료소요</li> <li>○ 장관상 이상 수상업체</li> </ul>	

[ 별지 제12호 서식 ]  
 ( 제12-1호 서식 )

## (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실적 보고

(단위: 천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계획						사업추진실적						정상추진여부 (부진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공사추진(월일)						
			대지	건물	기계류	계	보조	음자	자담	계	보조	음자	자담	부지확보		승인일자	착공일	준공예정
			평 (m')	평 (m')	점													

주) 전통식품개발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제12-2호 서식 )

## (                    ) 사업정산 실적보고

(단위: 천원)

사업지명 (조합및대표자명)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량(규모)						사업비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집행실적(정산)				비율	차년도이월액(E-F)	불용액(E-F)	
			대지	건물(A)	기계류(B)	대지(C)	건물(D)	기계류		C/D/AB	계	보조(E)	음자	자담	계	보조(F)				음자
			평 (m')	평 (m')	점															

주 1) 전통식품개발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지작성  
 주 2) 차년도 이월 및 불용액이 있을 경우 발생내역 및 사유서를 세부적으로 작성, 별도 첨부

[별지 제12-3호 서식]

## 생산 · 판매 실적보고

(199 . . . . . 현재)

업 체 (대표자)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생산능력	생 산 및 판 매 현 황								비 고 (문제점 및 부진사유)	
				생 산			판 매						
				계 획	실 적	비 율	계 획	실 적	비 율	판 매 액	수 출 액		
			톤/일 (ℓ/일)	톤 (ℓ/년)			톤 (ℓ/년)				백 만원	불	

- 주1) 전통식품개발사업, 특산단지, 산지일반가공산업으로 구분하여 별지작성
- 주2) 판매액은 수출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수출액 별도 표시
- 주3) 생산판매실적은 반기 누계실적 표기, 당반기 실적은 ( )내서 표기

( 별지 제12-4호 서식 )

## 포장개선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계				디자인 개발				용 기 구 입				비 고 (전통, 산지, 인증업체별 로 구분)
		계	보조	음자	자담	계	보조	음자	자담	계	보조	음자	자담	

(별지 제12-5호 서식)

## 포장개선사업 추진실적보고

(단위: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사 업 계 획								추진실적									
		사 업 비				용 기 구 입			디자인개발	디자인개발			용기구입		사 업 비				
		계	보조	융자	자담	용기 형태	수량	소요 금액	포장 방법	건수	소요 금액	계약 일	완료 예정 일	공정	수량	금액	계	보조	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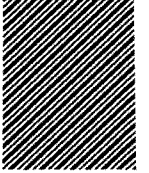
( 별지 제12-6 서식 )

## 포장개선사업 정산실적보고

(단위: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사 업 계 획								사 업 비 집 행				비율 내역				
		디자인개발				용 기 구 입			사 업 비	계	보조 (B)	융자	자담	비율 (B/A)	비율 내역			
		포장 방법	건수	소요 금액	용기 형태	수량	소요 금액	계	보조 (A)						융자	자담	디자인	용기

## Ⅱ. 기술 개발 및 정보화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입니다.

### 1. 목 적

-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주거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 도모
- 편리한 주거시설 설치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

### 2. 추진방향

- 생활개선시범마을 중심 우선지원 → 인근 파급지도
- 주거환경개선사업 유형별 선택 설치
  - 「부엌개량 + 목욕실 설치」,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 중 택일
- 농가별 주거환경개선과 마을환경개선사업 연계추진

###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보조)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추진계획 ('94. 9)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214,500 <sup>호</sup>	47,000	15,000	12,500	20,000	120,000
사업비	계	739,200 <sup>백만원</sup>	93,450	42,000	43,750	80,000	480,000
	음 자	739,200	93,450	42,000	43,750	80,000	480,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세부사업내용

###### ○ 부엌개량 + 목욕실설치

- 부엌개량 : 부엌의 실내화, 상·하수도시설, 입식작업대 설치,  
채광·환기창설비 등

- 목욕실 설치 : 상·하수도시설, 욕조·샤워기 설치, 채광시설 등

###### ○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 : 집열판·축열탱크, 온수배관시설 등

(2) 지원대상자 : 생활개선시범마을·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또는 일반 마을의 농가

(3) 지원단가 : 농가당 350만원 용자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구분	사업량	사업비					
		합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2,500 <sup>호</sup>	백만원 43,750	43,750	-	43,750	-	-
부산	160	560	560	-	560	-	-
대구	24	84	84	-	84	-	-
인천	20	70	70	-	70	-	-
광주	130	455	455	-	455	-	-
대전	80	280	280	-	280	-	-
경기	500	1,750	1,750	-	1,750	-	-
강원	980	3,430	3,430	-	3,430	-	-
충북	450	1,575	1,575	-	1,575	-	-
충남	2,770	9,695	9,695	-	9,695	-	-
전북	2,100	7,350	7,350	-	7,350	-	-
전남	3,560	12,460	12,460	-	12,460	-	-
경북	820	2,870	2,870	-	2,870	-	-
경남	900	3,150	3,150	-	3,150	-	-
제주	6	21	21	-	21	-	-

※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후 7년상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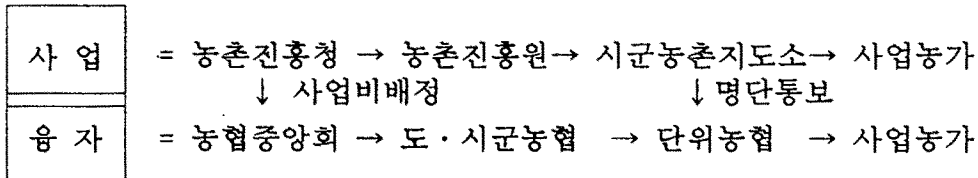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사업담당기관 및 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도국 생활개선과(전화 : 0331-292-4256)
- 시     도 : 도 농촌진흥원 지도국 생활개선과, 광역시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
- 시군자치구 : 시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 체계



(2)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중앙, 도, 시군단위 사업계획 수립
- 시군단위 농가교육 실시 : 시군농촌지도소에서는 개량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 실시
- 사업추진상황 파악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내용을 정기적으로 파악, 농가별 시행여부 확인
- 사업평가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가별 사업평가서 작성 및 개량 전후 사진 촬영

(3) 사업비 지원방법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선정된 농가명단을 용자취급기관(농협)에 통보
- 용자취급기관은 계통기관으로부터 용자한도가 배정되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과 용자금액이 확정 통보되면 사업실적 확인없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용자금을 일시에 전액 지급

라. 기타사항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본 사업용도로 지원된 용자금이 당초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 조치함

## <행정사항>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별지 제3호서식)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생활개선시범마을·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또는 일반마을의 농가

다. 신청절차

- 시범마을 : 마을대표(이장, 생활개선회장 등)는 마을단위로 희망농가명단을 작성, 시군농촌지도소장(또는 읍면상담소장)에게 신청
- 일반마을 : 희망농가가 시군농촌지도소장(또는 읍면상담소장)에게 신청
- 신청시기 : 사업희망 전년도 1월 31일까지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 및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마. 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우선순위

- 제1순위 : 생활개선시범마을 및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내 농가  
※ 생활개선시범마을(읍면당 1개정도씩 선정, 3개년간 계속 육성)
- 제2순위 : 일반마을의 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회·농업인후계자·4-H회원농가
- 제3순위 : 일반마을의 농가

(2) 선정절차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희망농가의 가옥상태, 시설개량 가능성, 자부담 능력,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후 선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및 신청서

마을구분 : 시범마을, 일반마을

마을명 : 읍면 리

농 가 명			사업내용			투자계획			사업 시기 (월)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부엌+ 목욕실	태양열 온수기	기 타	계	응 자	자부담	
						천원			

위와 같이 199년도 사업계획 및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시군 농촌지도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사업평가서

(단위 : 천원)

주소	성명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완료일	평가
		부역+ 목욕실	태양열 온수기	기타	계	용자	자부담		

199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시도별	사업내용	개량실적(호)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총소요액	응자액	자부담	기 타
	부엌개량 + 목욕실설치	/	/	/	/	/	/	/
	태양열온수 급탕기설치	/	/	/	/	/	/	/
	계	/	/	/	/	/	/	/

※ 사선 상단은 금분기 실적, 하단은 누계

※ 3/4분기 보고시는 시도별로 사업실적 사진을 6장씩 제출

89 -1	<b>농촌활력화 시범사업*(공공)</b> <b>(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입니다.

### 1. 목 적

- 농업인의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과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

### 2. 추진방향

- 생활개선 시범마을,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등 우선 지원
- 건강관리시설 설치 및 건강기구 비치 등 건강생활환경 조성
- 농업인 건강관리교육 및 체력단련장으로 활용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운영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개소 1,440	-	80	82	162	1,116
사 업 비	계	백만원 50,400	-	2,800	2,870	5,670	39,060
	보 조	25,200	-	1,400	1,435	2,835	19,530
	지방비	25,200	-	1,400	1,435	2,835	19,530

※ '96~2004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시범 설치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영농유형의 변화와 장시간의 농작업으로 농업인들의 농부중 심화
  - 농부중 19.8% ('94 농진청)
  - 호소율이 가장높은 증상 : 요통, 어깨결림
  - 농촌 부녀자들이 남자보다 더 높은 편임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을 위한 마을단위 건강관리시설 필요
- 농업인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 (2) 사업기간 : '97. 1~12월

##### (3) 지원대상 : 생활개선 및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또는 일반마을

##### (4) 지원단가 : 개소당 35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5) 지원시설

- 건강관리시설 : 기존건물 개·보수 또는 신축
    - 기본시설 : 체력단련실, 휴식실, 목욕실, 사우나실, 탈의실 등
    - 권장시설 : 찜질방 또는 샤워실, 조리실, 식품가공실, 노인실, 쉼터 등
  -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및 피로회복기구
    - 근력, 지구력, 조정력 등의 행동체력과 방위체력 향상 기구
    - 건강자전거, 벨트맞사지, 안마의자, 매트, 로우잉머신 등
- ※ 규모, 시설, 기구 등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82	백만원 2,870	1,435	1,435	-	1,435	-
건강관리시설 및 기구 지원	82	2,870	1,435	1,435	-	1,435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촌지도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도국 생활개선과 (전화 : 0331-292-4256)
- 시       도 : 도 농촌진흥원·지도국 생활개선과, 특·광역시 생활개선계
- 시군자치구 : 시군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생활개선 시범마을, 지역개발 시범지역, 일반마을 중
  - 사업수용 의지가 강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마을
  - 학습단체 활동이 활발하고 본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연중 농작업이 과중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마을

○ 우선순위

- 1순위 : 생활개선시범마을(1차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개발시범지역
- 2순위 : 일반마을

○ 선정절차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희망마을의 주민참여도, 활용가능인원, 학습단체 활동, 설치장소, 관리운영능력, 지도자 등을 검토한 후 심의회를 거쳐 선정하고 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
- 도 농촌진흥원장은 사업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확정된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도 농촌진흥원장 및 특·광역시 농촌지도소장은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 계획을 시군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의해 지도계획 수립
- 마을단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 사업지역 변경시에는 농촌지도소장이 변경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고 도 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농촌지도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거 마을대표에게 지원

마. 기타사항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본사업용으로 지원된 사업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건강관리실 활용 대장 비치
- 지속적인 보완 및 자체평가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사업시작년도부터 부동산은 10년, 동산은 5년간 타목적에 사용을 금함

### 나. 보고·기타

- 건강관리실 설치계획 보고 : 3. 25한[별지 제1호서식]
- 건강관리실 설치결과 보고 : 2/4~4/4분기말[별지 제2호서식]
- 건강관리실 설치현황카드 제출(결과보고와 함께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

건강관리실 설치계획

(금액단위 : 천원)

마을구분		마을명	가구수	인구	설치 장소	규모	사업비			사업 시기
시범	일반						계	지원	자부담	

< 별지2호 서식 >

건강관리실 설치 결과

(금액단위 : 천원)

마을명	설치 장소	규모	주요시설	사업비				비고
				계	지원	자부담	기타	

※ 관련사진 4매이상 제출

89 -2	농촌활력화 시범사업*(공공) (지역특화 시범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입니다.

### 1. 목 적

- 지역특성에 알맞는 새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새품종의 실용화 촉진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 고품질 생산기술과 협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집약형 선진농업기술 조기 정착 도모

### 2.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
- 협업경영, 시설의 현대화, 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공동출하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개발 보급 및 수출농업 육성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개소 4,553	1,197	302	376	678	2,000
사 업 비	계	백만원 406,209	78,500	27,840	35,459	64,410	200,000
	보 조	79,342	13,800	5,568	7,092	12,882	40,000
	용 자	166,283	35,200	11,136	14,183	25,764	80,000
	지방비	79,342	13,800	5,568	7,092	12,882	40,000
	자부담	81,242	15,700	5,568	7,092	12,882	40,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89년부터 UR대응책으로 사업 시작
- (2) 지원대상자 : 해당 특화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시범사업명	개 소 당		지 원 내 용
	규 모	사업비	
○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20a	25	자동개폐장치, 관비시설, 지중가온 시설 등
○ 인공배지양액재배	20a	120	자동화하우스, 인공배지양액재배, 지중난방시설 등
○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30a	500	국내개발 유리온실, 인공배지 양액 재배 시설
○ 트랙터부착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2ha	60	방제용 작업기, 시비, 인공수분
○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채소)	30-100a	500	자동화하우스, 지중난방, 양액재배 시설
○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화훼)	1.2ha이상	500	자동화하우스, 점적관수, 저온저장시설 등
○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양돈)	5-10농가 모든300두이상	500	공동사육시설, 정액채취 및 조제실, 종돈구입 등
○ 한우고급육생산	5-10농가 300두이상	400	툽밥개폐식우사, 조사료생산장비, 거세기구, 부대시설 등
○ 젖소생산성향상 시범마을	5~10농가 호당20두내외	150	사료배합기, 천정개폐식, 툽밥우사, 관리기구 등
○ 수출용 대형육계생산	5~10농가 10만수이상	300	계사자동화시설, 계분처리장, 사육 시설 등
○ 환경자동조절 버섯 생산	재배사균상 495m <sup>2</sup> 내외	128	원형회전식 균상시설, 온습도 자동화 시설 등
○ 풋옥수수, 밤고구마시설	0.3ha내외	67	하우스내 온습도 자동조절시설, 저온 저장고 등
○ 약초생산, 가공	가공시설 165m <sup>2</sup> 내외	80	절단기, 박피기, 액기스추출시설 등

#### (4)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나. '97사업비 내역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376	백만원 35,459	21,275	7,092	14,183	7,092	7,092
○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183	4,575	2,745	915	1,830	915	915
○ 인공배지양액 재배	41	4,920	2,952	984	1,968	984	984
○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4	2,000	1,200	400	800	400	400
○ 트랙터 부착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76	4,560	2,736	912	1,824	912	912
○ 우량농축산물생산 단지 (채소)	7	3,500	2,100	700	1,400	700	700
○ 우량농축산물 생산 단지(화훼)	3	1,500	900	300	600	300	300
○ 우량농축산물 생산 단지(양돈)	10	5,000	3,000	1,000	2,000	1,000	1,000
○ 한우 고급육생산	8	3,200	1,920	640	1,280	640	640
○ 젓소 생산성향상 시범마을	8	1,200	720	240	480	240	240
○ 수출용 대형 육계 생산	8	2,400	1,440	480	960	480	480
○ 환경자동조절 버섯 생산	10	1,280	768	256	512	256	256
○ 풋옥수수, 밤고구마 시설	9	604	362	121	241	121	121
○ 약초생산·가공	9	720	432	144	288	144	144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도국 원예축산과(전화 : 0331-292-4296)
- 시       도 : 도 농촌진흥원 지도국 소득지도과
- 시군자치구 : 시군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다. 대상자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대체가 필요한 지역
  - 기술낙후지역으로 기술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수출농산물 주산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 지역농업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농업인 선정
- 자부담 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농업인은 제외
- 선정절차
  -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영농규모, 경력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사항을 접수화하여 현지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역 협의회에 심의 요청
  - 협의회에서 선정된 농가 및 생산자단체 명단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제출
  - 농촌진흥원장은 시·군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검토한 후 확정

## 라. 사업시행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사업내용에 따라 지역농업종합개발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지구 참여농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도 농촌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사업추진을 위하여 입식작목의 품목, 시설물 건축, 생산자재 구입, 생산가공, 판매, 이익금 분배, 운영 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 ○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술의 타당성 등 검토

- 품목별 생산자조직과 정기적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을 평가
- 중앙 및 지방단위에 기술지원단 운영
- 사업포기 등 대상농가 변경시 도 농촌진흥원장의 승인 후 사업추진

###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작목입식후 3년간 기술지도 감독하고 연차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는 시군농어촌지도소장이 사후 기술경영지도 실시
- 도농촌진흥원장은 시·군별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결과를 평가 분석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사업단계별로 사진첩을 비치하여 홍보자료로 활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 관수시설	사업추진 연도	사업시작후 3년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금지	
	○ 지중가온시설	"	3년		
○ 인공배지양액 재배	○ 자동화 비닐하우스	"	10년		
	○ 양액재배 기본시설	"	10년		
	- 양액재배베드시설	"	5년		
	- 지중난방, 점적관수	"	3년		
○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 유리온실 시설	"	10년		
	○ 양액재배 기본시설	"	10년		
	- 양액재배베드시설	"	5년		
	- 지중난방, 점적관수	"	3년		
○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 저온저장고	"	10년		
	○ 트랙터 등 농기계	"	5년		
○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채소)	○ 자동화비닐하우스기본시설	"	10년		
	○ 경질판온실 기본시설	"	10년		
	○ 유리기본온실	"	10년		
	○ 양액재배 기본시설	"	10년		
○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화훼)	○ 자동화비닐하우스기본시설	"	10년		
	○ 저온처리 시설	"	10년		
○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양돈)	○ 돈사	"	10년		
	○ 화물차	"	5년		
○ 한우고급육 생산	○ 우사	"	10년		
	○ 트랙타	"	5년		
	○ 초파	"	5년		
	○ 콘포기	"	5년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젓소 생산성 향상시범마을	○우사	사업추진 연도	사업시작후 10년	사후관리기 간내 처분 금지	
	○트랙타	“	5년		
	○초과	“	5년		
	○곤포기	“	5년		
	○사료배합기	“	5년		
○수출용 대형 육계생산	○계사	“	10년		
	○로우더	“	5년		
○환경자동 조절 버섯생산	○버섯재배사	“	7년		
	○원형균상 시설	“	7년		
	○환경자동화 기자재등	“	3년		
○꽃옥수수, 밤 고구마 시설	○시설하우스	“	5년		
	○저온저장고	“	10년		
	○공동육묘장 등	“	5년		
○약초생산가공	○가공실(작업장)	“	10년		
	○세척기등 가공기자재	“	5년		
	○건조기 등	“	5년		

※ 시설 및 중요장비중 상기에 명시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내에 처분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단 사업비로 취득한 재산중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 등의 재산은 3년 이후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

#### 나. 보 고

- 대상농가 선정결과 보고 : 3월말까지
- 사업추진결과보고 : 11월말까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통계정보처리담당관실입니다.

## 1. 목적

- 농림수산업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키 위해 농림수산관련 정책·생산·유통 등 각종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농어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어민 자율방식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본·기술 집약적인 농림수산업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기여코자 함.

## 2. 추진방향

- 농림수산 부가가치통신망(VAN) 구축
  - '97년까지 농림부를 비롯한 농림수산관련 주요기관·단체 및 농어촌지역을 연결하는 농림수산부가가치통신망(VAN)을 구축함으로써
    - 농어민의 신속하고 편리한 농림수산관련 정보이용 환경 조성
    - 농림수산관련 기관·단체간 원활한 정보이용 및 교환을 통한 정보공유 체제 확립
- 농어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개발·보급
  - 농어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
  - 신기술 등 경쟁력을 높이는 정보
  - 농어민 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정보 등 파급효과가 큰 정보의 개발·보급
  - 농어민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전예측적 기능을 갖는 가공정보
  - 주요농산물의 수급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관측 정보
- 농어촌지역 정보이용기반의 조기구축
  - 농어촌지역의 정보수요확충 및 농어민의 정보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 농림수산업 관련 개인용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개발
    - 농어민 대상의 지속적 정보통신 이용교육
    - 농어민이 운영하는 전자게시판(BBS) 구축·운영
    - 정보수요조사, PC이용실태 조사 등 조사·연구활동 추진
    - 지역정보시스템

##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 3(농림수산경영정보의 제공)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비	계	127,839	7,014	3,404	3,269	12,327	101,825
	보조	127,839	7,014	3,404	3,269	12,327	101,825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농림수산 종합정보통신망(VAN) 구축·운영
  - 농림수산관련기관·단체를 연결하는 전산망구축
  - 농어업정보통신망(AFFIS) 가입자 ('96.7월말현재 : 19천명)
- 국내·외 농림수산관련 데이터베이스(DB) 개발 ( '96.7월까지 : 86개 개발)
- 농어업용 S/W개발 ( '96.7월말현재 : 9종개발)
- 농어민 정보통신 이용 및 S/W활용교육 ( '96.7월말현재 : 2,318명)
- 농어업정보통신망(AFFIS) 가입자 ( '96.7월말현재 : 19천명)
- 기타 농림수산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심포지움 세미나 등 개최)

##### 나. '97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안(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림수산정보화사업	-	3,269	3,269	3,269			
○ 인건비		1,385	1,385	1,385			
○ 사업비		1,245	1,245	1,245			
-종합통신망 구축·운영		721	721	721			
-DB 구축	20종	262	262	262			
-농어업용 S/W개발	10종	125	125	125			
-농어민정보통신이용교육	600명	82	82	82			
-이용환경조성		55	55	55			
○ 운영비		639	639	639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재단법인 : 농림수산정보센터 (☎ 02-589-2039)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통계정보관실 통계정보처리담당관실 (☎ 02-500-2631)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재)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때도 동일하다)
- 사업비 지원방법
  - 국고보조(정액)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어업용 S/W는 농어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급
- 농어민에게 정보제공을 위하여 개발된 DB는 수시 최근자료로 수정하여 정보를 제공
- 정보통신교육을 이수한 농어민 및 농어업정보통신망(AFFIS)가입자에게 수시 안내책자를 발송하여 회원을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 전산기 및 통신 장비(S/W포함)	○ 설치일로부터 5년	○ 사후관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적용
○ 개인용컴퓨터 (프린터포함)	○ 구입일로부터 5년	○ 사후관리기간 중 노후화 등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적용
○ 농어업용S/W	○ 개발완료일로부터 10년	○ 사후관리기간 중 농어촌지역 환경변화 또는 기타사유로 농어업용 S/W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업무용 차량	○ 구입일로부터 5년	○ 사후관리기간 중 노후화 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51조 적용
○ 건물임차	○ -	○ 본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처분은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현재액 및 사후관리사항 등을 기록유지

나. 보고·기타

- (재)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농림수산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을 매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농림수산정보화사업은 (재)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b>91</b>	<b>농림수산물기술개발(공공)</b>
-----------	----------------------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기술과입니다.

### I. 현장애로기술개발

#### 1. 목적

- 농어민들이 영농어 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경쟁력을 제고

#### 2. 추진방향

- 농어민들이 영농어 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사업을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

####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10조(농림수산물과학기술진흥)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투 자 계 획						비 고
총사업비	'94	'95	'96	'97예산(안)	'98이후	
1,690	190	300	250	250	700	재 원 : 농특세 사업 1,650 구조개선사업 4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분야 : 8개 분야의 영농어 현장의 애로기술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가공·유통, 생산기반·기계화, 생활·환경, 임업, 수산업)
- 영농, 영림, 영어현장에서 재배, 사양, 양식,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 환경정보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로서
  - 지역주민이 개발을 원하고,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며, 기술개발 시 농림어업의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연구개발분야
  - 기술내용이 단순 명쾌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효과가 확실하고 높을 것
  - 생산자가 실용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사업등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어민(단체)등 산·학·관·연의 협동 연구팀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 전액 국고지원
  - 3년이내 3억원까지
- 기업 참여시 정부의 사업비 지원기준
  - 대기업 : 총사업비의 50% 지원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80% 지원

나. '97년도 사업비(예산)내용 : 250억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농림수산물기술관리센터(관리전문기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5-6번지 옥토빌딩 3층
  - 전화번호 : 575-6900(FAX 575-6905)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기술과 (TEL 503-7281~3)

다. 자금지원 예정자 : 농림수산물기술개발과제 연구 수행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제출된 분야별 연간 사업계획과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도별 농림수산물특정연구 사업계획을 매년 2월28일까지 확정

○ 사업비 지원방법

- 전문기관의 장이 농림수산물특정 연구과제 협약서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장에게 지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술개발연구추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실시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
- 기술개발성과 보급 및 활용 : 농림부 및 농진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나. 보고·기타사항

사 항 별	대 상 기 관	보고,승인 제출기관	비 고
○ 연간사업계획수립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해양수산부장관, 농진청장, 산림청장	농림부장관	제 출 (1. 31일)
○ 연구개발과제의 심의 평가 결과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농림부장관	제 출
○ 협약사항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총괄연구책임자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 (농림부장관)	승 인 (보 고)
○ 연구개발비 변경 사용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승 인
○ 연구개발결과 - 연차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 (농림부장관)	제 출 (제출현황보고)
- 최종보고서 초록, 자체평가의견서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 (농림부장관)	제 출 (제출현황보고)
-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농림부장관	보 고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총괄연구책임자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 (농림부장관)	보 고 (보 고)
○ 연구개발진도관리 - 진도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총괄연구책임자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제 출
- 연구발표회 개최결과	"	"	제 출

사 항 별	대 상 기 관	보고승인 제출기관	비 고
○ 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결과			
- 최종보고서 배포결과	주관연구기관의장 또는 총괄연구책임자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보 고
- 연구개발보고서 요약(초록)	"	"	제 출
- 연구보고서의 배포제한	"	농림부장관	승 인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연구성과활용결과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 (농림부장관)	보고(2.20) (종합보고 3.31)
○ 기술료의 징수			
- 실시계약체결결과, 기술료 및 징수 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 (농림부장관)	보 고 (분기별종합보고)
○ 기술료의 감면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 (농림부장관)	신 청 승 인
○ 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 실적			
- 기술료 징수결과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 (농림부장관)	보 고 (매월종합보고)
- 기술료 사용실적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 (농림부장관)	보고 (2. 28) (종합보고 3.31)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나. 신청자격 : 영농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기술을 발굴하여 대학, 연구기관, 농어촌지도소, 산업체, 농어민(단체)등으로 구성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요건>

-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 2에 의한 연구 및 지도기관
- 2) 국·공립 연구기관
-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5)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요원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 8)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영리법인은 10인)을 늘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다. 신청절차 : 농림수산기술개발과제 공모(일간지 및 농·축·수산전문지 게재)시 「농림수산특정연구과제(신청)계획서」를 접수기간내에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에 제출

### 라. 구비서류

- 농림수산특정연구과제(신청)계획서 8부 및 과제신청서 디스켓 1매
- 기업참여시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기업참여시) 및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농어민(단체)의 참여시 농어민(단체)의 농림수산기술개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마.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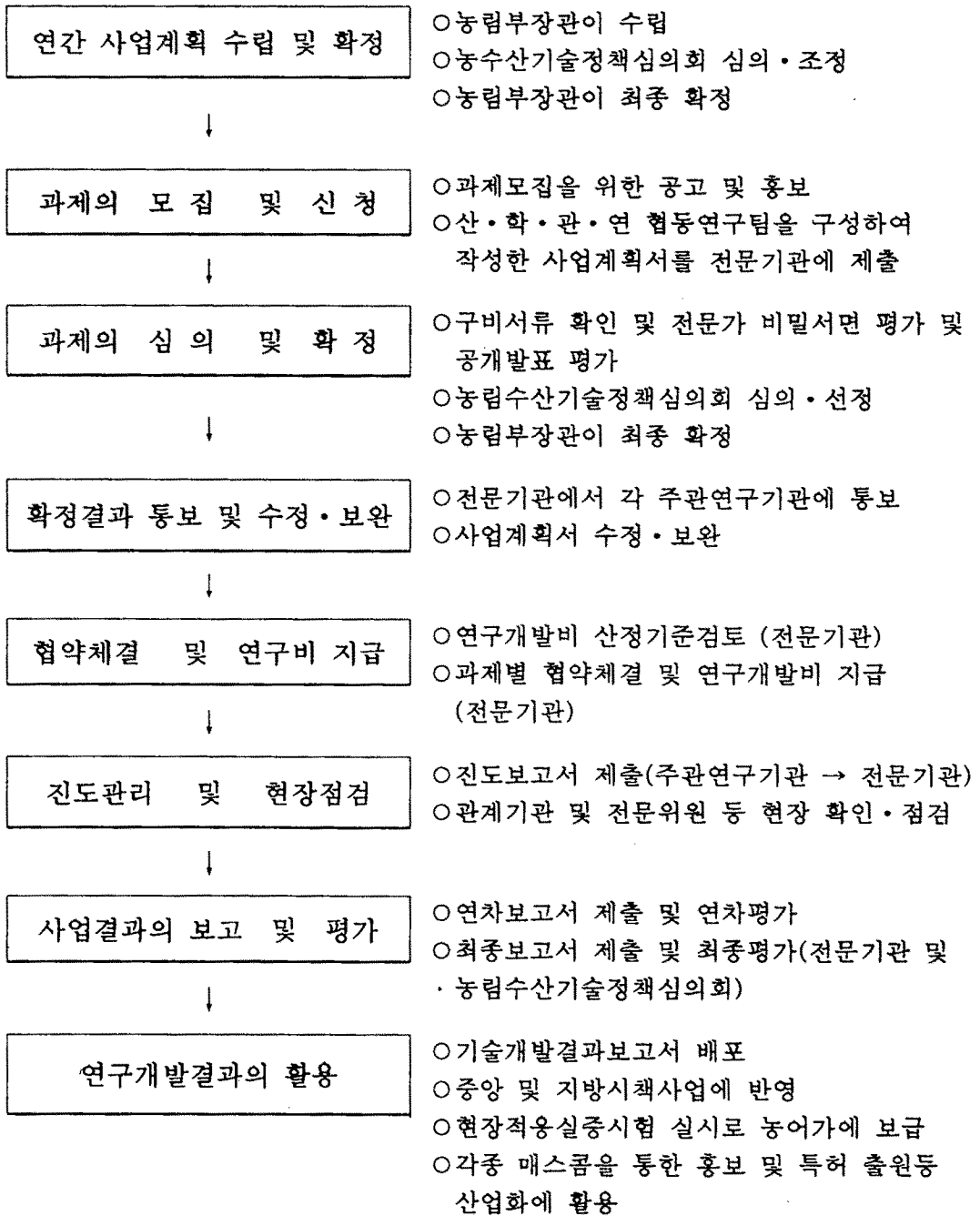
### (1) 선정기준

- 기술개발연구의 필요성
  - 현장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농어민의 기술개발수요가 높은 과제
- 기술개발연구 목표의 타당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창의성, 구체성, 명확성, 실천성 여부
  - 과제연구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타당성 여부 등
- 기술개발연구계획의 적정성
  - 기술개발내용, 사업비 규모, 연구기간의 적정성 여부
  - 기술개발 연구원의 능력, 경험, 유기적 참여도 등
- 현장보급 및 이용가능성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성 여부
  - 실용화·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어 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여부
- 중복, 유사성 검토
  -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추진중인 과제 또는 유사과제는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2) 우선순위

- 영농어현장, 농어촌생활, 농수축산물 수출의 애로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어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 ※ 산업체, 농어민(단체) 농어촌지도기관 참여과제는 과제선정·평가시 우대 배점 부여

### (3) 선정절차 및 사업추진 체계도



## II. 첨단기술개발

### 1. 목적

-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어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다른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어업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향상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대외경쟁력 제고

### 2. 추진방향

- 농림어업분야의 첨단기술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95년부터 10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여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환경농업, 유통·가공분야에서 기술도약의 계기를 마련
  - 타 산업의 첨단기술을 농림어업분야에 접합시킬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산·학·관·연의 협동연구팀 구축

###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

### 4. 연도별 지원 계획

(단위 : 억원)

투 자 계 획					비 고
총사업비	'95	'96	'97 예산(안)	'98-2004	
3,000	313	300	260	2,127	재원 : 농특세 3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첨단농림어업 기술개발 사업
- 이미 개발된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산업기술을 농림어업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개발 사업
- 환경보전형 농림어업기술 연구개발사업
- 첨단산업 기술을 농림수산업의 유통·저장·가공기술에 적용하는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연구 개발 사업



○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농어민(단체)등 산·학·관·연의 협동연구팀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 전액 국고지원
  - 5년이내 10억원까지
- 기업 참여시 정부의 사업비 지원기준
  - 대 기 업 : 총사업비의 50% 지원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80% 지원

나. '97년도 사업비(예산)내용 : 260억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농림부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5-6번지 옥토빌딩 3층
- 전화번호 : 575-6900(FAX 575-6905)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기술과 (TEL 503-7281~3)

다. 자금지원예정자 : 농림수산기술개발 과제수행자

라. 사업시행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과 동일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과 동일

나. 보고·기타사항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과 동일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 나. 신청자격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과 동일
- 다. 신청절차 : "
- 라. 구비서류 : "
- 마.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연구개발 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 목표의 실현가능성
- 개발대상 기술의 신규성, 첨단성, 복합성 및 기반성
-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등이 우수한 과제

### (2) 우선순위

- 고부가가치, 수출촉진,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 ※ 산업체, 농어민(단체), 농어촌지도기관 참여과제는 과제선정·평가시 우대 배점 부여

### (3) 선정절차 및 사업추진 체계도 : 현장애로기술개발 사업과 동일

92 -1	기술지도사업*(공공)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입니다.

### 1. 목 적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로운 재배기술·품종·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실증시범사업

### 2.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우량품종의 시범재배로 우량 신품종의 조기확대 보급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로운 재배기술·품종·기계 등을 실증시범을 통하여 확대보급
- 협업경영으로 생산비절감 및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품질향상
- 농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포장 및 출하를 일관추진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개소 10,007	4,095	430	506	696	4,280
사 업 비	계	백만원 50,132	7,422	3,984	2,974	4,430	31,322
	보 조	24,812	3,527	1,922	1,487	2,215	15,661
	지방비 자부담	24,812 508	3,527 368	1,922 140	1,487 -	2,215 -	15,661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식량작물시범

###### ○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 사업량 : 140개소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0.4ha 내외, 새로 개발육성된 우량품종, 기자재 등을 지원 전시시범하여 농업인들의 현장관찰 교육장으로 활용
- 지원단가 및 조건 : 55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 다수성 신육성 벼품종 시범

- 사업량 : 18개소 (제주 제외 도당 2~3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1ha 내외, 새로 개발 육성된 다수성 품종과 상토·완효성 복비·제초제 등을 지원, 종자증식으로 농업인 자율교환에 의한 신품종 조기 보급
- 지원단가 및 조건 : 3,3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 사업량 : 111개소 (직파 주재배지역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5ha내외, 줄뿌림파종기와 까락제거기 등 기계 및 제초제·도복경감제 등 지원, 직파재배의 새 피해 방지대책 등 입모율 향상 및 잡초방제, 도복대책 등의 실증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4,16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벼 무경운 재배 농업인 실증시험

- 사업량 : 36개소 (제주 제외 도당 4~5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험내용 : 0.3ha내외, 완효성복비·종자·직파파종장치 지원  
수령논·휴경논 등에 무경운기계이앙 또는 무경운직파 실증시험
- 지원단가 및 조건 : 3,000천원 전액보조(국비50%, 지방비 50)

○ 정밀균형 벼 재배 시험

- 사업량 : 8개소 (제주제외 도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험내용 : 20ha내외, 20~30농가로 단지를 조성하여 레이저  
균평기 지원, 정밀 정지작업체계 실증시험
- 지원단가 및 조건 : 22,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벼 수확동시 맥류파종 실증시험

- 사업량 : 9개소 (맥류 주재배지역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험내용 : 10ha내외, 2모작 지역을 중심 대단위 단지를 조성  
하여 벼 수확과 동시에 맥류파종 실증시험
- 지원단가 및 조건 : 12,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2) 소득작목 시험

○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시험

- 사업량 : 63개소 (채소 주재배지역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험내용 : 20a내외, 새 품종 및 우량상토·점적관수시설·교배용  
별 지원, 우량묘 육성·자동점적관수이용 채소 안정  
생산, 꽃가루받이 별 이용 수분매개 실증시험
- 지원단가 및 조건 : 5,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
  - 사업량 : 30개소 (과수 주산지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1ha 내외, 새로 개발된 토양수분 감응형 관수시설과 머리빨 가위벌 지원, 인공수분에 의한 결실률 향상과 상품과율 향상으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7,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백합·튤립 종구생산시범
  - 사업량 : 20개소(백합·튤립 등 구근 주재배지역 도별 1~3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10a 내외, 우량묘 구입비·점적관수시설·구근수확기계 등 지원, 우량묘 자구번식과 점적관수시설로 종구비대 촉진, 구근 수확기계이용 수확노력 절감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10,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참깨 무피복 기계화 재배단지
  - 사업량 : 4개소 (참깨 주산지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3-5ha 내외, 줄뿌림파종기·예취결속기·배토기·정선선별기 등 지원, 기계화 일관작업에 의한 참깨 무피복재배 실증
  - 지원단가 및 조건 : 14,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 시범
  - 사업량 : 18개소(젖소 자동사육지역 도당 2개소)
  - 개소당 규모 시범내용 : 젖소 40두 내외 사육농가, 톱밥운동장·급수시설·분무장치 가축분처리 등 시설과 음이온사료·설레늄·비타민 등 사료첨가제, 유방염진단기 등을 지원, 유방염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 및 우유 오염예방으로 우유품질 향상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15,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농가 육성

- 사업량 : 16개소 (한우 및 젖소 다두사육지역 도별 2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사료작물 2ha이상 재배농가, 옥수수 싹품종 종자·  
파종기계·수확기계·벧짚자동결속기 등 지원 조  
사료 생산의 생력화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20,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3) 환경보전농업 기술지도

○ 가축분 발효퇴비화 시범

- 사업량 : 25개소 (도당 3~4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산란계 20천수 또는 돼지 500두 내외의 농가, 가축  
분 및 톱밥운반기·혼합기·발효장치 등 지원으로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 및  
이용 등 가축분의 자원화와 환경오염 방지 시범
- 지원단가 및 기준 : 20,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저투입 환경농업

- 사업량 : 8개소 (제주 제외 도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5ha 내외의 시범마을, 완효성비료·가축분뇨 정화  
처리시설·미립자방제기 등 지원, 완효성 비료 시용에 의한 비료·농약 저투  
입 농업 실천,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등을 조합한 환경농업기술 종합시범
- 지원단가 및 기준 : 14,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개소 506	백만원 2,974	1,487	1,487	-	1,487	-
○ 식량작물 시범	322	990	495	495	-	495	-
- 식량작물우량품종 비교시범	140	76	38	38		38	
- 다수성 신육성벼 품종 시범	18	60	30	30		30	
- 벼 직파재배 농업인실증시범	111	462	231	231		231	
- 벼 무경운재배 농업인 실증 시범	36	108	54	54		54	
- 정밀균평 벼 재배 시범	8	176	88	88		88	
- 벼 수확동시 보리파종 실증 시범	9	108	54	54		54	
○ 소득작목 시범	151	1,372	686	686	-	686	-
- 채소관비재배시범	63	316	158	158		158	
-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 관수시범	30	210	105	105		105	
- 백합·튤립종구생산 시범	20	200	100	100		100	
- 참깨 무파복 기계화 시범	4	56	28	28		28	
- 고품질 위생우유생산 시범	18	270	135	135		135	
-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	16	320	160	160		160	
○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33	612	306	306	-	306	-
-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	25	500	250	250		250	
- 저투입 환경농업	8	112	56	56		5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사업담당부서

구 분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농촌진흥원	시군농촌지도소
식량작물 시범	식량작물과 (0331-292-4291)	작물지도과	기술보급과
소득작목 시범	원예축산과 (0331-292-4295)	소득지도과	기술보급과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	작물보호과 (0331-292-4297)	작물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산지역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우선순위

-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객관적으로 동일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단체

○ 선정절차

- 농촌지도소장이 시범사업 신청농가의 사업수행능력, 시범사업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농촌지도소내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라. 사업시행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각도 농촌진흥원장(특·광역시농촌지도소장)은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 계획을 시군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
  - 시군농촌지도소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선정, 기계장비 구입, 생산물판매, 예산집행 및 새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평가계획을 포함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
  - 사업계획의 일부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내에서는 농촌지도소장이 사업을 변경승인하고
    - 시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원장이 변경승인
- ※ 조정 변경내용은 상위기관에 보고

###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가급적 시범농가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지원단가 및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마. 기타사항

- 당해 사업년도말까지 사업이 완료가능한 사업 우선 추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후 3년간 특별관리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성과의 파악 및 미흡한 점을 발굴 개선방안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고
		부 터	까 지		
(1) 식량작물시험 ○ 다수성신육성벼품종 시범		사업추진 년 도	사업완료 후 2년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금지	
○ 벼 직파재배농업인 실증	○ 줄뿌림파종기	"	"	"	
○ 벼 무경운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 까락제거기	"	"	"	
○ 정밀균평벼재배시범	○ 직파파종장치	"	"	"	
○ 벼 수확동시 보리파종 실증시범	○ 레이저균평기	"	"	"	
	○ 보리파종작업기	"	"	"	
(2) 소득작목시범					
○ 채소관비재배 시범	○ 점적관수시설	"	"	"	
○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 관수 시범	○ 관수시설	"	"	"	
○ 백합 튜립 종구생산 시범	○ 구근수확기계	"	"	"	
	○ 점적관수시설	"	"	"	
○ 참깨 무피복 기계화 재배단지	○ 줄뿌림파종기	"	"	"	
	○ 예취결속기	"	"	"	
○ 고품질 위생우유생산 시범	○ 톱밥시설	"	"	"	
○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 농가 육성	○ 수확기	"	"	"	
	○ 결속기	"	"	"	
	○ 파종기	"	"	"	
(3)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					
○ 가축분 발효퇴비화 시범	○ 스키드로다	"	"	"	
	○ 혼합기	"	"	"	
○ 저투입 환경농업	○ 미립자방제기	"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중 위에 나타나지 않은 시설 및 장비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보 고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 상황 보고 : 3월말까지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 11월말까지

※ 세부사업별 보고서 양식 (농촌진흥청 정기보고 서식에 의함)

92 -2	기술지도사업*(공공)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입니다.

### 1. 목 적

- 농촌여성의 능력 및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발굴·지원으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농외소득원 증대

### 2. 추진방향

- 농촌여성들을 농가소득증대사업의 경영주체로 육성
- 농촌여성들의 능력에 맞는 일감의 발굴·지원 육성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수산물의 가공·상품화
- 마을 인근공장과 연계한 임가공활동 추진
- 기존단지의 내실화를 위한 판로 및 전문기술 지도 강화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173개소	28	9	10	18	108
사 업 비	계	백만원 4,452	292	180	200	540	3,240
	보 조	2,226	146	90	100	270	1,620
	지방비	2,226	146	90	100	270	1,62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농촌인구의 여성화·노령화와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증대에 대한 요구증가
  -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활동 동기 : 생활비 및 자녀학비 조달, 농가소득 증대
  - 농외소득활동 중사여성의 사업지속희망률 : 90.3%(농촌진흥청 조사)
- 도시근로자 가계에 비해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가 낮음
  -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70.8%('95), 도시 133.5%
- 외국에 비해 농외소득률 저조
  - 한국 31.8%('95), 일본 81.0%('93), 대만 70.8%('90)

##### (2) 지원대상자 : 농촌여성이 경영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 지역농산물 및 특산물을 가공·생산 하고자 하는 마을
- 전통식품으로서 수요가 증대되어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생산 하고자 하는 마을
- 마을 인근 농공단지내 산업체와 연계한 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

##### (3) 지원단가 : 개소당 2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4) 지원내용 : 공동작업장 확보, 생산설비 설치, 기술습득 및 재료 구입, 포장지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발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0개소	백만원 200	100	100	-	100	-
농촌여성일감 갖기사업	10개소	200	100	100	-	1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도농촌진흥원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도국 생활개선과(전화 : 0331-292-4256)
- 시 · 도 : 도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 특·광역시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
- 시군자치구 : 시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농촌여성이 운영하는 공동사업으로서
  - 농촌여성의 능력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종목을 선택한 사업지역
  - 국내산 농수산물로 원료조달이 용이한 사업지역
  - 시장성 및 수익성이 있어 판로확보가 용이한 사업지역
  -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가공장려 필요성이 있는 농산물을 가공생산 하고자 하는 사업지역
  - 마을주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자금조달이 용이한 사업지역
  - 당해 사업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가능한 사업지역을 우선 선정

○ 선정절차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사업희망마을의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인·허가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를 추천하고 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
- 도농촌진흥원장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각 도농촌진흥원장 및 특·광역시 농촌지도소장은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을 시군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
-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자체사업계획을 확정
- 사업당년 1월 하순부터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지역 변경시에는 지도소장이 변경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고 조정변경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농촌지도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거 사업대표에게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사업기간동안 공동 작업장 확보, 생산설비 및 재료구입, 기술습득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 사업의 운영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
- 각 도에서는 사업에 관한 자체지침을 작성해 이에 준하여 기술지도 및 판로알선 등을 지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며,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시·군 및 시·도에서 제정한 지방자체지침에 의거 처분을 제한함

#### 나. 보고·기타

-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 계획보고 : 3월 25일까지[별지 제1호서식]
-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 추진실적 보고 : 12월 25일까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 계획

---

### 1. 사업명 및 생산제품

### 2. 사업지역

### 3. 사업배경

### 4. 사업추진개요

- 참여인원 :
- 대표자 성명 :                   (나이)
- 사업규모 :

사업장 규 모	사 업 내 용	소 요 예 산				제품생산 가능시기	예상소득 (1인당)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계						

- 자부담분 조달방법 :
- 공동작업장 확보방법 :
- 참여농가의 평균소득 : 농업소득                   천원, 농외소득                   천원

### 5. 사업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 6.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별지 제2호서식>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 추진결과

1. 사업 추진결과

- 사업명 및 생산제품
- 사업지역
- 추진개요 (대표자 성명 및 나이)

사용내역	사업비(천원)			참여인원 (명)	작업장 규 모	자부담분 조달방법
	계	지원액	자부담			

2. 소득분석

참여인원	조수입	경영비	순소득	1인당순소득	제품생산시기

※ 조수입, 경영비, 순소득은 사업장의 전체의 것을 기록하고, 1인당 순소득은 앞의 전체순소득을 참여인원으로 나눈 것임

92 -3	기술지도사업*(공공)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입니다.

## 1. 목 적

- 농산물 규격 출하의 조기 정착
- 규격포장, 포장재질 및 외부표시 사항의 개선
- 지역 특산품의 상표화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의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 2. 추진방향

- 규격출하가 미진한 품목과 지역을 우선 지원 → 시범지역 육성
-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지역 및 작목 집중지원
- 기술지도를 병행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있는 지도

## 3. 근거법령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1조 제1호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개소)		528	96	48	48	48	288
사 업 비	계	백만원 4,308	156	130	130	222	3,670
	보 조	2,154	78	65	65	111	1,835
	지방비	2,154	78	65	65	111	1,835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재배지역이나 시기별로 출하되는 농산물의 포장방법과 포장단위가 달라 유통의 효율성 저하
- 동일한 등급의 농산물일지라도 포장단위 뿐만아니라 외부표시사항, 포장단위, 포장재질 등에 따라 농가수취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여 농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지원대상자는 농산물규격출하가 미진한 품목과 지역에서 포장개선기술시범 사업을 희망하고 사업효과와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
- 시·군농촌지도소에서 시범농가와 협의하여 농산물출하를 위한 포장재 제작 지원
-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있는 지도사업 전개로 농산물규격출하의 조기정착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 시범요인 : 규격포장, 포장재질개선, 외부표시사항개선, 소포장개발, 지역특산품의 상표화 등

####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읍 자		
계	개소 48	천원 129,600	64,800	64,800	-	64,800	-
경기	5	13,500	6,750	6,750	-	6,750	-
강원	5	13,500	6,750	6,750	-	6,750	-
충북	5	13,500	6,750	6,750	-	6,750	-
충남	5	13,500	6,750	6,750	-	6,750	-
전북	5	13,500	6,750	6,750	-	6,750	-
전남	5	13,500	6,750	6,750	-	6,750	-
경북	5	13,500	6,750	6,750	-	6,750	-
경남	5	13,500	6,750	6,750	-	6,750	-
제주	2	5,400	2,700	2,700	-	2,700	-
서울	1	2,700	1,350	1,350	-	1,350	-
부산	1	2,700	1,350	1,350	-	1,350	-
대구	1	2,700	1,350	1,350	-	1,350	-
인천	1	2,700	1,350	1,350	-	1,350	-
광주	1	2,700	1,350	1,350	-	1,350	-
대전	1	2,700	1,350	1,350	-	1,350	-

※ 시범지역 개소당 2,700천원 보조(국비 1,350, 지방비 1,35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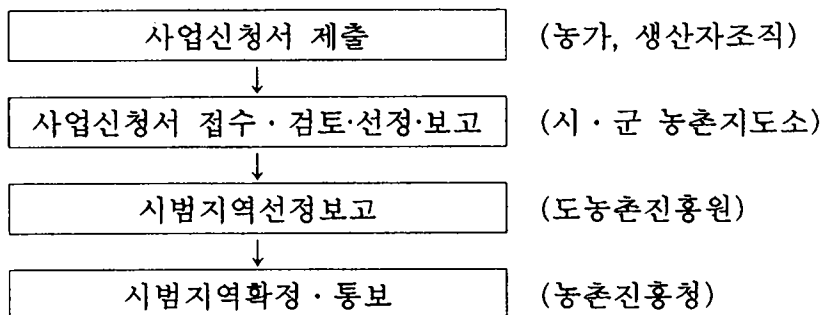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 농업경영관실 경영개선담당관실 (전화 : 0331-296-2326)
- 시       도 : 농촌진흥원 시험국 경영과
- 시군자치구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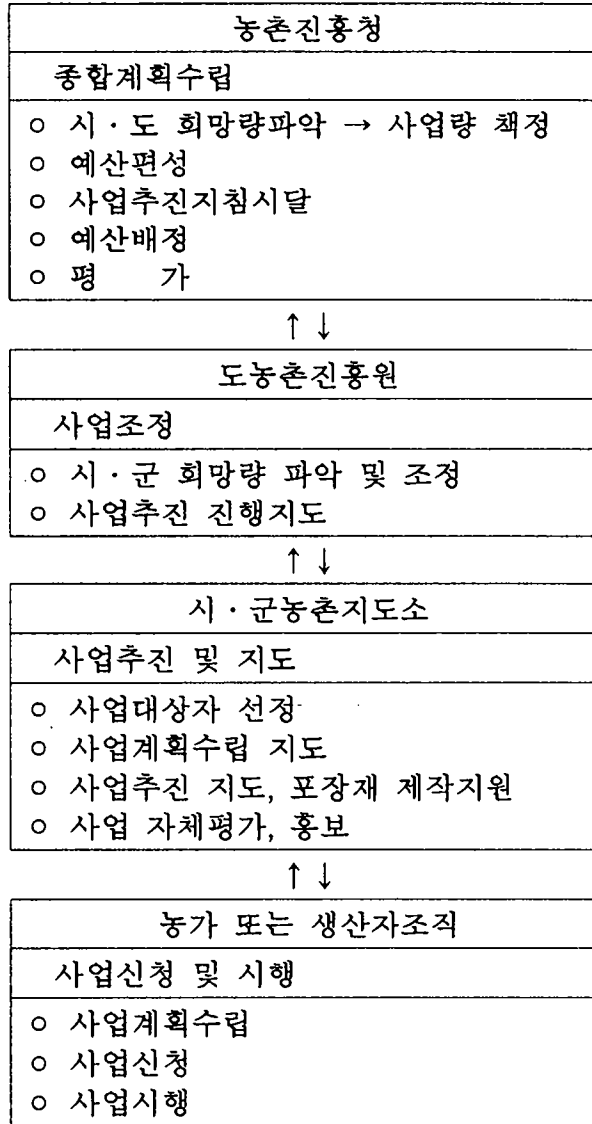
- 동일작목을 생산하는 농가(5호이상)나 생산자조직으로 포장개선기술 시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사업추진 후 자체효과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 출하시장 조사 및 판로개척 선행 생산자조직과 농가
- 집단재배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당작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농가나 생산자조직
- 가급적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조직과 농가

(2)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체계



○ 사업비 지원방법

- 시·군농촌지도소장이 포장재 제작지원
- ※ 행정지원대상자 또는 기 수혜자는 제외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나. 보 고

○ 사업신청 :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별지 제1호서식]

○ 선 정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통보

○ 사업결과 : 분기말 1개월내(최종보고는 12월 중순까지)

- 보고양식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중 “예상”을, 결과는 “실제사업결과”를보고

다. 점검·평가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 내용을 파악 농가 시행여부 확인

○ 시범사업 전후 비교평가 후 우수사례는 인근농가에 홍보

○ 시범포장재는 시범농가 및 인근지역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동일작목 재배농가 5호이상 또는 생산자조직

다.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농촌지도소에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대표농가명 :

○ 대표농가주소 :

Tel(                    )

2. 시범사업 현황

지역명	작목명	참여농가수	면적	(예상)출하량	포장방법		사업시기
					포장단위	포장재료	
시(군), 읍(면)리(동)		(호)	(ha)	(톤)			

3. 시범요인 :

4. 주출하처 :

5. 소요(예상)비용 :            천원(보조 :            천원, 자부담 :            천원)

6. (예상)소득효과

손실항목	이익항목
1. 감소될 수입 ○ ○ 소계 2. 증가될 비용 ○ ○ 소계 3. (예상)손실 계(A)	1. 증가될 수입 ○ ○ 소계 2. 감소될 비용 ○ ○ 소계 3. (예상)이익 계(B)
포장개선 (예상)사업효과(B-A)	금액 :            천원



92 -4	<b>기술지도사업*(공공)</b> <b>(농업인 학습단체육성 및 품목별 전문교육)</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입니다.

### 1. 목 적

- 전문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확립과 기술경쟁력 함양
-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의욕 배양
- 농촌생활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실천자로서 능력배양
- 농기계 실수요자에 대한 기계조작 및 점검정비 능력배양

### 2. 추진방향

- 품목별 농업인 조직 중심의 소집단 대상 연중교육 실시
- 단일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경영교육 및 참여식 실증교육 강화
-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농업 인력양성 교육
- 지도력 배양과 지역사회 활동강화 및 생활개선 실천의지 함양
- 최신형 기종 중심으로 취급조작 및 정비교육

###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제1항(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2항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천명 15,221	5,777	1,044	1,074	1,074	6,252
사 업 비	계	백만원 135,019	32,562	10,033	10,622	11,686	70,116
	국비(중앙)	22,932	2,762	1,955	2,094	2,303	13,818
	보 조	10,707	1,811	988	908	1,000	6,000
	지 방 비	101,380	27,989	7,090	7,620	8,383	50,298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촌진흥원, 시군농촌지도소

(2) 추진계획

○ 중앙 : 정예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8천명)

- 시책관련 교육(2.0천명) : 전업농가, 선도개척농, 농업회사법인요원

- 실수요품목별교육(1.0천명) :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희망농가

- 유관기관, 단체위탁 및 협력교육(5.0천명) : 영농공개강좌, 농기계정비기능사

보수교육

○ 도 : 지역특화작목 전문교육 및 신기종 농기계교육(19.6천명)

- 시책관련교육(2.1천명) : 기계화영농사, 산업기능요원

- 실수요품목별교육(15천명) : 지역특화작목 교육

- 학습단체회원교육(2.5천명) : 선도지도자, 농촌여성지도자교육

○ 시군 : 현장애로기술 및 취약기술 실천과제 교육(1,047천명)

- 시책관련교육(123천명) : 전업농가, 농기계 실수요자, 농기계 부녀자 교육, 농기

계안전보수 교육, 신규후계자교육

- 실수요품목별교육(652천명) :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 학습단체회원교육(272천명) : 4-H 회원과제교육, 4-H 회원 진로지도교육,

농촌여성과제교육, 생활개선회 교육

(3)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별표 1]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명)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안(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지방비
			계	국 비	보 조	
<b>계</b>	<b>명 1,074,644</b>	<b>백만원 10,622</b>	<b>3,002</b>	<b>2,094</b>	<b>908</b>	<b>7,620</b>
< 기술지도 >	7,250	345	345	345	-	-
○ 품목별전문교육(중앙)	7,250	345	345	345	-	-
< 기술지도사업보조 >	133,847	1,056	528	-	528	528
○ 청소년교육	19,500	324	162	-	162	162
○ 품목별 상설교육	62,016	462	231	-	231	231
○ 생활개선회교육	52,331	270	135	-	135	135
< 농촌활력화 시범사업 >	21,302	760	380	-	380	380
○ 농업기계교육훈련	21,302	760	380	-	380	380
< 농업인후계자 육성 >	28,843	1,749	1,749	1,749	-	-
○ 후계자, 전업농교육등 7종	28,843	1,749	1,749	1,749	-	-
< 지방비 >	883,402	6,712	-	-	-	6,712
○ 새해영농설계교육등 5종	883,402	6,712	-	-	-	6,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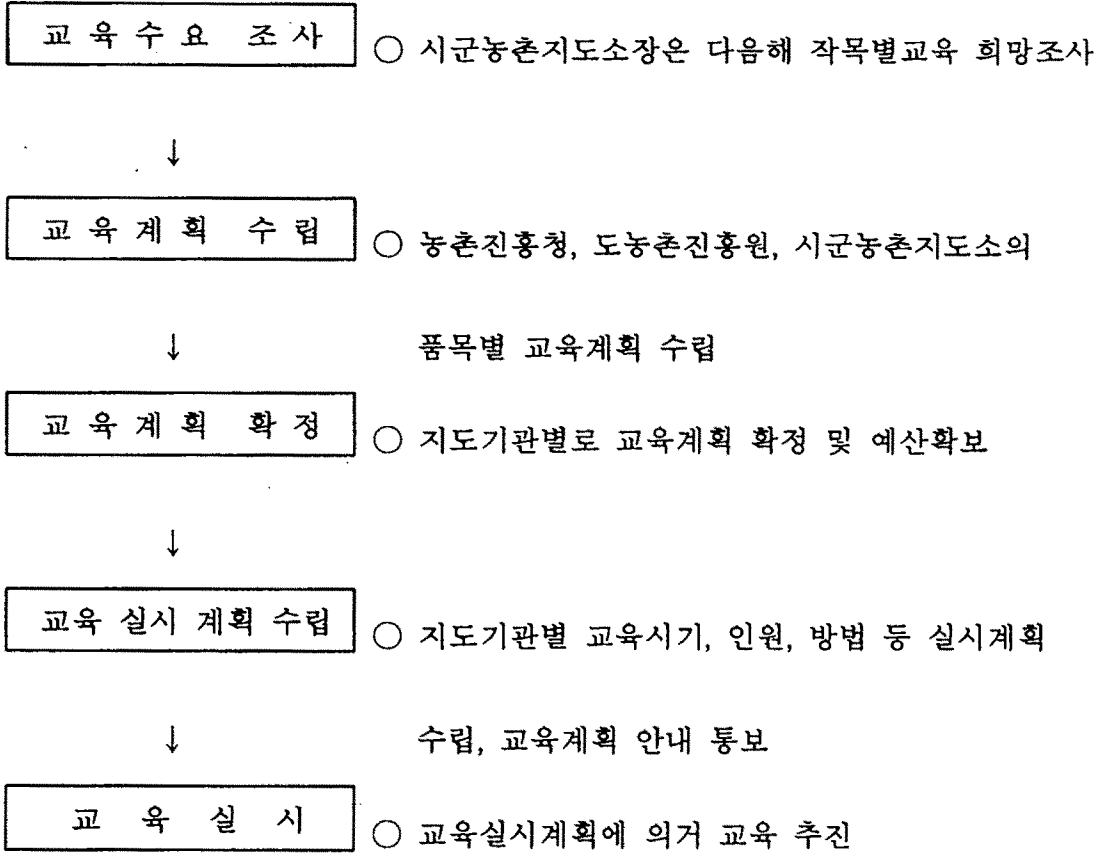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시군 농촌지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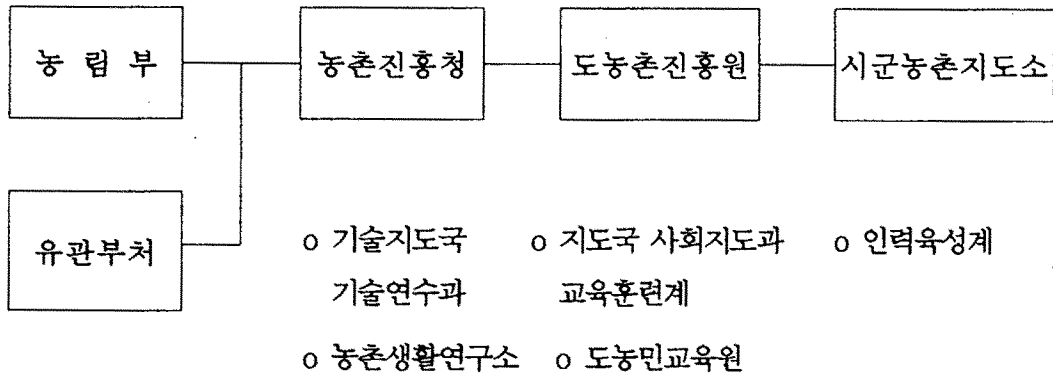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도국 기술연수과 (전화 : 0331-292-4258)
- 시       도 : 도농촌진흥원 사회지도과
- 시       군 : 시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도농촌진흥원장, 시군농촌지도소장
- 점검 및 평가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내용을 파악 사업별 시행여부 확인
  - 시군단위 자체 사업평가회 실시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

### 나. 교육수요조사

- 교육실시 전년도에 경영형태, 규모, 표본조사 등을 통한 품목별·분야별 교육수요 분석
- 평소 교육 및 현장지도 등 농업인 접촉시 교육희망사항 반영

### 다. 보고·기타 :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의함

[별표 1]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내용)	방법
농촌진흥청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2~3월(5일)	명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작목에 대한 영농경험이 있고 보다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자</li> <li>○ 시군농촌지도소의 교육수요조사에 희망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희망작목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과정 설정(배,포도,양돈,느타리버섯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합숙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강의,실습,견학</li> <li>- 야간:영농정보교환,시청각,기타</li> </ul> </li> </ul>
"	전업농전문기술교육	4~9월(3일)	1,6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농 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중 채소,밭작물,과수,화훼, 특작분야에 선정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농 선발분야별 전문과정</li> </ul>	"
"	선도개척농교육	6~11월(4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도 선도개척농으로 선정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분야별 전문교육(경종,축산,원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숙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교육,전산교육,유통교육,위탁교육 등</li> </ul> </li> </ul>
"	선도농어가 교육	4일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농어가로 선정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전문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 합숙교육</li> </ul>
"	농업회사법인교육	3월(3일)	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회사법인 대표</li> <li>○ 도단위 지도담당 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회사법인 설립 동기</li> <li>○ 회사재무, 회계관리</li> <li>○ 농정시책 및 컴퓨터교육등</li> </ul>	전일합숙교육

교 육 기 관	과정별	시기 (기간)	인원	교 육 대 상	세부교육과정 (내 용)	방 법
농 촌 진흥청	농업기계 정 비 기 능 사 보수교육	7월 (3일)	50	○ '91년 이전 농기계 정 비기능사 1급 자격취 득자 및 갱신자로서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 '91이후 신개발 농기계 위주 교육	비 합 속 (경비자부담)
농 촌 진흥청 (도별희 망주산 지 역)	영농공개 강 좌	3, 9월 (1일)	5,000	○ 전문기술교육 참여 희망 농업인	○ 개방화 대응 지역주산 성장작목	이론강의병행 질의응답식교육
도농촌 진흥원 또는 주 산단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전문교육	3~12월 (1~2일)	도자율 획 정 15,000	○ 작목별 주산단지 요원 및 교육희 망 농업인	○ 지역특화작목	지역별 실정 에 맞는 교육 방법선택운영 (핵심기술, 경 영설계 등)
도농촌 진흥원	개방화대 응선도지 도자교육	4~11월 (1일)	1,500	○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회 등 각급학 습단체 핵심교육	○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및 지도력배양 등	강의 및 사례 발표
도농촌 진흥원 또는 시군농촌 지도소	산업기능 요원교육	3~11월 (3일)	1,156	○ '97 산업안전기능 요원으로 편입된 자	○ 농촌지역 예비 후계자로서 지 도력 배양 ○ 정신교육, 선 진지견학 등	비 합 속 (강의, 실습 및 견학)
도 농민 교육원	기 계 화 영 농 사 교 육	연중 (4주)	1,000	○ 기계화영농사	○ 종합반 편성 운영	이론 및 실기실습
도 농민 교육원	농촌여성 지 도 자 교 육	3~11월 (2~3 일간)	960	○ 생활개선회 임원	○ 농가경영합리화 ○ 농산물가공 ○ 생활개선회 활동	강의,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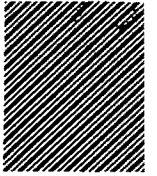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내용)	방법
시군농촌지도소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12월 (연간 4회이상)	62,016	○ 품목별 조직 농업인 대상 중심	○ 품목별 생산 및 유통 단계별 핵심 기술 지도	강의, 토의, 사례 발표, 실기 실습, 견학 등
시군농촌지도소	전업농가 교육	3~10월 (2일)	10,000	○ 신규 쌀 전업농가	○ 고품질 저비용 경영 기법 등	강의, 사례 발표, 시청각 교육
시군농촌지도소 (지역별 주산지의 공공 시설)	새해영농설계교육	1~2월 (1일)	590,000	○ 품목별 조직 농업인 ○ 주산단지 등 참여 희망 농업인	○ 공통교과 : 새 품종, 농어촌 발전 대책, 지역 농정 시책 ○ 전문교과 : 과정별 전문 기술 교육, '97 개선 과제, 핵심 기술	(강의, 토의, 사례 발표 등)
시군농촌지도소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농한기 (2일)	15,000	○ 농업기계 공동 이용 조직 기간 요원, 신규 농기계 구입 실수요 농가 ○ 육묘상자 구입 확인을 받은 전농가	○ 신규 농업기계 기종	교육기종 대상자 운전 조작, 점검 기술 실기 실습
시군농촌지도소 또는 부락단위	농업기계 부녀자 교육	농한기 (2일)	5,000	○ 농업기계 보유 농가 부녀자 및 교육희망 부녀자	○ 점검요령, 기초 운전 작업 기술 및 교통 안전	실기 실습 중심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내용)	방법
시군농촌지도소 또는 부락단위	농업기계 안전사용 보수교육	3~11월 (1일)	78,756	주행성기종 보유농가(트랙터, 경운기 등)	도로교통법규 및 농기계 안전 사용법	각종농기계교육 훈련시병행 실시
시군농촌지도소	신규후계자교육	4~10월 (2일)	8,227	'96년도에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정신교육 영농설계 및 진단요령	강의, 사례 발표, 시청각교육 등
"	경영기술연찬교육 훈련	10~11월 (2일)	6,360	농업인후계자 중 경영능력 보강이 필요한 자	품목별 핵심 기술 교육 WTO에 대응한 농정시책	"
"	4-H회원진로지도교육	연 중 (1주)	4,500	농업희망 4-H회원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관 확립	현장체험식교육 (유관기관·단체)
"	4-H회원과제교육	연 중 (1일)	15,000	핵심 4-H회원 및 영농후계세대 회원	과제분야별 교육	강의, 토의, 사례 발표, 실습
"	농촌여성과제교육	연 중 (2~3일)	200,000	시군생활개선회원	의식주, 생활 개선, 가정경영 등	강의, 실기실습
"	생활개선회	연 중	52,331	시군생활개선 회원	여성지도력 배양 지역사회활동 참여	강의 및 수련회

여 백

### Ⅲ. 인 력 육 성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 입니다.

### 1. 목적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 도모

### 2. 추진방향

- 정규 농업계 학교출신자 및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중 소지자의 조기 영농 정착 유도
- 품목별 균형있는 농업 후계인력 육성
- 농업인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 미혼여성의 농촌 정착유도

###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농업인후계자 등의 육성)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81~'95까지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업량	177,404	88,394	9,010	10,000	10,000	60,000	
사업비	계	3,596,483	1,046,483	200,000	250,000	300,000	1,800,000
	읍 자	3,596,483	1,046,483	200,000	250,000	300,000	1,800,000

\* 사업량 및 사업비에는 어업인후계자 육성분이 포함되었음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고령화로 농촌인력이 점차 줄어들어 따라 영농후계인력육성 필요

##### 2) 지원대상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와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업인후계자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3)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4) 지원조건

#### 가) 융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금리 및 융자기간 : 국고융자 100%, 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상환(10년)
- ※ 농업인후계자가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년도내에 융자받지 아니하면 후계자 자격이 상실됨
-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중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자와 사업자금 지원은 신청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자는 의무 종사기간(3년)이 끝난 후 농업인후계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
-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인 후계자가 분할 납부 또는 자금회전시기에 이자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조정 가능

나) 융자 취급기관

○ 경종 농업분야 : 농협중앙회, 축산분야 : 축협중앙회

※ 융자취급기관의 중앙회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읍·면 단위에 위치한 계통기관(단위조합)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5) 지원시설의 종류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분야별	사업작목	지원대상 사업내역
경종농업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수경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벚꽃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대형농기계, 컴퓨터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돈, 기타 축산 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지원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료, 농약, 유류구입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나. '97사업비(예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명 10,000	백만원 250,000	250,000	-	250,000	-	-
농어업인 후계자육성	10,000	250,000	250,000	-	250,000	-	-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후 5년상환

\* '97사업비 내용에 어업인후계자 육성분이 포함되었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시·군, 읍·면 : 대상자 심의·선발 및 지원액 결정, 사후관리
- 농촌지도소 : 대상자 심의·추천 및 선정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
- 농·축협의 단위기관 : 사업비 지원, 지원유자금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실 농촌인력과(TEL 02-503-7216~7)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과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농촌지도소

다.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 아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가 400점이상 된자중에서 선발 및 지원
- < 평가기준 >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 욕(150점)	○ 읍·면지도협의회에서 평가(150점) - 상 : 150점(신청자의 15%) - 중 : 120점(신청자의 70%) - 하 : 90점(신청자의 15%)	○ 읍·면지도협의회에서 현지 확인후 평가(필 요시 전문심사위원회 에서 현지확인 평가)
학력 및 영 농 교육훈련 (150점)	○ 학력(100점) - 농업계 대학졸업자 : 100점 -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 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 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영농 정착의욕이 강한자에 대하여는 재학중인 자도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졸업자에 준하는 학력 인정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50점) - 6개월이상 : 50점 - 3개월이상 : 40점 - 1개월이상 : 30점 - 15일이상 : 20점 - 7일이상 : 10점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농촌진흥청, 각도, 농 ·축협의 훈련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 기관이 인정한 독농 가농장 및 연수기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경력 (10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영농 경력(영농 4-H 경력포함)(100점)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1년미만은 10점)하되, 4-H경력은 15점씩 가산 -근군무경력(보충역 포함)은 영농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단위로 5점씩 가산(1년미만은 5점)	-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업계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포함)졸업자 및 재학중인자는 재학기간을 영농 경력으로 인정 ○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전 영농 종사경력도 인정 ○ 농업 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 경력으로 인정
영농기반 (150점)	○ 영농기반(150점) - 2.0ha이상 : 150점 - 1.5ha~2.0ha미만 : 125점 - 1.0ha~1.5ha미만 : 100점 - 0.5ha~1.0ha미만 : 75점 *본인·배우자 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 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각 사업작목별 평가 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2) ○ 영농기반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배점(15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 -영농기반 전부 있는 경우 : 30점 -영농기반의 50%이상 있는 경우 : 15점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영농사업 계획(150점)	○ 영농 사업계획(150점) - 상 : 150점(신청자의 15%) - 중 : 120점(신청자의 70%) - 하 : 90점(신청자의 15%)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 *사업계획의 타당성·치밀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농업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중 영농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여성에 대하여는 총점(7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50점 가산</li> <li>○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교육(경영과정포함)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점수(50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10점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1/2 이내로 영농기반 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li> </ul>

2) 우선순위

- 본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농업계 학교출신자 우선선발등)를 제외하고는 평가 점수가 높은자 순
  - 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 있게 후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농업계 학교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

3) 선정절차

가) 대상자 심의·추천

< 일반적인 경우 >

① 읍·면지도협의회 심의·추천

- 읍·면장은 읍·면 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해서만 평가한후 적격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

< 읍·면지도 협의회 >

- 읍·면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 농촌지도소장이 지정하는 읍·면담당 농촌지도소 공무원
- 농·축협등 관련 읍자취급기관 임직원
- 선도농가 3인등 총 6인내외(읍·면 농업인 후계자 대표 1인 이상포함)

② 농촌지도소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 심의·추천

- 농촌지도소장은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장이 통보한 읍·면지도협의회 심의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 적격자(평가점수합계가 400점이상된자)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장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후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400점이상 된자)만 지원금액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시지역의 농촌지도소장은 읍·면지도협의회 심의사항을 시의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의토록 함.

<농촌지도소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회>

- 시·군 농촌지도소 전문지도사
- 농업계 학교 교사 또는 교수
- 품목별 선도농가 4인등 총 6인 내외  
(관할구역내의 농업인 후계자 대표 2인 이상 포함)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에 위임된 경우 >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하여 지역내 농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 대상자의 심사·추천이 가능한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존재하고 이들 단체에 심사·추천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지원 대상자 심의·추천 권한을 부여
  - 이 경우 위임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지역내 농업인들이 알수 있도록 공지·홍보
-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업인후계자 지원대상자 심의·추천 권한을 위임 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은 품목별 전문심사위원회(6인이내)를 구성하고 농업인후계자 자금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 적격자(평가점수합계가 400점이상된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농촌지도소장에게도 통보(별지 제2호서식)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자는 추천한 생산자단체와 동일 품목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에 한함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은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용자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품목별 생산자단체 전문심사위원회>

- 농촌지도소장이 지정하는 전문지도사
- 농·축협등 관련 용자취급기관 임직원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이 지정하는 농업인 4인등 총 6인이내(이 경우 가능한한 농업인후계자 2인이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나) 대상자 순위 결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과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정하되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업인후계자 선발에 있어 지역 농업 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 부여등 객관적근거 마련)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하여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지원금액만 결정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 구청장 및 농촌지도소장은 시·군, 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자영농과,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전문학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출신 우선 선발 원칙)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농고, 강진농고, 안동농고, 경남자영고, 서귀농고(9개교)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농업인 후계자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 관련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 종사자로 봄)

#### 다)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 구별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분된 예산범위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함.
  -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 구별 선정 및 지원인원(산업기능요원 지원대상포함)의 20%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종합점수가 400점이상 된 자만 선정 또는 자금지원
  - 부부가 모두 농업인후계자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가능 (다만 부부의 주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부부모두에게 사업자금 지원은 가능하나 지원자금 신청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자순으로 즉시 대체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농촌지도소에 통보 및 계통 보고
- 시·도지사는 농업인후계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 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과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도 선발 및 지원 인원에 포함 집계)

#### 라. 사업시행

#####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농촌지도소에 제출하여 농촌지도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변경 불가)

## 2) 사업비 지원방법

### ○ 사업자금 배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 농업인후계자육성자금 위탁관리자(농협중앙회장)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축협중앙회장에게 대여
- 농·축협중앙회장은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기관에 배정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 변경요청을 할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 융자실시등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업자금융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 의함
- 사업자금의 융자는 농업인후계자 편의에 따라 1인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대출, (후취)담보대출로 분할 융자할 수 있음.
- 융자취급기관장은 농촌지도소장이 통보한 영농기술교육 이수자와 영농 기술교육 면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 지원하여야 하며, 융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한 후 농촌지도소장의 사업 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인출토록 함. (단 공통교육은 이수하지 않은 자도 융자 가능)
- 농촌지도소장은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 추진 일정을 검토한 후 자금소요 성격으로 보아 사업추진전 일시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가축입식, 농지구입등)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 할수 있도록 함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마.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1) 교육훈련

- 농촌지도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후계자로 선발된 자에게 농업인후계자로 성장발전함에 필요한 각종지원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공통교육과 영농정착에 필요한 분야별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통 교육	2~5일간	농촌지도기관	사업시행년도에 선발된 농업인후계자
영농기술교육	1주이상	선도농가, 농업계학교, 농촌지도기관등	"

※영농기술교육기관은 현지여건, 농업인후계자의 희망 등을 감안하여 농촌 지도소장이 결정

- 다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농업인후계자는 영농기술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 영농사업계획상의 분야와 관련된 농업계학교(대학, 전문대, 고교등) 졸업자
  - 최근 2년이상 영농사업계획상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림부, 농진청 계통기관이 인정하는 전문영농교육기관에서 4주이상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및 1개월이상 독농가(선도농가, 시범농장등)입주훈련 이수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영농사업 계획상의 관련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공통교육은 후계자로 선정된 자 전원이 이수토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촌지도기관에 예비후계자와 농업인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확보·지원하여야 함
- 농촌지도소장은 영농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와 영농기술교육 면제자를 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읍·면사무소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2) 해외연수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후계자중 사업추진 실적이 뛰어나고,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와 농업인후계자 육성업무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해외연수 기회부여등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시행

## 3) 교육훈련 계획 보고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국내교육훈련 및 해외연수계획(예산포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년도 전년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을 사업대상자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날 또는 최종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 구청장은 용자취급기관장의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여야 하며, 용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외의 타용도로 전·유용된 사실이 있거나, 사업장 이탈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이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용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농촌지도소장은 예비후계자와 농업인 후계자의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농업인후계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 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



## 나. 농업인후계자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1) 사업취소사유

- 농촌지도소장과 읍·면장은 농업인후계자가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아래사항의 용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자(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제 근무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예 : 수도권작 후계자가 정육점운영 등)중 농업인후계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자
- 기타 시장·군수, 구청장과 농촌지도소장이 농업인후계자로 존속시킬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2)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용자취급 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용자 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용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 상환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 말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반기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다. 사업장소의 이전

- 농업인후계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업지도는 주소지 관할 농촌지도소에서 담당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한 후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등)에 통보 및 보고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융자 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이관조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인 교체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융자취급 기관에서 담당)

#### 라. 농업인후계자의 교체 및 승계

##### 1) 농업인후계자 교체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농촌지도소와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2) 농업인후계자 승계

- 사업자금 용자후 농업인후계자의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승계여부 결정(이 경우, 승계일 기준 4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에 한함)
  - 농촌지도소장은 승계자에게 반드시 농업인후계자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액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농촌지도소, 용자취급기관등)에 통보
  
- 미혼인 여성후계자가 결혼으로 인해 영농에 계속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 경우 위의 농업인후계자 승계 절차에 준함)

## 마.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

### 1)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촌발전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

### 2) 한국농어업경영인연합회 활동지원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는 한국농어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건전한 농민단체 육성 도모

### 3) 농산물의 판매지원

- 농·축협중앙회장은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생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
  - 농산물 협동출하반에 적극 참여 유도
  - 규격포장, 운송, 판매등 알선 지원
  - 판매매장을 이용한 주말시장개설등 전시판매 지원
  - 농축산물 유통정보와 간행물 배부, 운송자금의 지원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과 축협중앙회장은 농·축산물 수매비촉시 농업인 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를 알선

4) 농촌인력육성업무 추진에 관련된 세부사항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후계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예비후계자를 육성·관리
- 동사업실시요령 이외의 농촌인력육성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자체계획 수립후 추진

바. 보고 (보고기관 → 농림부)

보고기관	보고내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농업인후계자 선정결과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별지 제3호서식
농촌진흥청장	농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해외연수 포함) 계획	사업시행년도 전년말까지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반기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
농·축협중앙회장	음자실적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
농·축협중앙회장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 취소자 현황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시·도지사	예비후계자 등록현황	매년 1.30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표 1]

예비후계자육성

가. 신청대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 현재 30세 이하이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해당되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음.

나. 신청·접수

-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중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예비후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시 시·군 농촌지도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 신청받은 농촌지도소장은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예비후계자 신청서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

다. 교육·훈련

농촌지도소장은 등록된 예비후계자에 대하여 영농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전담지도사의 지도아래 영농 4-H활동 혹은 독농가,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예비후계자의 자질과 부모의 영농기반 등을 감안하여 작목선택에 대한 상담 실시
-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예비후계자는 한국농업전문학교 등에 입학 추천

라. 예비후계자 정리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농촌지도소장이 예비후계자 등록을 취소함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중 전업, 도시이주등으로 영농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중 40세이상 되는자

마. 예비후계자 신청현황 보고

농촌지도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말 현재 예비후계자 등록현황을 익년도 1.20까지 시·군을 통해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익년도 1.3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와 후계자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
  - 단, 시지역과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에는 주소지 관할 농촌지도소

### 나. 신청자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해당되는 자 중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 단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미만인 자로서 수도작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와 30세미만인 미혼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 후계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도 신청 가능
-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사업시행 년도 1.1현재 40세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증 전역희망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 미만인 자
- 산업기능요원(농업인후계자)으로 편입된 자중 편입된 날로부터 사업시행년도 1.1현재 복무날자가 2년이상 경과된 자

###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년도 1.31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 라.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증명서, 예비후계자 등록확인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마. 기타사항

- 시장·군수, 구청장과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은 '97년도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지침을 준용하여 결정

[별표 2]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 분 품 목	0.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 는 농가	1.0~1.5ha 미만에 준하 는 농가	1.5~2.0ha 미만에 준하 는 농가	2.0ha이상 에 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노지채소	0.25	0.25~0.5	0.5~0.75	0.75~1.0	1.0
시설채소	0.1	0.1~0.2	0.2~0.3	0.3~0.4	0.4
사 과	0.15	0.15~0.3	0.3~0.45	0.45~0.6	0.6
배	0.11	0.11~0.22	0.22~0.33	0.33~0.44	0.44
포 도	0.25	0.25~0.5	0.5~0.75	0.75~1.0	1.0
감 귤	0.17	0.17~0.34	0.34~0.51	0.51~0.68	0.68
	두 미만	두 미만	두 미만	두 미만	두 이상
한 우	3	3~6	6~10	10~12	12
낙 농	2	2~3	3~5	5~7	7
양돈(비육)	25	25~50	50~75	75~100	100
양돈(번식)	7	7~14	14~21	21~28	28
	수 미만	수 미만	수 미만	수 미만	수 이상
양계(산란)	700	700~1,400	1,400~2,100	2,100~2,800	2,800
양계(육계)	1,000	1,000~2,000	2,000~3,000	3,000~4,000	4,000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담 배	0.25	0.25~0.5	0.5~0.75	0.75~1.0	1.0
인 삼	5	5~10	10~15	15~20	20
양 잠	0.45	0.45~0.9	0.9~1.35	1.35~1.8	1.8
	평미만	평미만	평미만	평미만	평이상
버 섯 (느타리)	25	25~50	50~75	75~100	100

※ '93농축산물 표준소득(농진청자료)참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주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작목만 50%인정

[별지 제1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 1. 현 황

영농 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벼섯 재배사				기타
농기 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
재배 현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젓 소	돼 지	닭					기타
기 타 특 기 사 항									



## 2. 사업계획

○ 사업명 :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음자	자담
계								
농지 구입								
농기계구입								
축사 신축								
한우 입식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농지 구입				←→
한우 입식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타(향후 영농 계획 등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후계자추천명단

추천 순위	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최종 학력	평가기준 (점수)								지원 자금
					영농 정착 의욕	학력	교육 훈련	영농 경력	영농 기반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별지 제3호서식]

## 농업인후계자선정결과보고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 계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40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 )로 표시함.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계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계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계획(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자 자금	기타자금	
예)					
한우입식	10두	20,000	20,000		'97. 4월중순
농지구입	1,000평	20,000	20,000		'97. 4월초순
축사신축	200평	20,000	20,000		'97. 4월중순~7월중순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후계자 지원자금을 사용코자 하니 인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직인)

음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 예비후계자 · 후계자 관리카드

사 진 (반명 합판)	①성명 (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고유번호	③연락처 전화번호 :
	④현주소	⑤정착사업장소	⑥주사업(희망)작목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후계자	년 분기 백만원
			전업농	년 분기 백만원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결혼여부:㉑기혼 ㉒미혼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병역 및 예비후계자 · 후계자 등의 경력

⑫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역	. . .		. . .		
예비후계자	. . .		. . .		
후계자	. . .		. . .		
전업농가	. . .		. . .		

⑬포상경력 · 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가족사항(본인제외)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년 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구 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 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 별 규모(평, m', 두, 수 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li> <li>○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 유리온실,저온냉장고, 스프링클러등)종류별 규모(대)</li> <li>○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li> </ul>							
경영실적 (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읍면상담소장 또는 주사업작목담당 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년에는 농업인후계자 1년차, 2년차, . . . . . 등을 구분기입
-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중,하,문제있음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인후계자 사업취소 의뢰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혼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 '81년도부터 사업취소 연도별로 작성

###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 서식]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경사유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군농촌지도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용 자 실 적 보 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용 자 액		미용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서울 · · · · · · · · · · · ·						
제주						

※ 매분기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지원자금 회수불가능한 부실후계자(사업취소자) 현황**

시·도 별	사업 취소 연도 별	지원자금 회수불가능 사업취소자 인적사항						지원자금회수현황(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선정 연도	사업 작목	취소 일자	취소 사유	지원 년도	지원액 (용자액)	기상 환액	회수불능액			회수 불가능 사유
											계	원금	이자	
합 계														
서울시 · · · 제주도														

※ '81년부터 매년도 반기까지 누계로 집계 작성

◇ 회수 불가능 사유(아래 “양식”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채무 관련인 전원 무재산 상태로 강제 집행 불가능자 :     명
- 본인 행방불명, 보증인 무재산으로 회수 불능자 :     명
- 강제 집행에 따른 경비가 채무관련자의 재산보다 많아 회수 불가능한 자 :     명
- . . . . .

◇ 회수 불가능 자에 대한 대처방안(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 예비후계자 신청서 접수대장

연번	신 청 년월일	성 명	성별	주 소 (전화번호)	학력 (연령)	사업분야 (작목명)	신청금액 (백만원)

[별지 제13호 서식]

## 예비후계자 등록현황

### 1. 성별·직업별·연령별 인원

(단위 : 명)

시도별	성 별			직 업 별			연 령 별					
	계	남	여	농업종사	학생	기타	20세이하	21~25	26~30	31~35	36세이상	
서울 · · · 제주												
계												

### 2. 분야별 인원

(단위 : 명)

시도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서울 · · · 제주													
계													

※ 작성시 유의사항

- 예비후계자중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되 매년 12월말 기준 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 입니다.

## 1. 목 적

-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경영체 확보
- 타산업부문 종사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 육성

## 2. 추진방향

- 21세기 우리 농업 발전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선발
-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시설장비·기술·정보·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지원
- 농가의 발전수준등에 따라 차등 지원

## 3. 법령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전업농업인 등의 육성)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업량(호)		82,540	15,340	12,000	8,200	9,000	38,000
사		7,535,150	782,000	666,500	625,170	775,165	4,686,315
업	<쌀> 국고보조	340,750	47,000	58,750	41,125	41,125	152,750
	지방비보조	340,750	47,000	58,750	41,125	41,125	152,750
	국고융자	235,000	47,000	37,600	26,320	26,320	97,760
	농협융자	352,500	70,500	56,400	39,480	39,480	146,640
	자부담	141,000	23,500	23,500	16,450	16,450	61,100
	농지관리 기금	4,238,150	280,000	331,500	340,670	410,665	2,875,315
비	<기타> 국고융자	1,887,000	267,000	100,000	120,000	200,000	1,200,000

※ 축산 전업농은 축종별(한우, 젓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육성·지원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배경

- WTO 체제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등을 위해 '92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

##### (2) 지원대상

- 품목별로 일정수준의 경영규모·영농경력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확정한 자

##### (3) 호당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쌀전업농 (호당평균)
  - 농기계구입 : 23.5백만원(국고보조 25%, 지방비보조 25%, 국고융자 16%, 농협융자 24%, 자부담 10%:연리5%, 1년 거치 5-7년 상환)
  - 농지규모화 : 34.1백만원(영농규모적정화 자금융자: 농지구입자금 연리 3%·20년균분 상환, 임차료 선급금 무이자·3~10년 균분상환)
- 기타 품목 전업농 : 50~100백만원(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 품목과 농가수준에 맞게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등 지원

##### (4) 지원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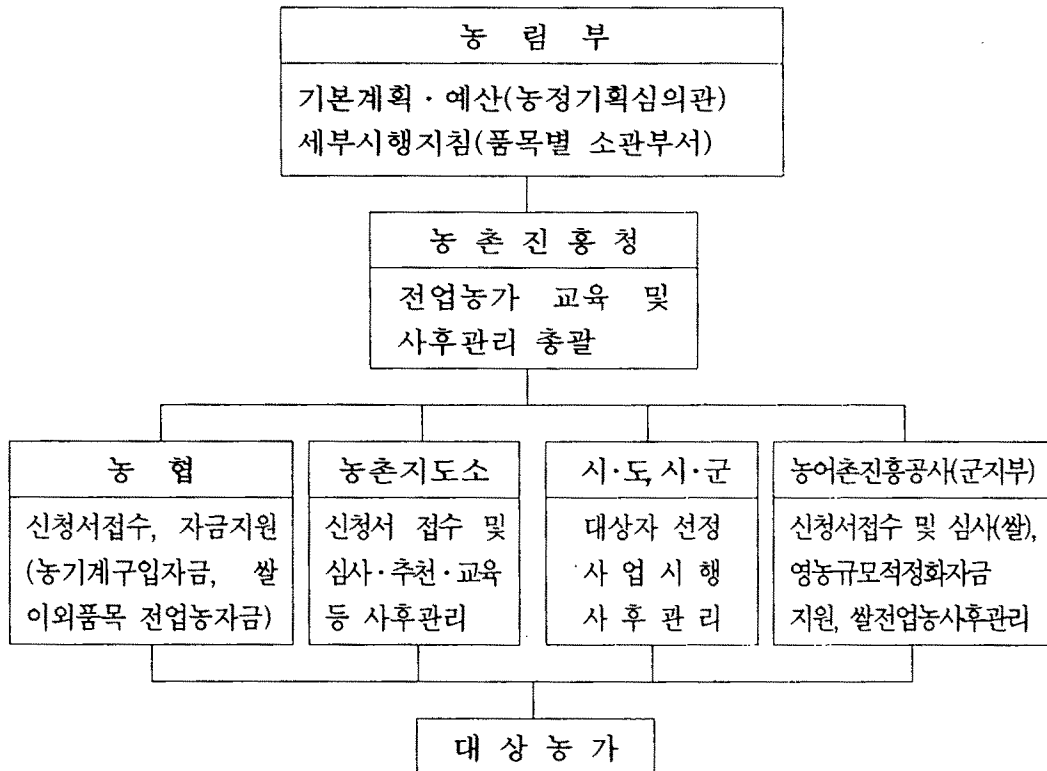
- 영농규모확대 및 시설·장비현대화 지원
- 영농기술 및 합리적 경영기법 도입 지원으로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지원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자·비료·농약·유류 구입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내역

분 야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쌀	농지구입·임차, 농기계구입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수경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시설, 생약조제시설, 저장시설, 관수시설, 대형농기계, 컴퓨터, 기타농업 기반시설

- 주) - 쌀전업농은 “영농규모적정화사업요령”에 따라 선정하며,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은 “쌀전업농 농기계공급 요령”에 따라 지원함.  
 - 축산전업농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실시요령 참고

(5) 사업시행 체계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호 8,200	백만원 625,170	187,445	41,125	146,320	41,125	16,450
쌀전업농	7,000	505,170	67,445	41,125	26,320	41,125	16,450
기 타 전업농	1,200	120,000	120,000	-	120,000	-	-

※ 쌀 전업농 육성사업량 7,000호는 농기계공급 농가수이며, 농지매매·임대차 사업은 농기계공급농가 7,000호를 포함하여 10,000호까지 지원함

※ 융자조건

-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 연리 5%, 1년거치 5~7년상환
- 기타전업농 :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쌀전업농 사업비 합계는 농협융자금 56,400백만원과 영농규모적정화사업자금 340,670백만원이 포함됨

※ 시·도별 지원계획 : <별표 1>

<추진체제>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는 구청장)

나. 사업담당 부서

	중 앙	도	시 · 군
총 팔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촌인력과	농정국 농정과 (경기, 강원, 경북 : 농업경영과)	
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농정국 농산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
발작물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산기술과	농정국 농산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채 소	원예특작국 채소과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경북 : 유통특작과)	"
과 수	" 과수화훼과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경북 : 유통특작과, 제주 : 감귤진흥과)	"
화 훼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경북 : 유통특작과, 제주 : 특 작 과)	"
특 작	" 원예특작과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경북 : 유통특작과)	"

※ 쌀전업농에 대한 농지매매·임차자금 지원의 경우는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요령 참고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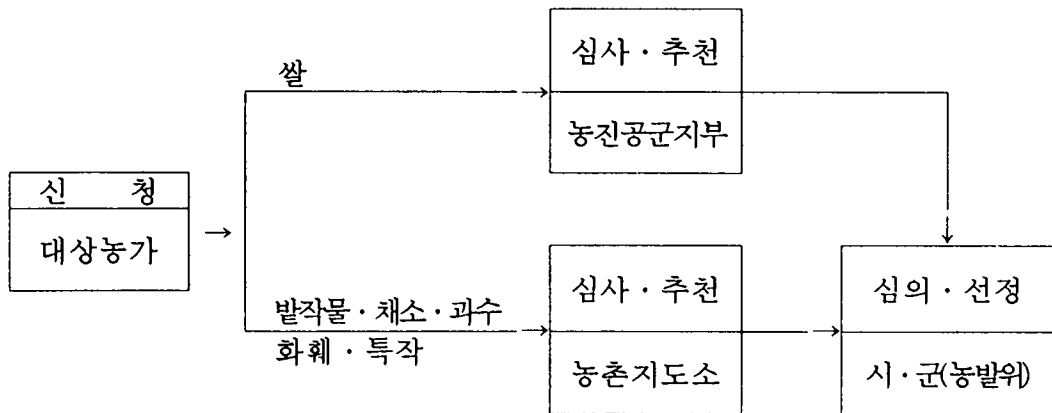
- 영농경력, 농과계학력, 경영규모,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 기계화 및 시설수준이 우수한 자를 선정(평가항목 및 평점방법 : 별표2)

(2) 우선순위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
- 쌀전업농은 경지가 “고도벼농사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자(동점일 경우)
- 신청분야 농업인후계자, 농과계학교 졸업자(동점일 경우)

(3) 선정절차

< 선정절차도 >



가) 쌀전업농

- 쌀전업농 선정의 세부절차는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요령에 따름

나) 발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전업농

① 대상자 심사·추천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천가능성 등을 조사·확인한 후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 분야별 심사위원회 구성 >

- 농촌지도소 전문지도사,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관계자
  - 농과계학교 교수 또는 교사
  - 농업인후계자 출신 1인 이상을 포함한 그 분야의 선도농가 2인
  - 농·축협 임원, 농민단체 대표 등 총 7인 이내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10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별지 제2호 서식)

### ②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계획서,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 심의하고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상의 전업농육성 목표를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계획 작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 중 사업포기자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 한농가가 둘 이상 품목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③ 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총칙에 따라 사업시행년도 1.20까지 사업대상자와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하는 즉시 신청자·음자취급기관·농촌지도소·농진공군지부, 기타 유관기관에 통보 및 계통보고

※ 보고내용 : 연령별, 학력별, 성별, 출신(농어민후계자 출신여부)별, 지원 계획시기(분기)별 지원대상자수 등  
(보고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라. 사업시행

### (1) 쌀전업농

- 영농규모적정화 자금지원(농어촌진흥공사)
  - 전업농육성사업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요령에 따라 지원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요령에 따라 지원

### (2)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전업농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자금배정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이 통보한 “당해년도 전업농 육성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시·도별, 분기별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 시·도 및 시·군 계통기관에 배정
- 융자방법 등
  - 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업무 지침 등에 따름
-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키로 결정된 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지원하여야 하며, 융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후 농촌 지도소장의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전액 또는 분할하여 인출토록 함
  - 시설설치 등 상당한 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자금의 10%까지 착수금을 인출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쌀전업농

- 농지구입·임차자금 :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요령에 따름
- 농기계구입자금 : 쌀전업농농기계 공급요령에 따름

#### (2)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전업농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관리보조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읍·면장
  - 농협 지역조합장(읍자취급기관장)

#### (3) 사업추진상황 등의 점검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자금을 지원받은자의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상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 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외의 타용도로 전·유용하거나 농업을 이탈한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장이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읍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4)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
  - 전업농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본인 또는 후계농업인이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취업등은 제외)
  - 기타 시장·군수가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 경우 농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서 필요 >



- 농촌지도소장, 읍·면장, 농협지역조합장·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 등 사후관리 보조자는 사업취소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 다만 사망, 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 재해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토록 통보
- 지원자금의 회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취소와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시장·군수가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반기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반기익월 20일까지 보고(별지 제5호 서식)

(5)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촌지도소장, 자금취급기관장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조치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요령에 따름

## 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

### ○ 사업계획의 변경

-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지도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선정분야를 달리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 사업장소의 변경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업지도는 사업장 관할 농촌지도소에서 담당

1)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 시·군, 시·도내 이전

시장·군수는 읍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시·도, 농촌지도소, 읍자취급기관)에 보고 및 통보

- 시·도간 이전

1) 시장·군수는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자취급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전 후의 시·도지사와 지도기관, 읍자취급기관에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1) 이 관 조 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2) 보증인 교체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용자취급기관)
- 3)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 전 용자취급기관에서 담당

#### 다. 용자취급 및 지원계획, 용자실적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자지원 및 자금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계통기관에 시달하고 분기별 용자실적을 매분기 익월 3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용자취급기관은 분기별 용자실적을 매분기 익월 20까지 유관기관과 계통기관에 통보 및 보고
  - ※ 쌀전업농에 대한 농지매매·임차자금 지원의 경우는 제외

#### 라. 영농규모적정화사업요령의 적용

-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영농규모적정화(농지매입·임차)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농규모적정화사업요령에 따름

#### 마. 기 타

- 농촌지도소장 및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의 지침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경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발전단계에 맞는 영농기술과 경영지도 실시
  - 쌀전업농 : 농어촌진흥공사
  - 기타전업농 : 농촌지도소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농촌지도기관의 전업농 교육훈련, 경영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극 지원
-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는 전업농 육성대상자중 사업추진 실적이 뛰어나고,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와 전업농 육성업무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등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시행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산업과), 읍·면·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농협

※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즉시 품목별 심사기관에 송부

#### <품목별 심사기관>

- 쌀전업농 :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 기타품목전업농 : 농촌지도소

### 나. 신청자격

- 공통요건
  -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가
    - ※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업으로 인정
  -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가
    - 경영주가 56세 이상인 경우 그 영농기반을 승계할 후계농업인이 있는 농가(후계농업인이 신청함)

< 후계 농업인 >

- 동일가구내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동거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동일가구내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과계학교에 재학중인 자(이 경우 연령과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
- ※ 군복무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는 후계 농민으로 봄
- 가족노동력으로 일상적인 농작업을 수행하며, 전업농 규모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의 조작과 기초적인 정비능력이 있는 농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신청품목 경영규모가 아래 최소규모~전업농규모사이에 있는 농가

품목(전업농규모)	최 소 경 영 규 모
쌀 (1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유의 논 1.0ha이상 경영 또는 자기소유 논 0.5ha이상 포함 2.0ha이상 경영</li> <li>- 단, 수도작후계자로 3년이상 경과한 자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차 포함 1.0ha이상 경영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li> <li>*임차규모는 농지원부상 임차농지현황으로 판단</li> </ul>
밭 작 물 (식량류 1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유의 밭 1.0ha이상 경영</li> </ul>
채 소 - 노지채소(2ha) - 시설채소(12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포장 경영규모 1.0ha이상 경영</li> <li>○ 600평 이상 (일반시설 기준) 경영</li> </ul>
과 수 (2.5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유 과수원 0.5ha이상 경영</li> </ul>
화 훼 - 절화류(시설1200평) - 분화류(시설9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500평 이상 경영</li> <li>○ 시설 400평 이상 경영</li> </ul>
특 용 작 물 - 버섯(500평) - 약용작물(3ha) - 인 삼(3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유 버섯재배시설 150평 이상(일반시설 기준)경영</li> <li>○ 자기소유 약용작물 포장 1.0ha이상 경영</li> <li>○ 1.0ha 이상 경영</li> </ul>

#### 다.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사업시행전년도 1. 31까지
- 접수기관 : 시·군(산업과), 읍·면·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농어촌  
진흥공사 군지부, 농협
- ※ 쌀전업농의 경우는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요령에 따름

#### 라. 구비서류

- 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신청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필요시)
- ※ 쌀전업농 지원의 경우는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요령에 따름

#### 마. 기타사항

- 한농가가 두 개이상 품목의 전업농 육성사업 신청을 할수 없음
- 기 전업농 육성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음

[별표 1]

'97전업농육성사업 시·도별 지원계획

○ 쌀전업농

(단위 : 천원)

시·도 별	사업량 (농기계 공급)	사 업 비							
		합 계	농 기 계 구 입 비						농지매입· 임차자금(*)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용자	농협용자	자부담	
호									
계	7,000	505,170,000	164,500,000	41,125,000	41,125,000	26,320,000	39,480,000	16,450,000	340,670,000
서울	-	-	-	-	-	-	-	-	-
부산	10	421,000	235,000	58,750	58,750	37,600	56,400	23,500	186,000
대구	5	389,500	117,500	29,375	29,375	18,800	28,200	11,750	272,000
인천	125	10,581,500	2,937,500	734,375	734,375	470,000	705,000	293,750	7,644,000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경기	856	62,381,000	20,116,000	5,029,000	5,029,000	3,218,560	4,827,840	2,011,600	42,265,000
강원	334	28,620,000	7,849,000	1,962,250	1,962,250	1,255,840	1,883,760	784,900	20,771,000
충북	408	33,583,000	9,588,000	2,397,000	2,397,000	1,534,080	2,301,120	958,800	23,995,000
충남	1,167	78,266,500	27,424,500	6,856,125	6,856,125	4,387,920	6,581,880	2,742,450	50,842,000
전북	1,042	74,272,000	24,487,000	6,121,750	6,121,750	3,917,920	5,876,880	2,448,700	49,785,000
전남	1,356	91,763,000	31,866,000	7,966,500	7,966,500	5,098,560	7,647,840	3,186,600	59,897,000
경북	917	68,696,500	21,549,500	5,387,375	5,387,375	3,447,920	5,171,880	2,154,950	47,147,000
경남	780	56,196,000	18,330,000	4,582,500	4,582,500	2,932,800	4,399,200	1,833,000	37,866,000
제주	-	-	-	-	-	-	-	-	-

※ 농지매입·임차자금지원 대상농가(10,000호)는 농기계공급사업량 × 10/7까지로 함

○ 기타전업농(발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어업 전업농)

(단위 : 호, 백만원)

	계		발작물 (식량작물)		채 소		과 수		화 훼		특 작		어 업	
	사업 량	사업비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비	사업 량	사업비	사업 량	사업비	사업 량	사업비	사업 량	사업비
계	1,200	120,000	53	5,300	402	40,200	326	32,600	118	11,800	125	12,500	146	14,600
서울	1	100	-	-	-	-	-	-	1	100	-	-	-	-
부산	11	1,100	-	-	6	600	1	100	2	200	-	-	2	200
대구	3	300	-	-	3	300	-	-	-	-	-	-	-	-
인천	6	600	-	-	-	-	-	-	-	-	-	-	6	600
광주	7	700	-	-	5	500	-	-	1	100	1	100	-	-
대전	6	600	-	-	-	-	-	-	6	600	-	-	-	-
경기	100	10,000	-	-	35	3,500	15	1,500	35	3,500	15	1,500	-	-
강원	94	9,400	15	1,500	32	3,200	9	900	5	500	19	1,900	14	1,400
충북	91	9,100	5	500	26	2,600	39	3,900	6	600	11	1,100	4	400
충남	138	13,800	1	100	44	4,400	50	5,000	8	800	22	2,200	13	1,300
전북	121	12,100	8	800	52	5,200	28	2,800	15	1,500	10	1,000	8	800
전남	235	23,500	11	1,100	86	8,600	59	5,900	11	1,100	15	1,500	53	5,300
경북	173	17,300	4	400	60	6,000	72	7,200	4	400	25	2,500	8	800
경남	116	11,600	4	400	42	4,200	22	2,200	13	1,300	7	700	28	2,800
제주	68	6,800	5	500	11	1,100	31	3,100	11	1,100	-	-	10	1,000
미통지 (중앙)	30	3,000	-	-	-	-	-	-	-	-	-	-	-	-

※ 농가당 지원기준 : 50~100백만원(국고융자)



<별표 2>

전업농 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쌀전업농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영농경력	100	○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3년 30점)
농업계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계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계 대학졸업자 : 70점</li> <li>- 농업계 전문대학졸업자·최고농업경영자과정:63점</li> <li>- 자영농과(자영농고·농고중 자영농과) : 56점</li> <li>- 기타 : 42점</li> </ul> </li> <li>○ 농과계이외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졸업자 : 56점</li> <li>- 전문대학졸업자 : 49점</li> <li>- 기타 : 28점</li> </ul> </li> <li>○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이상 : 30점</li> <li>- 3개월이상 : 24점</li> <li>- 1개월이상 : 18점</li> <li>- 15일이상 : 12점</li> <li>- 7일이상 : 6점</li> </ul> </li> </ul> <p>※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다음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진흥청, 각도, 농협의 훈련기관</li> <li>-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독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li> <li>-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li> <li>- 쌀 선도농업경영체 농장</li> </ul>
경영규모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규모/쌀전업농규모×200</li> <li>* 비재배경영규모에 한하며 전업농기준규모 이상은 200점</li> </ul>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기계화수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전업농에 필요한 기계보유상황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등을 모두 갖춘농가:100점</li> <li>- 경운기, 이앙기, 탈곡기등 기본적기계를 갖춘농가: 50점</li> <li>- 기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농가 : 0점</li> </ul> </li> <li>※ 위 기준에 따라 적절히 평점</li> </ul>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기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점</li> </ul> </li> <li>○ 대형농기계 조작·정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점</li> </ul> </li> <li>○ 경영여건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지정리 완료지역 : 20점</li> <li>-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경작지간 거리가 500m 이내로 집단화 : 40점</li> </ul> </li> <li>&lt; 가산점 &gt;</li> <li>○ 수도작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 : 0점</li> <li>- 기능사 : 10점</li> <li>- 기사 : 20점</li> <li>- 기술사 : 30점</li> </ul> </li> <li>○ 농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 및 경영성과 분석실행 : 30점(최근 1년이상 장부가 있는자에 한함)</li> </ul>
사업계획	100	○ 보통 40, 우수70, 매우우수 100점
가 산 점		○ 수도작후계자 출신 50
계	700	

○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전업농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영농경력	100점	○ (신청품목경영경력-2)×10점(12년이상 : 100점)
농과계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150점	○ 농과계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졸업자:100점</li> <li>- 전문대학 졸업자·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수자:90점</li> <li>-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 중 자영농과)졸업자:80점</li> <li>- 고등학교 졸업자:70점</li> </ul> ○ 농과계 이외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졸업자:80점</li> <li>- 전문대학졸업자:70점</li> <li>- 기 타:40점</li> </ul>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상 : 50점</li> <li>- 3개월 이상 : 40점</li> <li>- 1개월 이상 : 30점</li> <li>- 15일 이상 : 20점</li> <li>- 7일 이상 : 10점</li> </ul> ※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진흥청, 각 도, 농협의 훈련기관</li> <li>-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독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li> <li>-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과계학교 부설 영농 훈련기관</li> <li>- 신청분야 선도농업 경영체 농장</li> </ul>
○ 경영규모(전업농 신청품목 경영 규모)	100점	○ (경영규모 / 전업농 규모)×100점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기술수준 :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li> <li>○ 대형농기계·시설의 조작, 정비능력 :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li> <li>○ 지역여건에 맞는 품목경영여부 : 보통 10, 적합 20, 최적 30</li> <li>○ 신청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없음 0, 기능사 20, 기사 40, 기술사 60</li> </ul> <p>&lt; 가산점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 및 경영성과 분석 실행 : 30점 (최근1년이상 장부기입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li> <li>○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경영·정보화 교육 이수:20점</li> <li>○ 지난 1년이상 기간동안 경영성과 우수:20점 (장부기입결과에 의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함)</li> </ul>
사 업 계 획	100점	○ 보통 40, 우수 70, 매우 우수 100점
기계화 및 시설수준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 100점</li> <li>○ 기본적인 기계 및 시설구비 : 50점</li> <li>○ 기계 및 시설이 전혀 미비 : 0점</li> </ul> <p>※ 위 기준에 따라 적절히 평점</p>
가 산 점		○ 신청분야 후계자출신 50
합 계	700점	

< 별지 제1호서식 >

## 전업농 사업계획서

(쌀분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한자: )	주민등록번호	
후계자 출신여부	수도작( )	복합( )	일반농가( )	현재경영규모
자금자원 신청액	농지매매자금	:	천원	소요시기
	농지임차자금	:	천원	소요시기
	농지교환·분합자금	:	천원	소요시기
	농지계구입자금	:	천원	소요시기
				평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농 지(평)			시 설		농 기 계	
	계	논	밭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 2. 지원자금의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농 지 매 입	평				
농 지 임 차	평				
농지교환·분합	평				

### 3. 최근 5년간 인력육성사업자금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선도개척농·선도농업경영체)

연 도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3. 앞으로 5년간 경영계획(쌀전업농 육성규모로의 발전계획)

연도별	경영규모(평)	벼재배면적(평)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 전업농 사업계획서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분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전업농 신청품목			현재의 경영규모	평
자금지원신청액	일반전업농자금:	천원	지원요구시기	년    월

1. 현재의 영농 기반(논, 밭, 농기계 및 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소유와 임차로 구분 작성)

2.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용도별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3. 앞으로 5년간의 경영계획(전업농 규모로의 발전계획)

4. 최근 5년간 인력육성사업자금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선도개척농·선도농업경영체)

연 도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 별지 제2호서식 >

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 추천

< (품목명) 전업농 >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자금지원(안)

- 첨부 : 1. 추천순위결정근거  
 2. 자금지원신청액 조정사유  
 3. 추천 제외자 및 사유

1. 추천순위 결정근거

< (품목명) 전업농 >

추천 순위	성 명	심 사 항 목 별 평 점							비 고
		영농 경력	학력 및 교육훈련	재배기술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 계획	기계화및 시설수준	평점 합계	

※ 비고란에는 대상자추천 및 선정의 우선순위 해당사항,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지역여론 등을 기재

2. 자금지원 신청액 조정사유

< (품목명) 전업농 >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성 명	신 청 액	조 정(안)	조 정 사 유

3. 추천제외자 및 사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추천제외사유

※ 전업농 신청자중 추천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신청자격요건 미달(구체적 결격사유), 신청서 허위기재등 추천제외사유를 명시



< 별지 제3호서식 >

전업농 육성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19 년도 지원대상자)

1. 연령별

(단위 : 명)

전문품목	합 계	29세 이하	30~34	35~39	40~44	45~49	50~55	56세 이상
전 체								
○ 쌀 -농지만 -농지 + 농기계 -농기계만								
○ 밭작물 -보리류 -콩 류 -감자류 -잡곡류								
○ 채소 -노지채소 -시설채소								
○ 과수 -사과 - 배 -기타								
○ 화훼								
○ 특작 -버섯 -약용작물 -인삼 -기타								

2. 성별 및 출신(농어민후계자 여부)별

전문품목	합 계			남 자			여 자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전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li> <li>-농지만</li> <li>-농지 +</li> <li>농기계</li> <li>-농기계만</li>   <li>○ 밭작물</li> <li>-보리류</li> <li>-콩 류</li> <li>-감자류</li> <li>-잡곡류</li>   <li>○ 채소</li> <li>-노지채소</li> <li>-시설채소</li>   <li>○ 과수</li> <li>-사과</li> <li>- 배</li> <li>-기타</li>   <li>○ 화훼</li>   <li>○ 특작</li> <li>-버 섯</li> <li>-약용작물</li> <li>-인 삼</li> <li>-기 타</li> </ul>									

### 3. 학 력 별

전문품목	합 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		대졸	
					농과계		농과계		농과계
전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만</li> <li>-농지 + 농기계</li> <li>-농기계만</li> </ul> </li> <li>○ 밭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리류</li> <li>-콩 류</li> <li>-감자류</li> <li>-잡곡류</li> </ul> </li> <li>○ 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지채소</li> <li>-시설채소</li> </ul> </li> <li>○ 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과</li> <li>- 배</li> <li>-기타</li> </ul> </li> <li>○ 화훼</li> <li>○ 특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 섯</li> <li>-약용작물</li> <li>-인 삼</li> <li>-기 타</li> </ul> </li> </ul>									

4. 분기별 지원대상인원

전문품목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만</li> <li>-농지 + 농기계</li> <li>-농기계만</li> </ul> </li> <li>○ 밭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리류</li> <li>-콩 류</li> <li>-감자류</li> <li>-잡곡류</li> </ul> </li> <li>○ 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지채소</li> <li>-시설채소</li> </ul> </li> <li>○ 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과</li> <li>- 배</li> <li>-기타</li> </ul> </li> <li>○ 화훼</li> <li>○ 특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벼   섯</li> <li>-약용작물</li> <li>-인   삼</li> <li>-기   타</li> </ul> </li> </ul>					

5. 시·군별 전업농 육성대상자 확정결과

(단위 : 농가)

시·군 별	계	쌀	기 타					
			소계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 별지 제4호서식.>

전업농 육성대상자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확인

세부사업	계 획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사업규모	투 자 액				사업규모	투자액	진도 (%)
		정부지원	자부담	계				
예) 농지 구입	평 1,000	천원 20,000			'96. 4월 중순			
하우스 신축	1,000	30,000	20,000	50,000	'96. 4월 하순~ 7월초순			
계		50,000	20,000	70,000				

상기와 같이 계획대로(진도 %수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전업농 육성사업자금을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농촌지도소장 < 직 인 >

음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주소	전문품목 (선정년도)	취소사유 취소일자	지원자금회수현황			
				자금종류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 ※ 1) 전업농 선정 당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때에는 현주소를 ( )내에 명기
- 2) 전문품목은 전업농 선정당시의 품목을 기재
- 3) 취소사유는 사망, 신병, 재촌전업, 도시이주, 무단이탈등으로 기재  
하고, 취소사유를 ( )내에 기재





## 95 선도농업경영체 육성(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 입니다.

### 1. 목 적

-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장비, 소득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한 농업경영체를 「선도농업경영체」로 지정, 일반농가·법인경영체의 발전 모델로 활용
- 일반농가와 농과계 학생에 대해 현장감 있는 기술·경영교육 실시

### 2. 추진방향

- 개방화 속에서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경영를 통해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해 온 경영체를 선발
- 「선도농업경영체」 사업장을 발전모델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
- 일반농가에 대한 견학실시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모델을 효과적으로 전파
- 농과계 학생에 대한 실습장으로 활용하여 기술과 경영기법 습득기회 제공

###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

###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5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업량(호)		970	70	80	70	100	650
사업비	계	93,500 <sup>백만원</sup>	3,500	8,000	7,000	10,000	65,000
	용자	75,150	3,150	6,400	5,600	8,000	52,000
	자담	18,350	350	1,600	1,400	2,000	13,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배경

- 우수한 농업경영체를 발굴, 그 사업장을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발전모델 및 견학·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95년부터 추진

##### (2) 지원대상

- 가족경영체 또는 법인경영체 중 생산기술·경영기법·시설장비·소득 등에서 앞서가는 경영체로서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시·도 지사가 지정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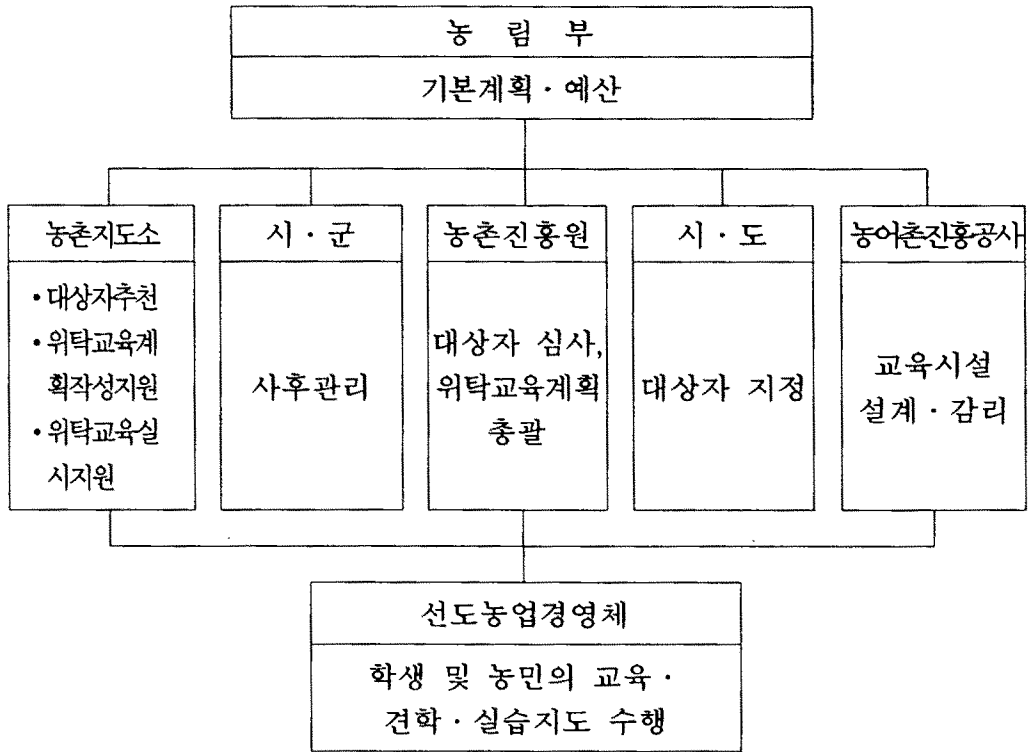
##### (3) 경영체당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 100백만원(경영체당)
- 재 원 : 국고융자 80%(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음

##### (4) 지원내역

- 농업경영체의 발전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장비 지원
- 교육·견학제공에 필요한 기타 시설·장비 지원

(5) 사업시행 체계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70	백만원 7,000	5,600	-	5,600	-	1,400
선도농업 경영체 지원	70	7,000	5,600	-	5,600	-	1,400

\* 시·도별 사업량 : 경기 4, 강원 7, 충북 6, 충남 11, 전북 4, 전남 14, 경북 16, 경남 5, 제주 3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나. 사업담당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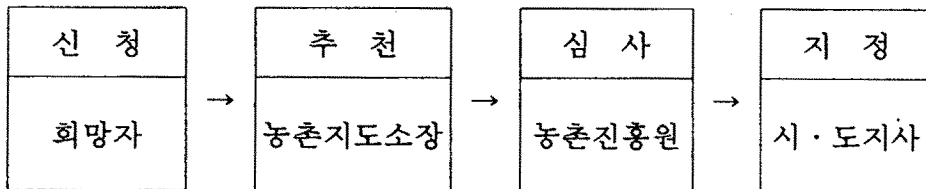
- 중 앙 : 농림부 농촌인력과(전화번호 : 503-7216)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원
- 시·군 : 산업과, 농촌지도소

### 다.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경영규모·시설·장비·지도능력에 대한 종합평점결과가 높은자로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2) 선정절차



- \* 농과계학생 대상 실습수행계획이 있는 신청자는 농과계학교장의 추천서 및 실습수행 약정서를 첨부하여 농촌지도소에 신청함

#### (가) 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장이 사업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전전년도 10.31까지 심사 기관장(농촌진흥원장)에게 제출

#### (나) 대상자 심사

- 심사기관장은 품목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지도국장
  - 위 원 : 품목관련 과장, 소속 공무원중 품목 연구사·지도사, 농과계 학교 관련 교수·교사, 생산자단체장, 선도 농가 등 7~10인
- ※ 필요시 품목관련과장이 위원장이 되는 품목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항목 및 평점방법 : <별표 1>
- 심사기관장은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를 사업시행 전전년도 12.31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다)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 전년도 2월 28일까지 선정완료
  - 시·도지사는 선정결과와 선도농업경영체에 의한 위탁교육계획을 사업시행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 보고양식 : 별지제 3호서식

(라) 대상자 확정

- 시·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 및 계통보고

라. 사업시행

- 사업자금배정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이 통보한 “당해년도 선도농업경영체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시·도별, 분기별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 시·도 및 시·군 계통기관에 배정

- 용자방법 등
  - 취급기관의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업무 지침 등에 따름
- 용자취급기관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키로 결정된 자금을 일시에 전액 용자지원하여야 하며, 용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후 농촌 지도소장의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전액 또는 분할하여 인출토록 함
  - 시설설치 등 상당한 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자금의 10%까지 착수금을 인출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교육관리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 점 검
  - 점 검 자 : 시·군 농촌지도소 소속 전담지도사
  - 점검시기 : 매월 1회 이상
  - 점검내용 : 교육수행상황, 시설관리상태
  - 결과반영 : 농촌지도소장은 교육기피 및 시설을 교육목적외로 전용등 취소사유 발생시 시장·군수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현장확인 및 시정 권유후 거부시에는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 나. 보고사항

- 교육수행상황 및 사업대상자별 투자내역 보고(별지 제4-1호 서식)
  - 농촌지도소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 및 도 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
  - 도농촌진흥원장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농촌진흥청장은 반기 익월 3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 보고체계

농촌지도소 → 도농촌진흥원 → 농촌진흥청 → 농림부  
↳ 시·군                      ↳ 시·도

- ※ 연도말기준 교육수행상황보고시에는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별 투자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여 보고(별지 제4-2호 서식)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지도소

### 나. 신청자격

#### ○ 가족경영체

- 당해분야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고, 경영규모·소득·시설장비·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등에 있어 전업농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어 일반농가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 경영주가 60세 이하로서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일반 농가에 전파 하려는 의욕과 실질적인 교육수행능력을 갖춘 경영체
- 농업소득 : 연간 50백만원 이상
- 농업소득중 전문품목 소득의 비중 : 80%이상

- 품목별 경영규모, 기계·시설·장비, 재배기술

분 야	품 목	전문품목 경영규모	시설장비 및 재배기술
곡 물	쌀	10ha이상	일관기계화작업을 위한 대형농 기계 보유, 조작가능
축 산	한 우 젖 소 돼 지 닭	100두이상 50두이상 1,000두이상 40,000수이상	축사시설자동화 착유·사료급여자동화 사료급여·분뇨처리자동화 사료급여·급수·환경제어·집란 · 계분처리 자동화
과 수		2ha 이상	관배수시설 완비, 모노레일 운반기, 저온창고
채 소	노지채소 시설채소	2ha 이상 1,800평이상	퇴비 사용, 기계화 작업 자동화온실
화 훼	절 화 류 분 화 류	1,200평이상 900평이상	자동화온실, 선별·포장·결속기, 저온저장고(또는 저온처리실) 자동화온실, 운반차량
특 작	시설버섯 약용작물	300평이상 2ha이상	자동화온실 저장·조제시설

※ 자동화온실 : 온·습도, 환기, 관수 등 환경자동제어 가능(비닐, 경질판, 유리온실)

※ 상기 신청자격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으로서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도농업경영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농업소득 50백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장비를 파악, 자체 기준을 작성 사업 추진



○ 법인경영체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으로서 설립 일로부터 3년 이상경과(신청서 제출기한 현재)
- 경영(순이익)규모가 사원(조합원)수×품목별신청자격기준이상인 경영체
- 경영주가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학생·농민·다른 농업법인관련인에게 전파할 의욕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도능력을 보유한 사원 또는 직원이 있는 경영체

다. 신청절차

- 접수기관 : 대상자 추천기관(시·군농촌지도소)
- 신청방법 : 시·군 농촌지도소의 안내와 지원을 받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민·학생교육계획)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전년도 8.31까지 추천기관에 제출

라. 구비서류

- 신청서(실시규정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농업관련 기술 및 지도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국가기술 자격증 사본등)

< 별표 1 >

선도농업경영체 지원대상자 평가항목 및 평점방법

항 목	배 점	평 점 방 법	득점
영 농 경 력	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단위로 5점씩 가산</li> <li>- 20년 이상은 100점</li> <li>※ 당해 전문분야의 경력에 한함, 법인은 설립일 기준 경력산정</li> </ul>	
경 영 규 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규모-신청자격기준규모)/신청 자격 기준규모 × 70점</li> <li>※ 당해 전문분야의 경영규모에 한함</li> </ul>	
기계화 및 시설수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 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 100점</li> <li>○ 기본적인 기계 및 시설구비 : 50점</li> <li>※ 위 범위에서 적절히 평점</li> </ul>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적인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 10점</li> <li>○ 대형농기계 및 시설의 조작과 일상적인 정비 가능 : 10점</li> <li>○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 10점</li> <li>○ 비용절약적인 생산기술 도입 : 10점</li> <li>○ 최근 3년간의 경영장부 기록실적 : 30점</li> <li>○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 : 30점 (경영장부에 의해 증명가능한 실적에 한함)</li> </ul>	

항 목	배 점	평 점 방 법			득점	
교육 능력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계 학력:고졸 70, 전문대졸·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이수 90, 대졸 100점</li> <li>○ 기타학력 : 고졸이하 30, 전문대졸 50, 대졸 60</li> <li>○ 농장전학자 및 인근농가 교육훈련 실적 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실시 하는 농민 교육의 강사경험 등 최근 3년간 1회시마다 5점(50점 만점)</li> <li>○ 신청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사 20점, 기사 30점, 기술사 50점</li> </ul> </li> </ul>				
사업 및 교육계획	100	항 목	배 점			
			상	중	하	
		1. 지역여건·사업간 연계	20	15	10	
		2. 자부담 비율	20	15	10	
		3.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20	10	
4. 5개년 교육계획의 정밀성	30	20	10			
가 점		○ 신청품목 전업농 출신 50				
계	700					

< 별지 제1호 서식 >

선도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신청분야 및 품목		현재의 경영규모		평
자금지원신청액		천원	지원요구시기	년 월

1. 현재의 영농기반(논, 밭, 농기계 및 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소유와 임차로 구분 작성)

2.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용도별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3. 앞으로 5년간의 교육수행계획

※ 사업장을 농과계학생 실습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신청자는 추천학교와의 약정서 첨부

4.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설명

5. 최근 5년간 인력육성사업자금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선도개척농·선도농업경영체)

연 도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 별지 제2호 서식 >

선도농업 경영체 지원대상자 사업추진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법인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확인

세부 사업	계 획				사업 추진 일정	추진현황		
	사업 규모	투 자 액				사업 규모	투 자 액	진 도 (%)
		정부 지원	자부담	계				

상기와 같이 계획대로(진도 %수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선도농업 경영체 지원사업자금을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농촌지도소장 < 직 인 >

읍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선도농업경영체 선정결과 및 위탁교육수행계획 보고(○○도)

1. 선도농업경영체 선정결과 및 위탁교육 실시 계획(총괄)

분야 / 품목	지 정 수		위탁교육수행 실적·계획(연인원)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총 계				
분 야 별				
- 곡 물				
쌀				
기타				
- 축 산				
한우				
젖소				
돼지				
닭				
- 과 수				
사과				
배				
감귤				
기타				
- 채 소				
노지채소				
시설채소				
- 화 훼				
- 특 작				
- 어 업				

2. 선도농업경영체별 현황 및 위탁교육 수행 계획

분야 / 품목	지 정 자	위탁교육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li> <li>○○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법인명) :</li> <li>○ 전문품목 경영규모 :</li> <li>○ 주소 :</li> <li>○ 전화번호 :</li> <li>○ 기술·경영기법 등의 특징 (상세히 기록)</li> </ul>	

< 별지 제4-1호 서식 >

선도농업경영체 교육수행상황보고(        현재)

○○도

사업대상자	위탁교육수행 상황		비 고 (교육 미실시, 시설의 타목적 사용 등으로 취소여부 등)
	계 획	실 적	
성명 :  품목 :  주소 :			



< 별지 제4-2호 서식 >

선도농업경영체 투자실적

○○도

사업대상자	투자계획		실 적	
	사업내용	투자액	사업내용	투자액
성명 :				
품목 :				
주소 :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정기획과 입니다..

### 1. 목 적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경감 도모

### 2. 지원방향

- 지원대상 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단, 국가등에서 학자금을 수혜(惠澤)받는 자는 제외함.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면지역도 포함 지원함.
- 읍지역중 도서벽지(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학군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자녀는 지원함.
- 농(어)업인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부모거주지가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제외지역으로 편입될 시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함.  
단,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설치에 따른 읍승격지역의 경우에는 종전 면지역에 준하여 포함 지원함.
- 학자금 지원은 학교 급지별(級地別)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함.

### 3. 근거법령

- '89.4.28,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

####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98	'99~2004
사업량(천명)	1,858	911	90	87	110	660
사업비(백만원)	837,891	277,767	51,066	51,678	65,340	392,040
- 국 고	361,051	191,312	17,022	15,503	19,602	117,612
- 지방비	476,840	86,455	34,044	36,175	45,738	274,428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지원대상자

- 부모(부모사망등 사유로 인한 보호자 및 세대주 본인 포함)가 면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 규모 1.0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로써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단,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함.
- 읍지역중 도서·벽지·접적(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학군인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읍승격지역도 면지역에 준함.

##### 2)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

**3) 실업계고등학교의 종류와 범위**

실업계고등학교라 함은 농림업·공업·상업·수산·해양·실업·종합 고등학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농업고등학교 : 농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공업고등학교 : 공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상업고등학교 : 상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수산고등학교 : 수산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해양고등학교 : 해양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실업계고등학교 : 농림계,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가정계중 2개 이상 학과가 혼합 설치된 학교와 가정계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종합고등학교 :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계 학과와 보통과(인문과정)가 혼합(混合)된 학교(이중 실업계만 해당되며,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실업계학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4) 지원대상 농어가 기준 : 별표**

**5)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등과 같은 국고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 지원대상자 및 면제자
- 교육부 또는 학교등에서 입학금·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 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나. '97 사업비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사업비	국비	지방비	
87천명	백만원 51,678	15,503	36,175	※재정경제원 국고보조를 조정에 따라 ('96)33.3%에서 ('97) 30%로 조정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고 30%, 지방비 70%(시·도비 35%, 시·군비 35%)**

- 시도, 시군간 지방비 부담비율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비 부담비율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정기획과 (02) 503 - 7261-3 )
- 시·도 : 각시·도 농업정책과
- 시·군 :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농어가 기준표 참조
- 선정절차
  - 농어가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년말(12월말)까지 이장을 경유하여 면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이 장 : 지원신청서내용확인으로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연대서명(날인)
  - 읍·면장 : 학자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별지 제2호 서식]해당학교장에게 조회(신입생, 재학생 1.15까지 조회)
    -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 신청서를 이장이 비치하도록 서식 배부
  - 학교장 : 읍·면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하여야 함(학생에게 납입고지하지 말 것)
  - 재학확인 통보기한(신입생·재학생) : 년초에는 1월 20일까지, 학교 분기 익월 5일까지 읍·면장에게 송부(단,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소급 지원)

## 라. 사업시행

###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 읍·면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에게 기일내에 소요액 신청
  - 1·2분기(1.25), 3분기(6.10), 4분기(9.10)
- 시장·군수는 학자금지원 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연도 각각 1.27(1·2분기), 6.15(3분기), 9.15(4분기)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보고자료에 의거 즉시 농림부에 학생수 및 소요예산 신청[1.30(1·2분기), 6.20(3분기), 9.20(4분기)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
- 시·도교육감 : 각학교의 학자금지원 업무를 감독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내학교 현황, 급지별 학자금기준 등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료 통지

###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총사업비중 국고부담금을 시·도에 배정, 시·도에서는 시·도부담금을 합하여 시·군에 배정, 시·군은 시·군부담금을 합하여 읍·면사무소에 배정
- 읍·면장은 지원 농(어)가의 거주 확인, 지원대상농어가 기준표에 의한 대상여부확인, 제외대상여부확인과 학교장이 확인한 학적내용에 따라 학기개시전에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입금
  - 학자금지원 신청을 실기하여 누락된 추가신청자는 재학사실을 확인한 후 소급지원하여야 함(단,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소급 지원)

○ 학자금 지원 홍보

- 읍·면장, 시장·군수, 시·도지사 : 이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 게재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각 학교장, 시·도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에게 홍보 등 관련자 교육 실시(입학안내서, 학자금안내 설명 등)

○ 학자금 정산결과보고[별지 4호서식에 의거]

- 시장·군수 : 익년도 3.10까지 시·도지사에 보고
- 시·도지사 :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정산결과(국고) 잔액 반납
  - 일반회계 농림부 각도별 세입정수관구좌로 반납
  - 12 - 59 -591(○○ 연도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정산 반납금)

<행정사항>

○ 보고기일

보 고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장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
○ 학자금지원 신청서	학부모	_____ (이장경유)	→12.30			
○ 학자금지원대상통지	면장→ 학부모					
○ 연초 학적확인완료	면 장	→입학생1.15 재학생1.15				
○ 연초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_____	→1.20			
- 1/4, 2/4분기 보조금 신청	면 장	1/4학적확인 근거작성	└───┐	→1.25	→1.27	→1.30
○ 1/4재학확인결과회신	학교장	_____	→6.5			
- 3/4분기 국고보조금 신청	면 장	2/4재학확인 근거작성	└───┐	→6.10	→6.15	→6.20
○ 2/4재학 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_____	→9.5			
- 4/4재학 확인결과 회신	면 장	3/4재학확인 근거작성	└───┐	→9.10	→9.15	→9.20
○ 3/4재학확인결과회신	학교장	_____	→2.5			
○ 4/4재학 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_____	→2월말			
- 집행실적 보고	면 장	재학확인 집계결과	_____	→3.2		
○ 학자금 정산보고	군 수				→3.10	
○ 확정 정산	도지사				_____	→3.31
보조금 확정	장 관				←_____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일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별표]

< 지원대상 농어가 기준표 >

농 가	어 가	양 축 가	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li> <li>○ 임차(賃借)농가</li> <li>○ 기타 위에 준하는 농가 및 농업에 연간 90일 이상 종사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이 없는 어가</li> <li>○ 무동력선 사용어가</li> <li>○ 15M/T이하 동력선 어가</li> <li>○ 소규모 양식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하(垂下), 연승(延繩) 4.0ha미만</li> <li>- 살포(撒布), 투석(投石) 14.0ha미만</li> </ul> </li> <li>○ 기타 위에 준하는 어가 및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말 : 18두미만</li> <li>○ 젖소,사슴 : 12두미만</li> <li>○ 돼지,산양,면양,개 : 130두미만</li> <li>○ 토끼,친칠라,밍크 : 3,000 마리 미만</li> <li>○ 가금 : 7,500수미만</li> <li>○ 양봉 : 90군미만</li> <li>○ 기타위에 준하는 양축가 및 1년중 9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야 26ha미만</li> <li>○ 기타 위에 준하는 임업가 및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li> </ul>

※ 양축가의 경우는 성축(成畜)기준임. 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봄.

< 제외대상 >

- 보건사회부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등과 같은 국고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을 지원 및 면제받고 있는 경우
- 교육부 또는 학교등에서 입학금·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 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

##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부모)주소

전화 :

학 부 모	부모(보호자)		학생과 관계		면 사 무 소 확 인  내 용	주민등록 확 인	담당확인		
	성 명					면 공부상 소유확인 내 용 (확인자)	경지	㎡	
주민등록번호		학 생		임야		㎡			
영 농 규 모		생년월일		가축		두			
신 청 내 용	학 생 성 명		학 과 명			어선	M/T		
	학 교 명					재학조회 발 송 일			
	학 교 주 소				학 부 모 통보일자				
	학 년		학 교 우편번호						

1997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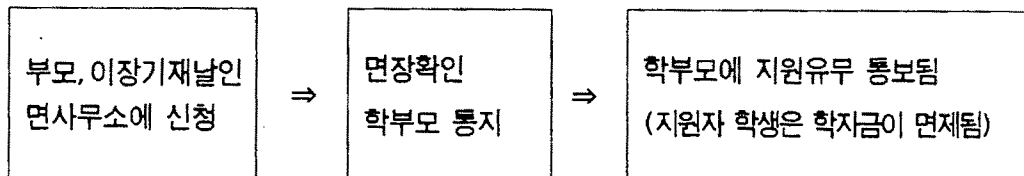
신청인 : 학부모(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리 이 장      성명 (인)

면 장 귀 하

※참고사항

<처리절차>





[별지제 3호서식]

분기농(어)업인자녀학자금 국비보조신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실적				/4 분기실적				/4 분기 소요추정			
		학생 수	계	국비	지방비	학생 수	계	국비	지방비	학생 수	계	국비	지방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제한 금액임.

**연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정산결과 보고서**

\_\_\_\_\_도

(단위 : 명, 원)

구 분	예산배정액 (A)		시도집행액 (B)		집행잔액(C) (A-B)		정 산 액 (D)		정산잔액(E) (B-D)		총 잔 액 (C+E)	
	학생 수	금 액	학생 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 수	금 액	학생 수	금 액	학생 수	금 액
면지역	국 비											
	지방비											
	소 계											
읍지역	국 비											
	지방비											
	소 계											
합계	국 비											
	지방비											
	계											

- 주) 1. 학생수는 계란에만 표시할 것.  
 2. 집행잔액은 예산잔액(국고의 경우 지출한도 재배정액중 잔액)을 말함.  
 3. 정산잔액중 국비는 도에서 우리부에 반납할 금액임.  
 4. 정산잔액 및 총잔액 발생사유를 각각 분석하여 별지로 붙일 것(서식 별도)  
 5.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을 경우 사유 기재(서식 별도)  
 6. 원단위는 절산

97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 입니다.

### 1. 목 적

- 지역여건에 알맞은 농림업의 개발과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 지역 농림업인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강화

### 2. 추진방향

- 지역농림업 입지조건을 살려 현장성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별로 특성화하고 농림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농업인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3.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업량		16개교	9	8	16	16
사업비	계	70,000	6,000	8,000	18,700	37,300
	보조	70,000	6,000	8,000	18,700	37,3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서울대농생대, 안성산업대, 강원대농생대, 충북대농대, 충남대농대, 전북대농대, 전남대농대, 순천대농대, 경북대농대, 안동대자연과학대, 경상대농대, 진주산업대, 제주대농대, 부산수대, 여수수대, 강원대 임대

##### (2) 지원조건 : 전액국고 보조

##### (3) 지원시설의 종류

특성화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 특성화대학별 투자계획 및 '96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 차등지원 계획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 시·도 : 사업계획승인
- 대 학 : 사업시행

####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업정책실 농촌인력과(02-503-7216)
- 시·도 농정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등)

#### 다. 사업시행

##### (1) 사업계획 승인

- 각 시·도지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해당 대학으로부터 '97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97사업계획을 승인 다만,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

## (2) 사업추진

- 각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지도 감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여야 함
  - 농림부에 제출한 특성화대학 5개년('96~2000년) 투자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투자
  - 특성화분야의 연구·개발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우선 구입
  - 각종시설·장비는 학과 또는 연구과제별로 중복 구입치 말고 공통시설·장비를 우선 구입
  -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는 고가 장비를 구입후 활용치 않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 과학기술센터의 시설은 대농민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위주로 하고 회의실, 교수연구실, 행정실등은 최소규모로 조정 시행
  - 사후봉사 및 조작운영에 따른 문제예방을 위해 가능한한 시설물의 공사계약은 일괄 발주
  - 유리온실등 첨단시설물의 공사계약시에는 자동화시설의 조작기술지도, 사후봉사기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약서에 명문화

###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결과는 승인후 10일이내, 사업진도 및 자금 집행 상황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정산등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

※ 각종보고서식 : (별지 1, 2, 3, 4호)



<별지 1호>

‘97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

(단위 : 천원)

학교명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 수량) 평, 개	사업비	비 고

<별지 2호>

**'97사업계획 변경승인(결과) 요청(보고)**

(단위 : 천원)

학교명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수량) 평, 개	사업비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수량) 평, 개	사업비	

※ 변경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변경승인 요청의 경우는 도지사의 검토 의견 첨부

<별지 3호>

'97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천원)

학교명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수량) 평, 개	사업비	집행액	사업추진 상황	사업진도	완료 예정일

<별지 4호>

‘97사업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학교명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수량) 평, 개	사업비	집행액	잔액	비 고 잔액 발생 사유 등

98	자영농고육성(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 입니다.

### 1. 목 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자영농업인 양성
- 첨단시설·기자재 등의 지원으로 실험·실습 위주의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

### 2. 추진방향

- 도별로 1~2개교를 자영자 양성 농·수고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

### 3.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 전문대학의 학력인정을 받는 농림수산기술전문교육을 하는 각종학교 및 자영농림수산고등학교의 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5	'96	'97	'98
사업량		12개교	12	12	12	12
사업비	계	55,200	18,400	13,800	13,800	9,200
	보조	55,200	18,400	13,800	13,800	9,2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농고, 강진농고, 안동농고, 경남자영고, 서귀농고, 대천수고, 완도수고, 포항수고
- (2) 지원조건 : 전액국고 보조
- (3) 지원시설의 종류  
자동화, 현대화된 실습시설 및 기자재, 기숙사 시설등

####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 학교별 '97 사업비는 '96 사업 평가후 차등지원계획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 도 : 사업계획승인
- 도교육청, 학교 : 사업시행

####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업정책실 농촌인력과(02-503-7216)
- 도 농정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등)

#### 다. 사업시행

##### (1) 사업계획승인

- 각 도지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자영자 양성교로부터 '97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7사업계획을 승인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

##### (2) 사업추진

- 각 도지사는 사후봉사 및 운영조작에 따른 문제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시설물의 공사계약은 분리발주 시행할 수 없도록 지도

- 각 도지사는 유리온실등 첨단시설물의 공사계약시에는 자동화 시설의 조작 기술 지도, 사후봉사기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이 계약서에 명문화되도록 지도
- 각 도지사는 사업의 기성고(공사감독자의 확인등)에 따라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각 도지사는 자금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행정사항>

- 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결과는 승인후 10일 이내, 사업진도 및 자금집행 상황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등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

※ 각종보고서식 :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 보고서식에 준함

99	농업전문대학지원(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 입니다.

### 1. 목 적

- 농업을 이끌어 나갈 중견 영농 인력 양성기관인 기존의 농업전문대학에 첨단실험 실습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영농후계 인력 육성

### 2. 추진방향

- 농업분야에 종사할 전문경영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95지원 실적과 중복되지 않는 현대화된 교육 시설을 추가 지원

### 3.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5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업량		1개교	1	-	1	-	-
사업비	계	1,700	1,300	-	400	-	-
	보조	1,700	1,300	-	400	-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 이리농공전문대학
- (2) 지원조건 : 전액국고 보조
- (3) 지원시설의 종류  
'95년도에 지원한 시설이외의 실험실습시설

####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응 자		
계	1개교	백만원 400	400	400	-	-	-
시설지원	1	400	400	400	-	-	-

※ 농특세 재원임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전라북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업정책실 농촌인력과(02-503-7216)
- 전라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다. 사업시행

### (1) 사업계획승인

- 도지사는 이리농공전문대학으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을 승인
- 이리농공전문대학장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업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사업변경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경미한 사항은 제외)

### (2) 사업추진

- 도지사는 대학으로부터 사업설계서, 공사비내역서, 지방서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제출받아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및 사업착수를 지시하며, 원활한 시공·감리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기술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 등에 의뢰 가능)
- 가능한 한 시설물의 시공계약은 분리발주 시행할 수 없도록 함(사후봉사 및 운영조작에 따른 문제점해소)
- 첨단시설물의 시공계약시에는 자동화시설의 조작 기술지도, 사후 봉사기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이 계약서에 명문화 되도록 함
- 도지사는 사업의 기성고(공사감독의 확인등)에 따라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행정사항>

- 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결과는 승인후 10일 이내, 사업진도 및 자금 집행 상황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정산등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

※ 각종보고서식 : 농림계 특성화대학지원 보고서식에 준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입니다.

## 1. 목 적

- WTO이후 기술농업을 주도할 정예 영농인력 양성
- 최신기술 실기실습 특별연수교육과정 운영 등 중견영농인에 대한 첨단기술 능력 배양

## 2. 추진방향

- 순수 정예 영농인력 양성을 위한 선진국형 전문대학 시범설치
  - 전문실기 중심의 교육과 선진농장 현장실습과 직결
- 기존시설의 적극활용과 첨단영농기술 배양
- 졸업후 영농종사를 의무화하고 농업인후계자 및 병역특례자로 선발하여 영농정착 지원

3. 근거법령 : 한국농업전문학교설치령 (대통령령 14742호 '95. 7. 27)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1개교	-	-	-	-	-
사 업 비	계	백만원 75,336	12,720	9,937	2,342	6,223	44,114
	국 고 (보조)	75,336	12,720	9,937	2,342	6,223	44,114

※ 국고는 중앙에서 직접 집행함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내용

##### (1) 설치학과 및 정원

- 학 과 : 6개과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
- 정 원 : 720명 (40명×6개과×3년)
- 개교시기 : '97. 3월
- 위 치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11-1 (축산기술연구소 구내)

##### (2) '97학년도 입학생 선발

- 선발시기 : '96. 12 ~ '97. 1월
- 선발대상
  - 고졸이상의 자로서 출신학교장, 농촌지도소장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방법
  - 서류심사, 기초소양검사 및 면접 등 종합 실시

##### (3) 학사관리 및 졸업생 특전

- 학사관리
  - 입학금, 수업료 면제 및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 자가 및 지정된 농장에서 현장 실기실습, 해외선진농장 체험연수 등
- 졸업생 특전 및 의무사항
  - 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
  -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의거 병역미필자는 보충역 편입
  - 졸업생전원에게 영농정착금 지원
  - 졸업후 4년간 영농종사 의무제 실시 등

(4) 특별교육과정 설치운영

- U-Turn 귀농자,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장·단기 연수

(5) 교육시설

- 부 지 : 15,000평
- 시설규모 : 5,729평
  - 본관 및 교육관 2,179, 기숙사 2,296, 후생관 등 1,254평
  - '97. 2월 완공

나. '97사업비(예산)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보조)	읍자		
계	1개교	백만원 2,342	2,342	2,342	-	-	-
○ 시설비		2,071	2,071	2,071			
○ 장비비		48	48	48	-	-	-
○ 교육운영비		223	223	223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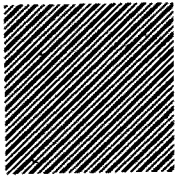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한국농업전문학교 (전화 : 0331 - 296 - 4764)
- 시 도 : 농촌진흥원 지도국 사회지도과
- 시군자치구 : 시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여 백

## IV. 소 득 원 개 발



여 백



10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농촌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 도모

2. 추진방향

- 지역별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지 선정 개발
-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휴양자원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휴양지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농어촌휴양지 지정·개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043	304	101	91	112	435	
사업비	계	406,367	91,478	33,914	36,500	42,650	201,825
	국고융자	284,457	63,908	24,190	26,000	33,000	137,359
	자부담	121,910	27,570	9,724	10,500	9,650	64,466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농촌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농촌 소득증대 도모

##### (2) 지원대상자

○ 관광농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임협,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 농업인은 1년이상 현지거주자로서 관광농원개발 토지소유자

○ 휴양단지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임협, 농지개량조합

○ 주말농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농업인

○ 민박마을 : 농업인

##### (3) 지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지원한도액	신규 200, 기지정 250	단지당 2,000	마을당300(농가당15)
용 자 조 건	년8%,5년거치5년상환	년5%,3년거치5년상환	년5%,2년거치3년상환

#####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각 세부사업별)

(5) 세부사업내용

	관광농원	휴양단지	주말농원	민박마을
사업자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임협,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축임협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농업인	농업인
사업규모	50,000㎡미만 (10,000㎡이상 원칙)	30,000㎡이상 100,000㎡미만	50,000㎡미만	농가 5호이상
사업내용	농촌의 자연자원과 농업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농산물판매, 영농체험, 운동, 휴양,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되는 것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 체육,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시설,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	농촌지역에서 농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
시설의 종류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이 정한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할 것.</li> <li>○ 관광농원, 휴양단지의 휴양시설은 원두막, 낚시터등 이용객에게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 본래취지에 적합할 것.</li> <li>○ 기타시설은 주차장, 공중화장실, 농기구보관창고, 관리사무실등 공공편의 및 사업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 본래취지에 적합할 것</li> </ul>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개소,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사업비계	예 산 안		
			국고용자	자 부 담	
계	91	36,500	26,000	10,500	
관광농원	55	27,500	19,250	8,250	
휴양단지	1	1,500	1,500	-	
민박마을	35	7,500	5,250	2,25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9405)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다.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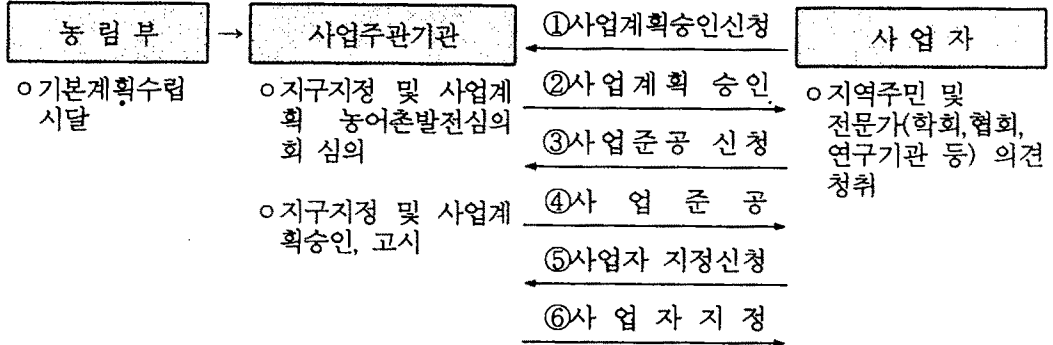
- 사업대상지역이 농촌휴양지로 적합한 지역이고, 사업규모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며, 사업계획이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업 본래취지에 적합할 것.

○ 우선순위

- 농업인일 경우 공동출자사업 우선선정 및 지원

○ 선정절차

- 사업자 시장·군수에게 사업승인 신청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
- 시장·군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라. 사업시행 : 세부사업 지침 참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점검자 및 점검내용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 점검시기 : 도는 연 1회이상, 시·군은 반기 1회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에 의해 사업추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2) 점검결과 반영

- 사업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승인 취소, 공사중지 등의 조치
-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계획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 등의 조치

나. 보 고

- 시장·군수는 매년 12월말 현재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지도·점검결과를 다음해 1.15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다음해 1.25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I. 관광농원개발사업

## 1. 목 적

관광농원사업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음.

## 2. 추진방향

- 지역별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지구마다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도모
- 관광농원은 농촌지역(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적지를 선정·개발
- 농원운영의 주체는 농업인으로 하며,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이 되도록 하며, 모든 시설물은 자연지형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개발
- 농원은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 다수농업인 참여와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농협 등 생산자단체,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의 공동출자개발 권장 및 우선지원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휴양자원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휴양지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농어촌휴양지 지정·개발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598	196	55	55	65	227
사 업 비	계	231,745	70,588	25,986	27,500	27,858	79,813
	국고유자	162,221	48,411	18,190	19,250	19,500	55,870
	자담	69,524	21,177	7,796	8,250	8,358	23,943

※ 추진목표('84~2004) : 읍·면당 1개소씩 1,435개소 조성(지원700개소)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 (2) 지원대상자

-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인 3호이상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함.
-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법인설립후 1년이상 경과하고, 출자규모가 3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작목반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농·축·임협)도 농업인과 공동 참여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도 참여 가능

<참여방법>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농원 조성·운영 및 작목입식, 부대·편의 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산품 등의 판매, 현물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음.



### (3) 지원규모 및 조건

#### ○ 지원기준

- 신규지구 : 농림부의 '97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지구지정을 한 신규관광농원
- 기지정지구 : 기지정된 관광농원중 각도별 관광농원사업 예산지원액 범위내에서 농업을 위한 농장이 규정된 면적이상 조성되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단, 관광농원개발계획기간(2·3차년도)에 해당되는 관광농원에 우선 지원

#### ○ 재원 : 농특회계

- 용자지원한도액 : 농원당 450백만원 이내(단, 생산자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0호이상 농가가 공동참여하고 농업박물관, 농촌생활자료전시관, 자연학습관찰장등 농업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신규지구 : 농원당 200백만원이내(1차년도)
- 기지정지구 : 농원당 250백만원이내(1차년도이후)

- 지원대상사업 : 지정된 관광농원내에의 과수, 가축 등 다년생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설치 및 기반조성사업

- 용자대상 : 관광농원사업자(대표자), 공동참여자

- 용자조건 : 년8%, 5년거치 5년균분상환(용자비율 : 총사업비 70%이내)
  - '97년도 지원자금부터 년 8% 적용('96이전 용자분은 기존의 년 5% 계속적용)

### (4) 구비서류

-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 관광농원의 관리·운영계획서
  -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
  -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 관광농원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 추천서 및 각서

(5) 관광농원의 유형

○기능에 관한 유형

유형	조성예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물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물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농가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기본시설 : 일정규모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초지,특수작물재배지 등), 농산물판매시설(판매장 또는 직판장)

※효도농원은 '97부터 시범적으로 추진

- 시장·군수,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한계농지 등을 개발, 은퇴·귀향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
- 지역주민도 구매·판매등 운영에 공동참여토록 유도

○운영형태에 의한 유형

- 농산물채취형 :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함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 등)
- 생산수단대여형 : 포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 농기구 등의 생산수단을 제공하여 농산물 생산의 보람을 느끼게 함.(임대농원, 임대과수원 등)
- 장소제공형 : 농장, 과수원, 화원 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함.

(6) 세부사업내용

○개발내용

- 사업지구내에서는 농원으로써 특성이 구비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을 위한 농장을 조성

- 부대·편의시설은 농원규모, 예상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농업용부대시설을 우선설치한 후 농원운영 및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목명)
농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조류,가축을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시 설 물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농특산품판매시설	농특산물판매장 등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농원여관, 민박, 야영장
	휴양·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팅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 및 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 주) 1.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작목입식대상에서 제외  
 2.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을 원칙으로 하고, 여관·여인숙은 숙박시설에서 제외  
 3.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편의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농원 및 시설규모

- 농원규모 : 50,000㎡미만(합리적인 작목입식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최소농원규모는 10,000㎡이상 원칙)
- 시설규모
  - 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40%이상 조성
  - 시설물면적 : 농장을 제외한 시설(도로, 조경면적 포함)면적으로 지구 지정면적의 60%이내 조성
  - 농특산품판매시설면적 : 30㎡이상
- ※관광농원이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등 위락시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초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96년이후 신규지정 관광농원의 숙박·식당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의 기준을 적용
  - 숙박시설면적(건물연면적) : 농장면적의 10%이내
  - 식당시설면적(건물연면적) : 농장면적의 5%이내  
(준농림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등 관계법령의 기준 적용)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개소,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사업비계	예 산 안		
			국고융자	자 부 담	
관광농원	55	27,500	19,250	8,25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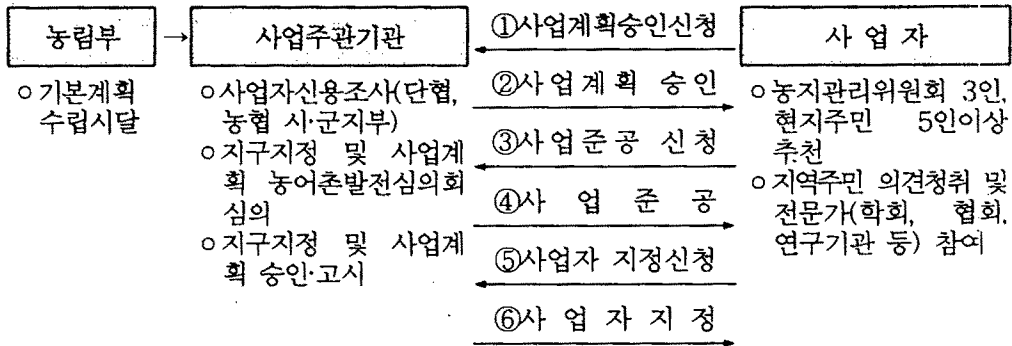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9405)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다. 추진절차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 사업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생산자  
단체(농·축·임협)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군에 제출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고시

<사업추진체계>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70조, 제94조

라. 사업시행

(1) 사업추진

-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구지정년도부터 익년도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1차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하며, 부득이한 구체적인 사유는 시장·군수에게 서면 보고
-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준공검사 신청(별지 제9호 서식)
- 사업준공이 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신청(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 사업준공검사와 사업자 지정 동시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사업자 지정을 한 경우 사업자지정서를 사업자에게 교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2) 사업계획변경

- 지구지정면적 변경은 50,000m<sup>2</sup>(변경후 지구지정 총면적)까지 가능
  -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후 가능
- 변경후 지구지정면적의 40%이상 농장조성여부 확인후 사업계획변경 타당성 검토(불합리한 투자억제를 위해 경영상태가 양호한지여부 등을 검토하고, 기성농원의 경우에도 시설규모 등이 현행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
- 농장면적 확대 및 내실화 위주로 유도하고, 숙박·요식·위락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변경 승인하고, 숙박시설이 불가피한 경우 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시설을 유도(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숙박·식당시설 면적기준을 적용하고, 여관·여인숙의 확대·신설 금지)
- 관광농원사업자는 반드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시설물 등을 설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변경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 단,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내용중 지구지정면적 변경 및 사업자 변경사항, 주요시설면적(작목입식, 숙박, 식당,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변경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면적 변경등 중요변경사항을 고시

## (3)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별도 시·도별로 예산 내시

(나) 자금의 운용관리

-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분기별 용자금 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하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자부담금 전액을 투입한 경우에 지원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년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라) 융자요령

- 융자금 대출은 신용대출, 농신보대출, 신용보증부대출 또는 담보대출(후취담보포함)중 사업참여자와 융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시설물이 수반되는 경우 후취담보 적극 활용)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농협중앙회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는 제외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의 사용은 일체 불허함.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4) 기타사항

(가) 사업효과

- 직접효과
  - 관광농원사업 참여농가의 농외소득증대
- 간접효과
  -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지역농산물과 특산물 판매 용이
  - 관광농원에 현지 농업인들의 취업으로 농외소득증대 기여 등
  -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나) 평 가

○ 평가방법

- 도지사는 년1회 전지구에 대해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 추진실적 보고시 함께 보고

○ 평가결과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
- 도지사는 도단위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해결방안을 건의

(다) 관광농원자부담개발사업

- 참여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거주 농업인중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소유농지 등을 활용, 자체적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
- 지구지정 및 추진절차 : 지원사업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등을 준용

<행정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관광농원 사업자는 사업장 입구의 적당한 위치에 관광농원사업장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관광농원 시설을 허위로 선전해서는 안됨.
-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나 신고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입장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55호 서식)
- 관광농원사업의 양도·양수
  - 관광농원을 경영하는 자가 노령화,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거나 관광농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다만, 관광농원을 양수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양수일현재 현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한함.
  -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관광농원사업의 타인경영

- 관광농원을 경영하는 자가 질병·징집·복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관광농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관광농원사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관광농원사업자는 지도·감독권자의 시설 및 운영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관리주체 : 시장·군수

(2) 점검자 점검내용

○점 검 자 : 도지사, 시장·군수

○점검시기 : 도는 년 1회이상, 시·군은 반기 1회 이상

○점검내용 : 관광농원내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등을 계획대로 조성·운영하는지 여부 확인

(3) 점검결과 반영

○사업시행단계(조성단계)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운영단계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75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시장·군수는 지구지정취소시 기지원된 융자금은 농협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관광농원사업을 목적으로 득한 공중위생법규정에 의한 숙박업등 관련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취소여부 등을 검토하여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

(4) 기타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다. 보 고

○시장·군수는 매년 12월말현재 관광농원사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0,10-1호 서식)을 다음해 1.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관광농원사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0,10-1호 서식)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 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관광농원사업 연도말 검정결과를 취합하여(별지 제10호 서식) 다음해 1.30일까지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자로서 농업인 3호이상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함.
-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농·축·임업)도 농어민과 공동참여 가능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도 참여가능

다. 신청절차

-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 단,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라. 구비서류

- 관광농원지원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마.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구지정 대상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 토산품·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관광농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역개발과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관광농원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구지정예정지에 지구지정 예정면적의 40%이상에 작목입식을 위한 농장(과수원,목장,특수작목재배지등)이 기조성되어 있는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 대표자 또는 참여농가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지구를 지정
- 기지정지구의 경우 경영성적이 우수하고 사업의욕이 있는 지구 우선 선정

## (2) 우선순위

- 농협 등 생산자단체,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이 공동출자하여 개발하는 지역 우선
  - 농가참여호수 및 취업인수가 많은 지구 우선
  - 작목입식면적비율이 높은 지구 우선
  - 지역농특산물의 (예상)판매액이 많은 지구 우선
  - (예상)내방객의 수가 많은 지구 우선
- 논외 타목적 전용이 수반될 경우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확정후 사업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관광농원과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업자는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3) 선정절차

- 농어촌정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관련규정과 사업계획내용 입지여건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구비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융자취급기관(단위농협 또는 농협군지부)에 송부, 신용조사를 실시
  - 융자취급기관은 신용조사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에 의거 반드시 인·허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검토시 전문가 및 관련기관(관광농업학회, 관광농원협회 등) 참여토록 함.

- 인·허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개별 인·허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류를 사업대표자로 하여금 제출받아 관련기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함.

○ 시장·군수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관광농원사업자(대표자)에 교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 6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고시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요령	농림부→도	12월	
2.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승인 신청서 및 개발계획서	사업자→시·군	매년1.1~2.21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1호서식
3. 관광농원개발계획서	시·군→도	3.10	별지제2호서식
	도→농림부	3.20	별지제2-1호서식
4. 자부담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보고	도→농림부	6.30	별지제2호서식준용
5.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군→도	1.15	
	도→농림부	1.25	별지제10,10-1호서식
6. 관광농원지정취소 결과보고	도→농림부	지정취소즉시	
7. 관광농원개발사업 연도말 점검	시·군→도	1.15	별지제11호서식
	도→농림부	1.30	

○사업자, 시·군 및 농협에서 참고할 서식

구 분	작 성 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1호 서식
2.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3. 관광농원관리운영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3호 서식
4. 추천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4호 서식
5. 각 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5호 서식
6. 관광농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 의견서	단위농협 (농협군지부)	시·군	별지 제6호 서식
7. 지구지정의견서	시·군	시·군농발심의회	별지 제7호 서식
8.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서	시·군	사업자	별지 제8호 서식
9. 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9호 서식
10.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제50호서식
11.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u>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신청서</u>			
사업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구(농원)명			
소재지			
조성면적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기타)	
사업비		백만원(용자 지방비 자부담 기타)	
<p>농어촌정비법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자(대표자)                      (서명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시장·군수 귀하</p>			
<p>첨부서류 : 1. 관광농원 시설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p> <p style="margin-left: 20px;">2.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p> <p style="margin-left: 20px;">3.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p> <p style="margin-left: 20px;">4.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p> <p style="margin-left: 20px;">5. 관광농원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p> <p style="margin-left: 20px;">6. 농지관리위원 3인(위원장 포함) 및 현지주민 5인이상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p> <p style="margin-left: 20px;">7. 각서 (별지 제5호 서식)</p>			

[별지 제2호 서식]

## '97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신규지구>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소재지	지구지정면적	농원규모	사업자(대표자)소명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사업비조달계획				'97 계획				'97분기별 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물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계	1/4	2/4				3/4	4/4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00도 00군 00면 00리			m' ha			합계																								
						작목	평																							
						입식	축사 (1동) 작관장 (1동) 대시설																							
						편의	식당 (1동) 숙박 시설 (1동) 테니스 장 (1개소) 휴게소 (1동) 주차장 (1개소)																							
						시설	기반 상수도	식																						





[별지 제3호 서식]

## 관광농원관리운영계획서

1. 농원관리 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물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2/4분기 : 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낚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낚시대회를 유치, 내방객 유치 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의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 : 과수따기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농원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 : 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별지 제4호 서식]

## 추천서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97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97관광농원개발사업 참여자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가. 관광농원개발조성예정지 :

나. 규 모 : m<sup>2</sup>( ha)

- ※농업여건조성여부 : 1) 지구지정예정지 ○○작목 ○○평 기초성, ○○가축 ○○두 사육중  
 2) 지구지정예정지의 연접지역 ○○작목 ○○평 기초성, ○○가축 ○○두 사육중

다. 주요사업내용

라. 사업참여자(대표자)

- 성 명 : (남·여)
- 주민등록번호 :
- 소유경지면적 :
- 주 소(현지거주기간) : ( 년 개월)
- 참 여 농 가 : 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 외관계	참여 형태	참여 내용	소유경지면적					
							전	답	과원	기타	계	
							평					

※ 소유경지면적란중 지구내 경지면적이 있을시는 ( )안에 별도면적을 표시

○첨부 : 대표자 및 참여농가 주민등록등본

추천인(농지관리위원장)	(인)
(농지관리위원)	(인)
"	(인)
(현지주민5인이상)주소·성명	(인)
"	(인)
"	(인)
"	(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자신용검토의견서

관광농원 대출현황 (19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대출누계액		대출제도초과여부		기대출금연체여부등	
기상환액					
대출잔액(A)					
금차대출신청액(B)					
A + B					

차주별	차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출신청금액			
		신용조사일자			
신용조사결과	자기자금조달능력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담보제공능력	(충분·적정·부족) ○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 가능여부	(충분·적정·부족) ○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 가능여부	(충분·적정·부족) ○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 가능여부	
	신용상태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 종합의견	○ 대출가능 ( ) ○ 대출불가능 ( ) ※대출불가능사유	○ 대출가능 ( ) ○ 대출불가능 ( ) ※대출불가능사유	○ 대출가능 ( ) ○ 대출불가능 ( ) ※대출불가능사유	

○ 종합의견

확인자 ○○단위농업협동조합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 지구지정의견서

---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연접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여부
7. 기타의견

19 . . . . .

○○시장·군수

인

승인번호 제 호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서

- 위 치 :
- 지 구 ( 농 원 ) 명 :
- 규 모 : m'( ha)
- 사 업 기 간 :
- 사 업 비 :
- 사업자(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조건을 부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 다 음 -

- 지구지정후 용자금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관광농원개발사업 본래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취소는 물론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득한 관련 인·허가의 취소와 동시 원상 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 . . . . .

시장·군수

인

[별지 제9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사업준공검사신청서

지구명 (지정번호)		위 치		TEL	
대표자	한글	규모	평( m <sup>2</sup> )		
	한문				
사업기간	부터 까지	완료일자			
신고인	주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p>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관광농업개발지구내에 작목입식등 관련시설물을 별첨과 같이 설치 완료하였기 준공검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고인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시장·군수    귀하</p>					



[별지 제9-1호 서식]

### 사업별 추진실적

○ 지구소재지 :

○ 대 표 자 :

구 분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감	비고(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예시”				
○ 작목입식				
- 과수	1,000평	1,100평	100평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축산	500평	500평	-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농업부대시설			-	
- 축사	100평/1동	100평/1동		
- 비닐하우스	200평/2동	200평/2동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편의시설				
- 식당및휴게소	50평/1동	40평/1동	△10평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10평

## 관광농원개발사업추진실적

### 1. 관광농원사업소득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재지	구정적 지지면	구정년 지정도	지구명원 (농원)	사업자 (대표자)	참여호수	종사자수	년간내방객수	수입(농업소득+농업 외소득)					비용(B)	순소득 (A-B)	자금투자내역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계(A)	계	융자	자부담	기타		
00도																						
계																						

- 주) 1. 수입·비용은 1년간의 농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2. 자금투자내역은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의 투자액 누계를 기재  
 3. 개원(일부 준공농원 포함)된 농원과 미개원(사업추진중인 농원 포함) 농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10-2호 서식]

3. 관광농원개발실태

〈농원수〉

(단위:설치농원수)

시도	관광농원수	숙박시설						음식점시설			농산물판매장	교양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농업대시설	정화시설(오폐수처리)
		숙박시설 설치농원수	농원여관	여관	여인숙	민박	방갈로 등	음식점 설치농원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예시) 00도	20	15	1	10 ( <sup>1</sup> )	5	1	5	10 ( <sup>2</sup> )	10	-	20	19	10	20	20	10

※ <sup>1</sup> : 건평이 100평이상인 여관을 설치한 농원수, <sup>2</sup> : 토속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설치한 농원수

〈농원시설규모〉

시군	농원명	(평)지구 면적(A)	작목입식(평)								숙박시설 (건평)		음식점시설 (건평)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평)	교양 시설(개소)	운동 시설(개소)	편의 시설(개소)	농업 부대시설 (개소)	정화 시설(개소)						
			계(B)	B/A	작물 입식물	양어 장	사육 장초지 등	하우스 본재원	...	...	계(C)	C/B	농원 여관	여관 여인숙	민박							방갈로 등	계(D)	D/B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예시) 00	00	10000	4000	40	3,000	200	400	-	400	-	100	25	-	1 동/ 50 (20 실)	-	2 동/ 40 (20 실)	-	50 ( <sup>1</sup> )	1.3	1동/ 50 (60인 <sup>2</sup> )	-	30	2	3	3	2	1

※ <sup>1</sup> : 토속음식판매여부(O, X)    <sup>2</sup> : 수용가능인원

별지 제10-2호 서식] 관광농원 개발실태는 광역시·도에서 취합·작성하여 보고

## 관광농원개발사업 연도말 검정서

(단위 : 천원)

시군	농원명	구분	총사업비			까지			'97예산액			'97검정액			미집행액			미집행유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 구분란에는 계속, 신규 기재

### 관광농원개발사업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소					
	영농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과)	졸업·중퇴
	조직형태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인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규모 (량)		
	사업예정지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사업비 (천 원)	계			용자	자부담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신청자</span> <span>년 월 일</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div>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계획서 3.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소유 명세서 4. 시설물 배치 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5. 관광농원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6. 농지관리위원 3인(위원장포함) 및 현지주민 5인이상 추천서 7. 각 서 8.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의견서						

## II. 휴양단지개발사업(자율)

### 1. 목 적

농촌휴양자원을 농촌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개발·육성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음.

### 2. 추진방향

- 본 사업은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단체(농·수·축·임협)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함.
- 휴양단지를 도시민에게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특색있게 개발
- 입지결정 및 사업계획수립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계획수립시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등 농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휴양자원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휴양지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농어촌휴양지 지정·개발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64	6	1	1	7	49	
사업비	계	93,600	8,100	1,500	1,500	10,500	72,000
	국고용자	93,600	8,100	1,500	1,500	10,500	72,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 체육·휴양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케하여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 (2)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업인단체(농·축·임협)
  - 해당지역 농업인의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여 부지 또는 시설물을 현지주민에게 우선 분양(임대포함)하는 조건으로 개발에 참여
  - 현지주민은 농업시설, 부대·편의시설 설치·운영, 특산물판매, 토지를 이용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능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재원 : 농특회계
- 지원대상사업 : 휴양단지내의 기반조성시설, 편의시설, 농업생산과 부대시설 설치 등
- 융자지원한도액 : 단지당 25억원이내
- 융자조건 : 년5%,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융자비율 : 총사업비 100%까지)
  - '97년도 지원자금부터 년 5% 적용('96이전 융자분은 기존의 년 3%적용)

##### (4) 구비서류

- 농촌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 휴양단지시설의 조성계획서

·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

·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 휴양단지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 휴양단지 분양·운영계획

· 농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5) 개발내용

- 기반조성시설 설치
  -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 지정
  - 내방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용수개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공중화장실 등
- 농업생산 및 부대시설
  - 지역특산물 생산시설과 생산물 수집·저장을 위한 집하장·저장고 등
- 편의시설
  - 지역농특산물판매를 위한 농특산물판매장등 판매시설
  - 농원여관, 호텔등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편의시설
  - 놀이시설,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장, 야영장, 자동차캠핑장 등 체육·휴양시설
  - 농업전시관, 농기구전시관, 농업과학관, 영농체험학습관, 교양시설 등

(6) 개발유형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촌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내방객의 건강증진, 휴양, 자연학습 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
- 농촌의 쾌적한 농원공간을 활용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한 농업관련시설이 포함되도록 특색있게 설치하여 일반관광지와 구분될 수 있도록 개발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사업비계	예산안		
			국고용자	자부담	
휴양단지	1	1,500	1,5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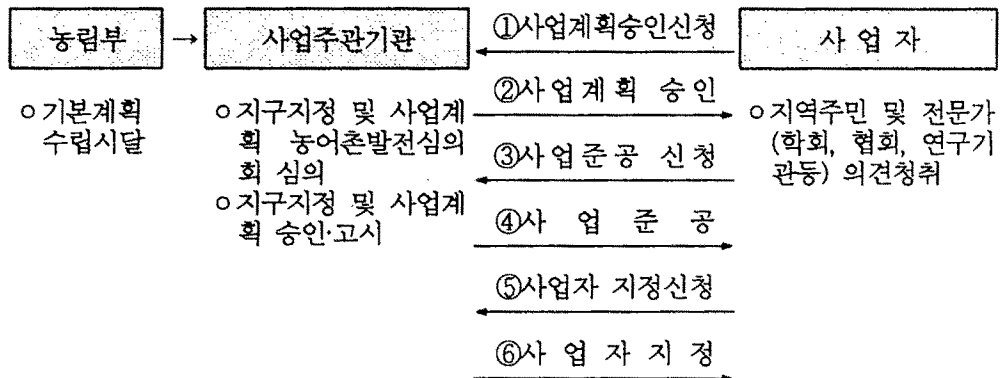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9405)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다. 추진절차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 사업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업인단체(농·축·임협)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군에 제출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고시

### <사업추진절차>



## 라. 사업시행

### (1)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 보상비는 공사비를 우선하여 가능한 전액보상으로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함.

### (2)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시행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은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조사설계감독비는 실비정산으로 함.

### (3) 준공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 공사완료후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준공보고를 받은 즉시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4) 분 양

- 분양방법
  - 휴양단지내의 부지 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분양(임대포함)

○분양가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및 당해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음.
- 지방비등 보조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기준에서 보조금은 공제함.

(5) 사업효과

-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지역농산물과 특산물 판매 용이
- 휴양단지내 현지 농업인의 취업으로 농외소득증대 기여 등
-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6)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별도 시·도별로 예산 내시

(나) 자금의 운용관리

- 휴양단지개발사업 승인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 상의 분기별 용자금 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

(다) 사업비 점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년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연도말 점정을 붙임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라) 용자요령

- 대출방법 : 신용대출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농협중앙회 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는 제외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반조성시설은 시장·군수가 책임관리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분양된 각종 시설물은 분양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보 고

- 도지사는 '97휴양단지개발사업 예산지원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휴양단지개발사업 지원계획서(별지 제2호 및 2-1호 서식)를 받아 3월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신규 휴양단지의 경우 기본계획서 포함 보고)
- 도지사는 12월말 현재 휴양단지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12월말현재 휴양단지사업 연도말 검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30일까지 보고
- 휴양단지의 지정 및 지구지정취소 등은 농어촌정비법 관련조항을 참조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시장·군수
- 농어촌진흥공사
- 농지개량조합
- 생산자단체(농·축·임협)

다. 신청절차

-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라. 구비서류

- 휴양단지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마.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지정대상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 제외하고, 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농촌지역의 준농림지역으로써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
- 기존마을의 자연경관, 문화환경, 특산품 등을 조화있게 연계하는 휴양단지 우선지원
-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품, 민예품 등)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휴양부존자원이 있는 지구로 시장·군수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기타 타법령(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 등)에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등 문제가 없는 지역 등

○ 단지당 지정규모

- 단지당 지정규모는 30,000㎡이상 100,000㎡미만
- 휴양단지 규모에는 기반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면적을 모두 포함

(2) 선정절차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

- 휴양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의 농림부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휴양단지개발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시장·군수는 휴양단지 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의 내용이 농촌소득증대, 자연경관의 보전등 농어촌휴양지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시장·군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함께 사업계획을 승인 통보
  - 시장·군수는 지구를 지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농촌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시행자	성 명 (명칭및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양단지명		규 모	m'( ha)
위 치			
<p>농어촌정비법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농촌휴양단지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시행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시장·군수 귀하</b></p>			
<p>첨부서류 : 1. 농촌휴양단지시설의 조성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 3.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농촌휴양단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촌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p>			



[별지 제2호 서식]

## 농촌휴양단지개발사업조성계획서

<신규지구>

(단위 : 백만원)

단지명	위치	지정년도	개발규모	사업자	사업내용			'97계획				'97분기별 용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계	1/4	2/4				3/4	4/4
									계	용자	지방비	민자및자부담								
000	00도 00군 00면 00리		m' ha		합계															
					기 단 기 기 본 시 설	도 로 하 수 정 화 시 설 · 전 기· 통 신 시 설	m' 1식													
					농 수 산 부 대 시 설	농 업 전 시 관 · 민 속 자 료 관 · · ·	m' · m'													
					편 의 시 설	숙 박 시 설 ( 동) · 공 중 변 소 ·	m' · m'													

[별지 제2-1호 서식]

<보완사업지구>

(단위 : 백만원)

단지명	위치	지정년도	개발규모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96까지 실적			'97계획			'97분기별 용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계	1/4	2/4	3/4				4/4
								사업량	계	용자	지방비	민자및자부담	사업량								
000	00도 00군 00면 00리	m' ha	합계																		
			주차장 반상도 시설	m'	1식																
			농수산업 전시관 부대시설	m'																	
			숙박시설 의식당 시설	m'	m'																

[별지 제3호 서식]

## 휴양단지개발사업 추진실적

1. 휴양단지사업소득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지명	소재지	사업행사시행자	구정지정면적(ha)	지정년도	자금투자내역			총종사자수	년간내방객수	수입(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용(B)	순소득(A-B)
						계	국고용자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00도																	
계																	

- 주) 1. 자금투자내역은 투자액 누계를 기재  
 2. 참여자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 또는 업체수  
 3. 총종사자수는 휴양단지내에서 취업·종사하고 있는 인원수  
 4. 개장(일부개장 포함)된 휴양단지와 미개장된 휴양단지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 휴양단지개발사업 연도말 검정서

(단위 : 천원)

시군	농원	구분	총사업비			까지			'97예산액			'97점정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용자	지담및민자	계	용자	지담및민자	계	용자	지담및민자	계	용자	지담및민자	계	용자	지담및민자		

## 휴양단지사업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조직형태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생산자 단체	참여농가수	호
	사업명	사업규모 (량)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사업비 (천 원)	계	용자	자부담
<p>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하여 농림사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시장·군수 귀하				
<p>첨부서류 : 1. 농촌휴양단지시설의 조성계획</p> <p style="padding-left: 20px;">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p> <p style="padding-left: 20px;">3.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p> <p style="padding-left: 20px;">4. 농촌휴양단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p> <p style="padding-left: 20px;">5.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p> <p style="padding-left: 20px;">6. 농촌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p> <p style="padding-left: 20px;">7. 농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p>				

### Ⅲ.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

#### 1. 목 적

농촌에 관광농원이 있는 등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의 농외소득증대 및 도·농교류 촉진에 기여

#### 2. 추진방향

- 숙박위주의 민박마을 조성보다 지역명소 중심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적 휴양마을을 조성
- 지역농산물 판매등과 연계한 민박마을 조성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휴양자원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휴양지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농어촌휴양지 지정·개발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395	101	45	35	40	174
사 업 비	계	40,303	9,139	6,429	7,500	4,286	12,949
	국고용자	28,212	6,397	4,500	5,250	3,000	9,065
	자부담	12,091	2,742	1,929	2,250	1,286	3,884

※ 추진목표('91~2004) : 군당 3개마을을 기준하여 408개 마을 조성 지원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농촌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이나 관광지 등이 있어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 (2) 지원대상자

- 사업신청일 현재 민박마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중 마을당 5호이상 농가로서 민박을 목적으로 농가주택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이나 자재구입이 필요한 농가

##### (3) 지원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재원 : 농특회계
- 용자지원한도액 : 마을당 3억원이내
  - 농가당 용자한도 : 15백만원이내

###### ○ 용자조건 : 년 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용자비율 : 총사업비의 70%이내

##### (4) 구비서류

-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 민박마을조성계획서

·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

####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사업비계	예 산 안		
			국고용자	자 부 담	
민박마을	35	7,500	5,250	2,25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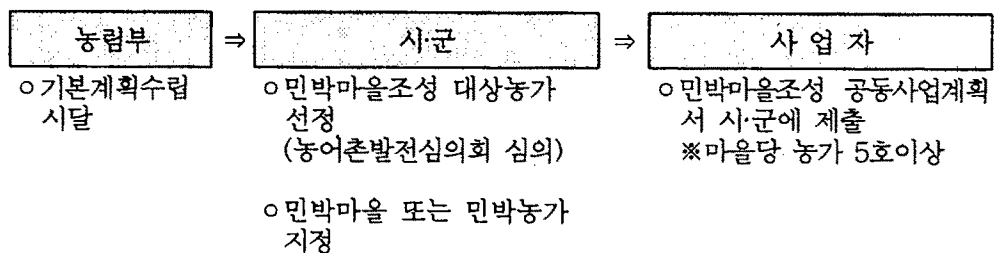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9405)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다. 추진절차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 사업자 : 농업인(마을당 농가 5호이상, 객실수는 농가당 5호이하 원칙)  
-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군에 제출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고시

### <추진체계>



라 사업시행

(1) 사업추진

- 사업추진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그 사유를 서면보고
-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보고

## (2)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별도 시·도별로 예산 내시

(나) 자금의 운용관리

- 민박마을조성사업 승인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 상의 분기별 용자금 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하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자부담금 전액을 투입한 경우에 지원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라) 용자요령

- 용자금대출은 신용대출, 농신보대출, 담보대출(후취담보포함)중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농협중앙회 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는 제외

## <행정사항>

###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장 표지부착, 숙박이용료신고, 양도·양수신고, 타인경영신고, 휴·폐업신고, 시설 및 운영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은 관광농원 사업자준수사항을 준용

## 나. 사후관리

- 관리주체 : 시장·군수
- 점검 및 방법
  - 점 검 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1회 이상, 시·군 반기 1회이상
  - 점검내용 :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여부 및 적법 운영여부 확인
- 점검결과 반영
  - 관광농원사업의 점검결과 반영을 준용

## 다. 보 고

- 도지사는 '97민박마을조성사업 예산지원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 3월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민박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12월말현재)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민박마을조성사업 연도말 검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30일까지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나.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민박마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중 마을당 5호이상 농가가 민박을 목적으로 농가주택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이나 자재구입이 필요한 농가

#### 다. 신청절차

-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 라. 구비서류

- 농가민박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민박마을조성계획서

#### 마 사업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영농규모가 적고 영세한 농가를 우선선정
- 전문적인 숙박업자, 상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신축자금은 제외

##### (2) 대상지역 및 시설규모

-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법등 관련개별법상 입지에 제한이 없는 농촌지역
- 객실수는 원칙적으로 농가당 5호이하로 하고, 기타 시설기준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상 여인숙업 시설기준 준용

##### (3) 선정절차

- 읍·면장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농가로부터 민박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다만, 단위농협에서 농협중앙회의 민박마을 육성계획에 따라 민박마을을 선정·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조합장이 농가로부터 민박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민박마을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

[별지 제1호 서식]

## 농가민박사업신청서

가. 신청인 주소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라. 가옥소재지

마. 사업내용 및 자금소요

민박가능방수	사업내용	소요자금			산출근거
		계	용자	자부담	
○실	화장실보수				
	주방개량				
	방보수				
	계				

바. 경지면적 및 소득효과

경지면적 (m <sup>2</sup> )					소득효과추정(년간)		
계	전	답	과수원	기타	농업소득	농외소득	계
					천원	천원	
					( )	( )	

※농외소득란의 ( )는 민박으로 인한 소득액을 표시

위와 같이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19 . . . . .

신청인 \_\_\_\_\_ (인)

[별지 제2호 서식]

민박마을조성계획서

민박마을소재지				참여농가수		호		
		( )				( )		
		( )				( )		
참여농가 주소·성명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사업규모	민박방수	실	수용인원	명	사업금액	천원	응자신청	천원

위와 같이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19

○○읍·면장 \_\_\_\_\_ (인)

붙임 :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 1부.

시장(군수) \_\_\_\_\_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

지구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참여 농가명	민박규모		수용가능인원	년간정용수 추이객	세부항 내용	자금조달계획							인관 자 원		
			실	평				합 계			분기별 용자금 소요						
								계	용 자	자 부 담	계	1/4	2/4	3/4		4/4	
					명	명	천원										
계	호																

〈작성요령〉

1. 민박규모는 농가별로 민박 제공가능한 방수와 총평수, 수용가능인원은 1회, 수용가능인원 기재
2. 세부사항내용은 개보수(방수리, 화장실, 샤워장등) 중·개축으로 구분 기재
3. 용자신청액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민박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

도별	소재지	마을명	선정 년도	참여 농가수	방 수	연간이용객 수	수 입				비 용	순 소 득	자 금 투 자 내						
							민 박 수 입	농 산 물 판 매	특 산 물 판 매	음 식 물 판 매			기 타	계	용 자	자 부 담	기 타		



[별지 제5호 서식]

## 민박마을조성사업 연도말 검정서

(단위 : 천원)

시군	농원명	구분	총사업비			'97예산액			'97검정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 102 농촌특산단지육성(자율)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 1. 목 적

-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의 발전 도모

### 2. 추진방향

-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품목으로 향토성과 지명도가 높고 지역의 열이 담긴 지역특산품을 지정하여 육성
- 다수농가의 농외고용과 소득증대효과가 높은 지구를 지정하여 육성
- 기존단지의 내실화를 위한 판로 및 경영기술지도 강화
- 고부가가치제품 및 농촌부존자원 활용제품 생산단지 우선 지원

###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농어촌특산단지의 지정과 육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특산단지의 지정 신청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202	363	70	60	100	609
사업비	계	323,640	80,280	17,500	17,200	26,700	181,960
	국고	50,910	6,495	3,325	2,600	4,950	33,540
	지방비	50,910	6,495	3,325	2,600	4,950	33,540
	읍자	144,018	44,730	6,930	8,140	10,770	73,448
	자부담	77,802	22,560	3,920	3,860	6,030	41,432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산품을 생산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의 발전 도모

##### (2) 지원대상자

- 농어업인, 비농어업인  
(단, 비농어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어업인 참여)

##### (3) 지원규모 및 조건

##### ○ 단지당 지원한도

- 농협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검토를 기초로 농발위 심의후 지원한도 결정

지원등급	구성비	자금지원한도
1등급	30%	3억원
2등급	30%	2.5억원
3등급	40%	2억원

##### ○ 단지당 지원내역

구 분	재원별내역	융자조건	비 고
시설비	국 고 20% 지방비 20% 용 자 40% 자부담 20%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	- 시설자동화 및 사업장 신축 등
개발비	국 고 20% 지방비 20% 용 자 40% 자부담 20%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	- 신상품 개발을 위한 금형제작 -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등
운영비	용 자 70% 자부담 3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연리 8%	- 원료구입 등

※ '98부터 보조중단(보조감축부분은 융자로 대체)

(4) 참여형태 및 대상품목

○ 참여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이상협업형), 임가공, 취업형태로 운영

○ 대상품목

업종별	품목
민속공예품	죽제품, 목공예, 석공예, 도자기공예, 한지, 패각가공, 완초가공등
농수산물 섬유직물 석재분야	싸리제품, 비닐제품, 지물제품, 어망, 인삼발 등 모시, 삼베, 마포, 자수 등 조경석, 숯돌, 돌가공제품 등

※ 일반공산품은 신규지정 대상품목에서 제외

(5) 구비서류

○ 특산단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계	예산안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계		17,200	10,740	2,600	8,140	2,600	3,860
시설비	140	11,200	6,720	2,240	4,480	2,240	2,240
개발비	60	1,800	1,080	360	720	360	360
운영비	140	4,200	2,940	-	2,940	-	1,26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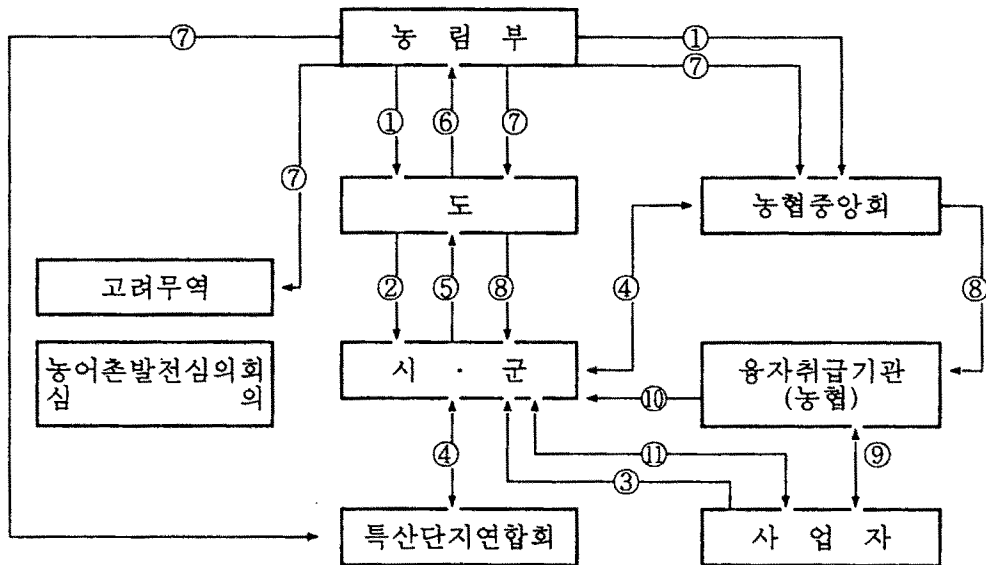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9405).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다. 추진절차

- 농림부 : 기본계획 수립 시달
- 사업자 : 지구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에 제출
- 시·군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장기계획 사업량 및 예산범위내에서 농협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 검토와 농발위 심의후 사업계획 확정

<체계도>



①지원내시	⑤지원신청	⑨융자금신청 및 대출실행
②지원재내시	⑥육성계획서 제출	⑩대출실행통지
③지정 또는 지원신청	⑦지원계획 통지	⑪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④사업성검토(의견청취)	⑧지원계획 재통지	

## 라. 사업시행

### (1) 사업추진

○사업자(농어업인, 비농어업인)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지원에 따라 사업시행

### (2)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업계획수립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지원액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읍·군·면사무소에도 통보. 다만, 시·군간 예산증감이 발생시는 시·도 지원액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예산변경조치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3)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별도 시·도별로 예산내시

#### (나) 자금의 운용관리

○개발사업 승인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분기별 읍·군·면사무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하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자부담금 전액을 투입한 경우 지원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교부조건 읍·군·면사무소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별표1)

####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년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 (4) 융자요령

-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의 여신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급적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산단지의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시 담보물의 시가기준을 현실화 하고, 시설자금 융자시 최대한 후취담보 실시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농협중앙회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는 제외

#### (5) 사업효과

-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개발과 농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일자리와 농외소득증대에 기여

### <행정사항>

#### 가. 사업자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기계)은 사후관리기간(준공일로부터 10년)내 처분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중 부도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산단지 사업자는 사업장 입구의 적당한 위치에 특산단지의 명칭, 지정년도, 지정번호, 지정권자 등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사무실에는 지정서를 부착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 특산단지 사업자는 연도별 수입 및 지출상황(보조금은 별도 계리), 결산상황, 자산, 자본, 부채, 손익상황등), 제조원가, 매출현황, 참여가구현황, 임금지급상황 등에 관한 농촌특산단지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9호 서식)

나.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 시장·군수는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대학,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연구기관, 특산단지연합회 등을 통하여 디자인 및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는 특산단지사업에 필요한 상품기술 및 디자인개발을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로 채택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 특산단지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유사제품과 차별화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다. 사후관리

(1) 관리주체 : 시장·군수

(2) 점검시기 및 내용

- 시장·군수는 농협, 특산단지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반기 1회이상) 현장실태 조사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

(3) 점검결과 반영

- 사업성 검토결과 부실화 단지는 과감히 지정취소 및 업종전환을 유도 하고 사업전망이 있는 단지는 추가지원 요구시 기성단지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
- 시장·군수는 보조금과 융자금(원리금 상환기간 만료 이전)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보조금반환, 지원자금(융자)회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타 필요사항
건물(공장,공동작업장, 창고,사무실등), 기계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처분제한원칙	사후관리기간중 부도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현재액 및 사후관리사항등을 기록



## 라.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현재 농촌특산단지 사업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다음해 1.30일까지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시장·군수는 관내 특산단지에 대한 12월말 사업추진실적, 운영단지현황, 지정취소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집계)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1.31까지 보고(별지 제10,11,12,13호 서식)
- 신규 및 기성단지 지원계획 보고 : 각 시·도지사는 신규 및 기성단지 지원 계획(사업량, 재원별 지원액등)을 매년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특산단지제품의 판매확대방안”(각종 문화행사, 서울지역 특별판매 행사, (주)고려무역 판매행사 참여)을 수립하여 매년 1.2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추진실적을 다음연도 1.20일까지 보고(별지 제14호 서식)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농어업인, 비농어업인  
(단, 비농어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어업인 참여)

다. 신청절차

-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 단,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라. 구비서류

-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 마.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 신규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성 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우선선정하되, 농업인 참여비율이 높은 단지, 전통민속공예품, 고부가가치제품,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제품생산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
- 생산제품의 지역대표성과 지명도가 높고, 상품화가치가 있는 지역특산품 생산지구를 중점적으로 지정
- 조성실적(수) 위주의 무분별한 단지지정 지양으로 사업부실화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1군1명품」과 「1농협1특산품개발운동」 등과 연계될 수 있는 품목 우선선정
- 일반공산품, 식료품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확정후 사업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 기성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성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선정하되, 농외소득증대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의 시설현대화, 내실화에 집중 지원
- 전통민속공예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등에 우선지원하되, 단순부업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될 경우 우선순위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2) 선정절차

- 신규 및 기성단지에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사업시행전년도 12월말까지)

(신규 : 별지 제1,2,3호 서식, 기성 : 별지 제2,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장기계획사업량 및 예산범위내에서 농협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 검토와 농발위 심의후 지원계획 확정(별지 제4,5,6호 서식). 단,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시 공예협동조합, 기타 품목별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특산단지 사업 추진 실적 - 운영단지 현황 - 단지별 지정취소 현황 - 연도별 지정 및 취소현황	시·군→도 도→농림부	1. 15 1. 31	별지 제10,11,12, 13호 서식
2. 특산단지제품 판매확대방안 수립 보고	도→농림부	매년 1. 20	
3. 특산단지제품 판매확대방안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	도→농림부	매년 1. 20	별지 제14호 서식
4.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	도→농림부	1. 30	별지 제8호 서식
5. 특산단지별 지정계획 보고 (총괄, 신규, 기성) - 특산단지 사업비 조달계획 세부 명세표	도→농림부	1. 31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6호 서식
6. 특산단지 계획변경 보고	도→농림부	변경즉시	별지 제14호 서식
7. 특산단지 지정취소 결과보고	도→농림부	취소즉시	별지 제12호 서식

[별표 1]

## 보 조 조 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또는 검정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발하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끝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한 계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거나 시장·군수가 특산단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한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
8. 보조사업자는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의 창부·서류·기타의 재산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특산단지 지정신청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사업계획서와 같이 특산단지를 조성하고자 지정 신청합니다.

덧붙임 : 사업계획서

19 . . . . .

○○특산단지 대표 . . . . . (인)

시장·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참여가구현황

(단위 : 가구)

합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입 가 공		
계	농어가	기타	계	농어가	기타	계	농어가	기타	계	농어가	기타	계	농어가	기타

- (주) 1. 공동생산이라 함은 참여가구가 원료를 스스로 생산 또는 조달하여 특산단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공동분배하는 것을 말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는 공동출자란에 적음.  
 3. 2인이상 참여가구의 경우 가구원중 특산단지에서의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의 참여형태를 적음.

○참여가구 및 참여자 명단

(단위 : 가구)

가구번호	가구주성명	주소	경작면적(m')			참 여 자			
			계	자경	임차	성명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참여형태

- (주) 1. 사업자의 가구번호는 1번을 부여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 그의 참여형태란에는 “출자”라 적음.

2.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시기별 소요금액			
	합계	국비보조	지방비 보 조	농특용자	자부담	계	2/4	3/4	4/4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건 물								
	· ( )								
	· ( )								
	· ( )								
	· ( )								
	기계·기구								
	·								
	·								
	·								
생산부대시설									
·									
·									
·									
개 발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원료구입비 기 타								

(주) 1. 건물은 공장, 공동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의 사용목적에 따라 동별로 세분하고, ( )안에 신축·중축·개축·매입중 하나를 적음.

2. 건물을 토지와 일괄매입하는 경우의 건물매입비는 당해건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적음.



### 3. 제조공정

--

(주) 단위공정별로 상세하게 기재(필요할 경우 도면 첨부)

### 4. 원료조달계획

년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량	소요자금 (천원)			
						계	정부지원	자체차입	자기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주) 1. 조달처는 농촌, 도시, 수입 등으로 구분  
 2. 조달방법은 자체생산, 구입, 원도급자 제공 등으로 구분(자체생산은 참여형태가 "공동생산"으로써 참여가구가 경작 등의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경우에 한함)  
 3. 조달시기는 연중 또는 일시(예 : 3월~6월)로 구분  
 4. 소요량에는 물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5.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전년(19 )			당년(19 )			2년차(19 )			3년차(19 )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주) 1. 생산 및 판매단가는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함.

2. 수량에는 수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6. 판매방법 및 판매처

판매경로 :				
제 품 명	수 량	금액(천원)	판매처	판 매 실 적
				○ 판매기간 : 년도 ~ 년도(년간) ○ 제 품 명 : ○ 총 판매금액 : ○ 판 매 처 :
향후 판매 전망 :				

- (주) 1. 현재 판매(거래)하고 있거나 앞으로 판매계획을 작성함.  
 2. 판매경로는 생산에서 판매처까지의 경로를 도표로 작성  
 3. 향후 판매전망은 어떠한 사유로 전망이 있다 또는 없음을 명기  
 4. 판매실적은 과거 판매실적이 있을 때 제품별로 간략히 기재  
 예) 판매기간 : '94~'96(최소한 3년간 이상)  
 제 품 명 : 도자기  
 판 매 처(상세히) : 서울 미도파백화점, 서울공예품판매점 등

7. 소득효과

(단위 : 가구,천원)

		전년(19 )	당년(19 )	2년차(19 )	3년차(19 )
매 출 액 (A)					
제조원가및비용계	원 료 구 입 비 노 무 비 (취업) 노 무 비 (임가공) 경 비 ( 제 조 원 가 계 ) 판 매 리 비 일 반 관 리 비 지 급 이 자(원금제외) 제 세 공 과 금 기 타 비 용				
	원가 및 비용 계 (B)				
손△익(A-B)					
소득분석	참여형태별 가 구 수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계			
	가구당소득액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계			

(주) 1. 원료구입비는 공동생산형태의 참가구이외(외부)의 자에게 지급한 비용만 적음.

2. 노무비는 취업 또는 임가공 형태의 참가구에 지급한 금액만 적음.

3. 참여형태별 가구수는 "1. 개황"의 "참인가구현황" 기재요령 참조

4. 가구당 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적음.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 또는 공동생산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손△익을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취업 또는 임가공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와 취업(또는 임가공) 혼합인 경우는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는 손△익을 당해가구수로, 취업(또는 임가공)은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각각 나눈 금액
-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참가구의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출자란에 적음.

[별지 제3호 서식]

## 종합심사서

1. 명칭 및 사업장 구분 : (명칭) (사업장구분)
2. 사업장소재지 :
3.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4. 사 업 자 : (성명) (생년월일) 19 . . . .
5. 참여형태 :
6. 심사내용 : (붙임참조)

19 . . . .

○○시장·군수 (직인)

(1) 사업성검토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2) 연합회 의견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3) 종합의견

※ 전체사항을 포괄적으로 적되,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요건 및 법령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반드시 적음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특산단지 사업비 조달계획 세부명세표(총괄·신규·기성)

(단위 : 백만원)

대표자	사업비조달계획													분기별자금소요액				사업내역 (요약하여요점 만기입) ○시설개발자금 필요시 작성	
	총 계				시 설 자 금				개 발 자 금				운영자금		계	2/4	3/4		4/4
	합계	보 국비	조 지방비	농 특 용 자	자 기 부 담	합계	보 국비	조 지방비	농 특 용 자	자 기 부 담	합계	보 국비	조 지방비	농 특 용 자					
합계																			

※ 분기별 자금소요액 요구는 시·군별, 단지별로 일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구할 것.







[별지 제8호 서식]

## ○○년도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서

(단위 : 백만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대표자성명	사 업 비 지 원 대 정 산												비 검 정 요 점  (준공일, 수량 등) 고 자 량 수 기 입				
				계				시설자금				개발자금					운영자금			
				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농특용자 자부담	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농특용자 자부담	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농특용자 자부담		계	농특용자 자부담		
합계																				

※ 상단·하단 구분하여 상단 : 정산액, 하단 : 예산액을 지원



4. 사업비 조달상황

(단위 : 천원)

점 검 기 준 일	재원별	용 도	조 년 월 일	조달금액	사용명세	점 년 월 일	점 직 성 명	점 검 자 날 인

- (주) 1. 재원은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농특용자, 자부담중 하나를 적음.  
 2. 용도는 시설자금, 개발비, 운영자금중 하나를 적음.  
 3. 사용명세는 상세하게 적음.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사항

재원	재산명	조 년 월 일	조달금액	사용명세	처 분 년 월 일	처분사유	처분사항	점 직 성 명	점 검 자 날 인

6. 생산 및 판매상황

(단위 : 천원)

점 검 기 준 일	전기말재고		생산실적		판매실적		당기말재고		점 년 월 일	점 직 성 명	점 검 자 날 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7. 소득효과

점 검 기 준 일	매출액	제조원가 및 비용	손익	소 득										점 년 월 일	점 직 성 명	점 검 자 날 인	
				총 소 득 액	가 구 별 소 득								취 업				임 가 공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 가 공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별지 제13호 서식]

### 연도별 농촌특산단지 지정 및 취소현황

(단위 : 개소)

	조 성 단 지		지 정 취 소		운 영 단 지
	신규조성	누 계	당년취소	누 계	누 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별지 제14호 서식]

## 특산단지제품 판매확대 추진실적 보고

1. 홍보활동
2. 각종 행사 참여내역
  - 문화행사
  - 판매행사 등
3. 문제점(특산단지 판매에 대한)
4. 대책
5. 향후 추진계획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 1. 목 적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농외취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2. 추진방향

- 기존 입주업체 및 신규지정 활성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각종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2004년까지 400개소(23백만평) 조성

### 3. 근거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 - '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개소)	157	33	8	5	12	99	
사업비	계	1,236,921	301,198	43,007	33,916	91,200	767,600
	국비보조	364,241	66,694	12,990	7,557	30,600	246,400
	국비용자	248,005	77,502	7,050	3,853	17,300	142,300
	지방비보조	61,011	10,990	1,514	1,507	5,100	41,900
	지방비용자	563,664	146,012	21,453	20,999	38,200	337,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사업내용 : 부지조성비(용지취득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 등) 지원
- (2) 지원대상 : 공영개발 농공단지
- (3) 지정대상지역

○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촌”지역의 시·읍과 연결한 면지역으로 함(다만, 그외의 면지역도 도지사가 인력수급 및 기반시설 등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정가능)

####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시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 북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6)	-
충 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8)	태안군, 청양군(2)
전 북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 남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여천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 북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남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울산시, 함안군, 양산시(7)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	북제주군(1)	남제주군(1)
합 계	25 (18시, 7군)	48 (22시, 26군)	48 (2시, 46군)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진주, 울산,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함

※2000년까지는 일반농어촌중 충주시(충원군), 서산시, 아산시, 군산시(옥구군), 익산시(익산군), 광양시(광양군), 포항시(영일군), 구미시(선산군), 창원·마산시(창원군)은 추가지원농어촌으로, 추가지원농어촌중 춘천시(춘천군), 삼척시, 보령시, 남원시, 김제시, 안동시(안동군), 상주시, 영주시, 진주시(진양군)은 우선지원농어촌으로 봄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17) : 삼척, 공주, 보령, 서산, 아산, 남원, 정읍, 김제, 나주, 영천, 김천, 상주, 문경, 영주, 밀양, 통영, 사천시

#### (4) 지정제외지역

- 경기도, 직할시와 인접된 읍·면
- 동광양시, 장승포시 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

#### (5)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및 단지당 규모

-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 지정면적기준 1,000천㎡이내(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0천㎡이내)
- 실수요자 부담으로 조성하는 경우 330천㎡이내에서 추가지정 가능
- 단지당 지정면적 : 65~330천㎡이내

#### (6) 지정 및 분양

- 지정개발주체 : 시장, 군수(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 정 : 시·군별로 기지정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10%이하인 경우  
- 민간개발 농공단지 및 농촌부존자원활용 농공단지 지정시는 예외
- 분 양 : 부지조성 공정이 30%이상일 때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지방비 보 조	지방비 용 자
			소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계	13	33,916	11,410	7,557	3,853	1,507	20,999
계 속	8	23,596	7,702	5,739	1,963	710	15,184
신 규	5	10,320	3,708	1,818	1,890	797	5,81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통상산업부장관

- 통상산업부장관 :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입주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의 관리
- 농 립 부 장 관 : 농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
- 건설교통부장관 :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
- 환 경 부 장 관 :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그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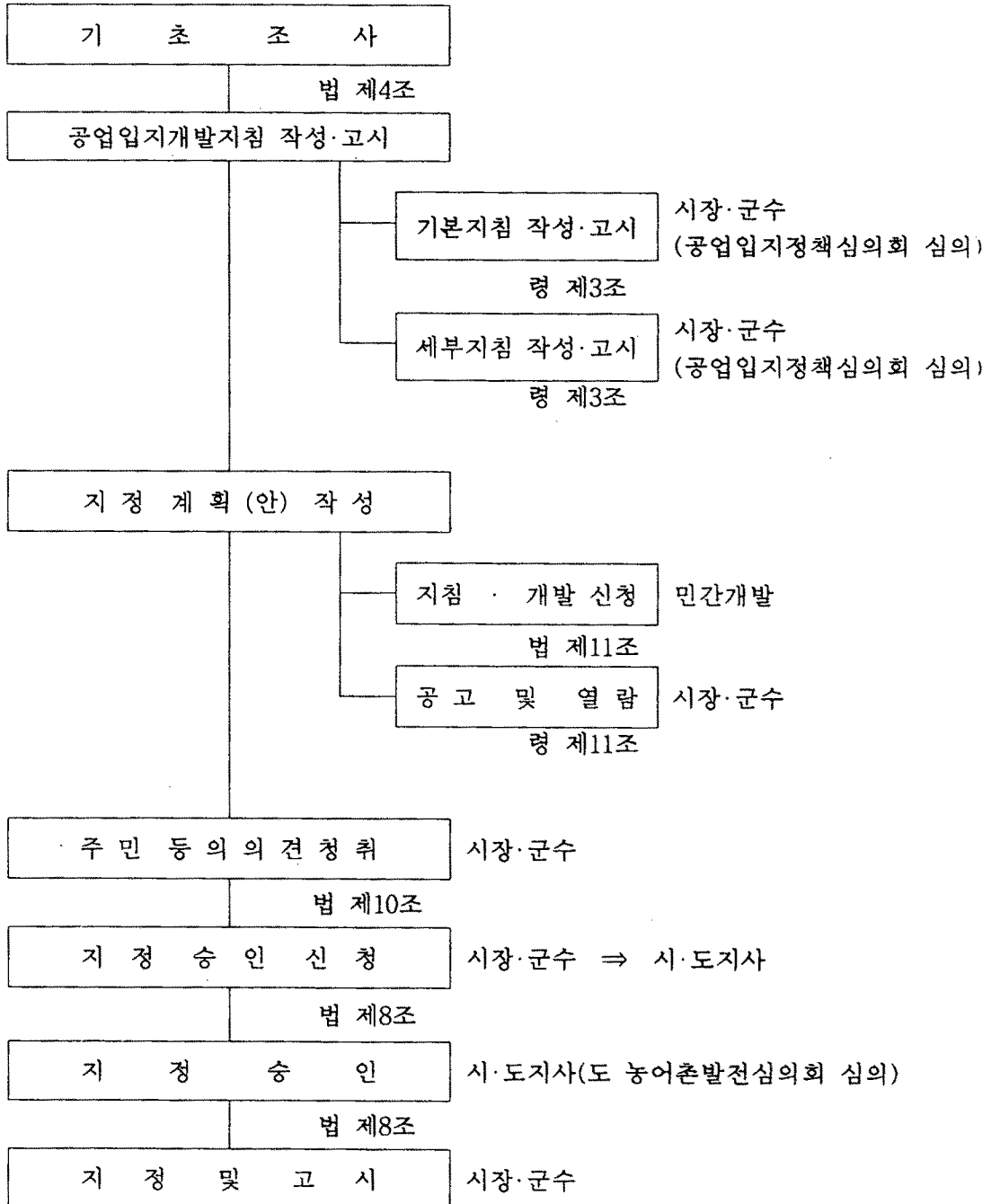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 립 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02-500-2664, 5)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 산업배치과( 02-500-2450~2)
  - 건설교통부 토 지 국 입지계획과( 02-500-4105~6)
  - 환 경 부 자연보전국 평가제도과( 02-500-4266~7)
- 시 · 도 : 지역경제국 공업(상공, 중소기업지원)과
- 시 · 군 : 지역경제(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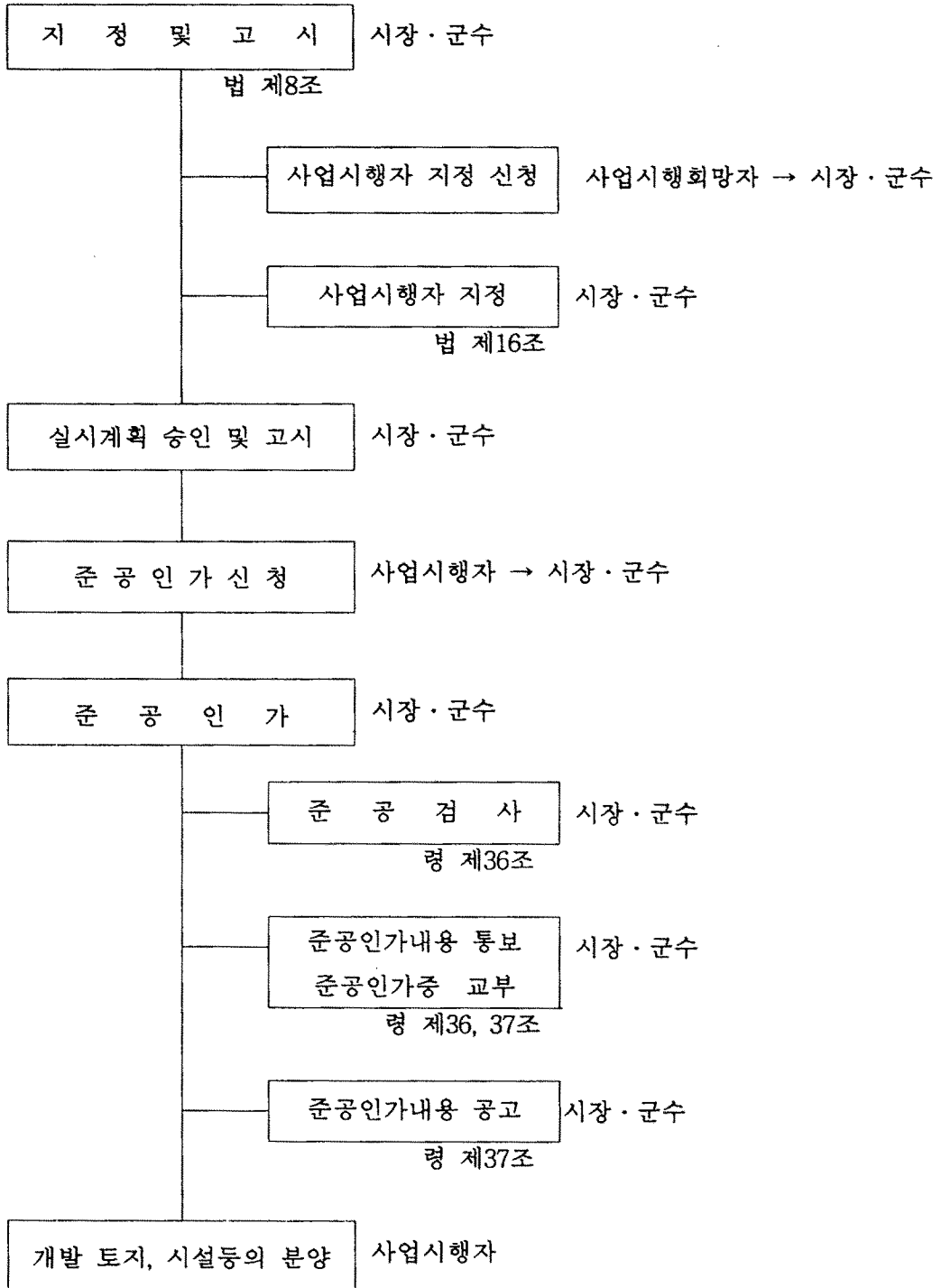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 지정절차 >



<개발절차>





## 마. 사업계획수립

### (1) 사업대상지구 선정

#### (가) 사업대상지구 검토

-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입지제외기준'과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 (나) 농공단지 입지제외 기준

-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 및 수산자원보전지구(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지역,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 지역
- 광역시와 인접한 읍·면
-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단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논은 60%까지 허용)
- 조류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20km이내 지역
-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km이내와 하류측 1km이내 지역)
-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이내)
-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km이내 지역)
-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지역

### (다) 입지선정 대상지역

- 단지내의 고저차가 20m이하이고 평균 2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경사도가 10%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지 않은 지역
-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 100m이상 교량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 동력고압선으로부터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의 외·폐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
- 단지중심 2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80%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또는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 동일생활권 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공업단지(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공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가 없는 지역일 것. 이 경우 동일생활권은 다른 공업단지와의 거리(도로기준10km이내), 관할행정구역,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
-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어촌발전계획,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2) 예정지조사

- 시·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 합동실사반에 농어촌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농어촌발전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3)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공간배분, 업종별 배치, 경관보전, 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함.

## 바. 사업시행

###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후에 시장·군수는 사업시행희망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2) 공정계획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 (3) 시행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계획변경

### (4)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
-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

### (5)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 이를 담당. 다만, 조성비 일체를 입주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는 건축사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
- 공동이용건축물의 시공감리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건축직공무원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

(6)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공사 등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정산 완료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필증을 교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일반농공단지 지원기준>

(단위 : 천원/평)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국 비 보 조	15(-)	30(15)	45(15)
국 비 용 자	10(-)	20(10)	20(10)
지방비 보조	5(-)	5( 5)	5( 5)
합 계	30(-)	55(30)	70(30)

- ※1) 잔여사업비는 지방비용자(기체)로 충당
- 2) 대기업은 ( )와 같이 지원
- 3) 용자조건 : 년리 7%, 5년거치 5년균등상환

<광산촌농공단지 및 농촌부존자원활용농공단지>

(단위 : 천원/평)

합 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방비보조
85	50	30	5

- ※1) 광산촌농공단지 국비보조는 통상산업부에서 지원
- 2) 농촌부존자원활용농공단지는 부존자원 사용업체가 2/3이상 입주하는 농공단지
- 3) 잔사업비 및 국비용자금 상환조건은 일반농공단지와 같음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립비 면제>

- 논 : 평당 11,900원, 밭 : 평당 7,140원, 산림 : 평당 1,920원
- 전용부담금도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통상산업부)>

구 분	금 용 한 도	대출금리	상 환 조 건
시설자금	7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까지)	년 7%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운전자금	3억원이내 (소요자금의 70%까지)	년 7%	3년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계	10억원이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환경부)>

(단위 : %)

일 반 농 어 촌			추 가 지 원 농 어 촌			우 선 지 원 농 어 촌		
합 계	보 조	용 자	합 계	보 조	용 자	합 계	보 조	용 자
100	30	70	100	50	50	100	70	30

- ※ 1)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2) 기금융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등으로 충당
- 3) 기금융자조건은 연 7.0%로써 3년거치 10년균분상환임.

(2) 자금의 운용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예관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방비융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음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3)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공장용지 분양 : 시장·군수
- 공단 및 업체관리 : 시장·군수
- 환경관리 : 시장·군수

###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농림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농공단지 지정승일로부터 10일이내 농공단지 지정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공단지 조성현황보고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오.폐수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실시계획승인개요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사업성 검토결과 및 자금지원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 농어촌진흥공사는 매분기말 익월15일까지 조성사업 진도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나. 신청자격

#### ○ 공영개발인 경우

- 시장·군수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자

#### ○ 민간개발인 경우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다만, 대기업이 사업시행자이거나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함)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단지의 개발에 한함
-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 정한 바에 따름.

### 다. 구비서류

- 농공단지 지정신청서
- 위치도
- 토지이용현황에 관한서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서류
-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 가능인력현황
-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의 고용 및 소득증대 및 토지에 관한 서류
- 농어촌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서류

[별지 1호서식]

## 농공단지 예산 및 자금(국비)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농공 단지명	지정 승인일	실시 계획 승인일	부지조성					예산재배 정액 (당해년도)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액								비 고	
										전년도까지 배정액		(당해)년도							
			기배정액		금회요구 액		소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계																			



##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정산내역

가. 총괄

(단위 : 천원)

농공단지명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불용액)			
						합계				실집행액				이월액							
농공단지명	지정년월	면적(평)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보조	유자	보조	유자	합계	보조	유자	보조	유자	합계	보조	유자	보조	유자				
			합계	보조	유자	보조	유자	합계	보조	유자	보조	유자	합계	보조	유자	보조	유자	합계	보조	유자	

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서

(단위 : 천원)

단 지 명	불 용 액	불 용 사 유
		※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 1. 목 적

농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 및 판촉활동을 통한 판매확대와 기술경영지도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

### 2. 추진방향

- 특산단지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 제공
- 특산단지제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해외수출상담창구 역할
- 특산단지제품의 전시판매행사개최등 판촉 홍보
- 특산단지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단지간 공조활동 도모

###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수립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24	9	1	2	2	10
사업비	계	23,650	8,100	1,550	2,000	10,000
	국 고	11,825	4,050	775	1,000	5,000
	지방비	11,825	4,050	775	1,000	5,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판매장 설치하여 판로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

##### (2)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시·군 포함)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총사업비 10억원내외중 국고보조 지원액은 50%, 지방비부담 50%  
(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비에서 추가소요액 부담)

##### (4) 사업세부내용

-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판매장 설치
- 전시장 규모 : 250평 내외
- 운영방식
  - 시·도지사 또는 도 특산단지연합회에서 관리·운영
  - 관내 특산단지 생산업체가 입주판매 또는 직영판매도 가능  
(국내 또는 해외전시판매지역창구의 역할 수행)

####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개소,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예산안)	지 방 비
2	2,000	1,000	1,000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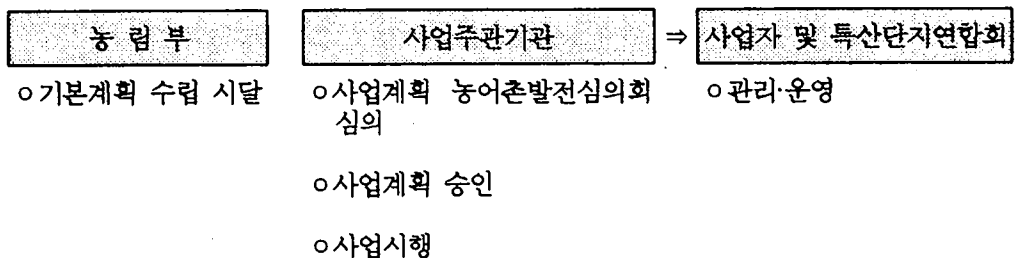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 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 9405)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시·군 : 산업과

다. 추진절차

- 농림부 : 기본계획 수립 시달
- 사업자
  - 시·도지사(시·군 포함) 사업계획서 수립
  -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시·군)

나. 보 고

○시·도지사는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추진실적을 다음해 1.31일까지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시·도지사는 12월말 현재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연도말 검정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31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군

나. 신청자격

○시·도·군

다. 신청절차

○지원을 받고자하는 시도(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시도(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

라. 구비서류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마.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될 경우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지역 특산단지 제품의 전시판매가 용이한 지역
- 특산단지제품의 시장정보제공등 홍보활동이 용이한 지역
- 특산단지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단기간 공조활동이 용이한 지역

(2)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시·도지사(시·군 포함)가 사업계획 수립하여 사업예정지 신청

(3)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승인 및 공사발주

- 시·도지사(시·군)가 사업계획 수립하여 사업 시행

(나) 시행계획 변경

- 시·도지사(시·군)는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하여 변경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4)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별도 시·도별로 예산내시

(나) 자금의 운용관리

- 특산판매장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년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5) 사업효과

- 특산단지 생산제품의 전시 및 판매확대로 특산단지 활성화에 기여
- 기술 및 경영지도와 정보교환 등을 통한 품질은 향상시키고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

[별지 제1호 서식]

## 농촌특산품판매장 추진실적

### 1. 사업추진실적

#### 가. 사업계획

○ 규 모 :

○ 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 나. 추진실적

○ 위 치 :

○ 규 모 :

○ 사업비 :

○ 추진상황

- 부지매입

- 공사추진

- 사업비집행등

○ 향후추진계획

#### 다. 홍보실적

### 2. 판매실적

(단위 : 천원)

업종별	판매량	판매액	사업비용(관리비)	순손익
계				
민속공예품				
농수산물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				
기타				



[별지 2호서식]

## 특산품 전시판매장 연도말 검정서

(단위 : 천원)

시도 (사군)	판매 장명	사업 자	총사업비			'97예산			'97검정			미집행액			미집행 사유
			계	국 고	지 방 비	계	국 고	지 방 비	계	국 고	지 방 비	계	국 고	지 방 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 1. 목 적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 2. 추진방향

- 지역여건과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정비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정비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
- 개발혜택이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200	-	3	4	16	177
사 업 비	계	800,000	7,727	18,491	47,782	726,000
	보 조					
	용 자	680,000	5,618	14,000	38,182	622,200
	지방비					
	자부담	120,000		2,109	4,491	9,6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에 따라 '95부터 시행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 지원단가 : 지구당 40억원 수준 용자(농지관리기금)
- 용자조건 : 연리 3.0%, 2년거치 2년균분상환
- 정비유형
  - 농림수산업적 이용 : 과수, 원예, 특작, 축산단지, 양어장 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 :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 다목적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문화·체육시설 등

####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백 만 원)					
		계	예산안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고	용자		
계	4지구	18,491	14,000	-	14,000	-	4,491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농촌정비과

####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전화 : 02-504-9404, 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산업경제국 농지개발과)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라. 사업추진절차

정비지구 지정고시	
○ 기본 방침 수립 :	농림부장관 ----- 법 제76조
○ 예정지조사 :	국가, 지자체, 농진공 ----- 법 제78조
○ 지구지정승인요청 :	도지사 ----- 법 제79조 제2항
○ 지구지정승인 :	농림부장관 ----- 법 제79조 제3항 -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 지구지정 및 고시 :	도지사 ----- 법 제79조 제2항



사업계획수립	
○ 정비 유형 :	농림수산업적이용, 농어촌휴양자원이용, 다목적이용 ----- 법 제77조
○ 사업계획수립 :	농진공 ----- 법 제81조 제1항
○ 사업계획 승인고시 :	승인권자 ----- 법 제82조 -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 및 분양	
○ 사업시행 :	농진공 ----- 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 - 필요시 시·군 또는 토지소유자와 공동시행)
○ 사업준공검사 :	승인권자 ----- 법 제82조
○ 토지 및 시설분양 :	농림어업인 및 관련단체, 실수요자에게 분양 ----- 법 제83조

## <사업계획수립>

###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한계농지의 기준>

- 농지개량조합구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
- 광업권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제곱미터이하로 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지나친 소규모 지정은 억제
    - 농림수산업적이용의 경우 농지의 최소정비규모는 3천제곱미터로 하고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 및 토지이용계획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한계농지 등 정비사업의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방지를 위하여 1개 시·군당 연면적을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함

#### <지구지정시 검토사항>

- 한계농지 해당여부
- 지역주민의 호응도(적극적 참여 및 개발의지)

-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변경 가능성 및 용지매수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지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 발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부문개발계획과의 연계성
- 주변경관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등은 제외하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 지구지정후 사업착수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역주민 개발의욕 저하, 지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구지정후 차년도까지 개발착수가 가능한 지구를 우선 지정

#### 나. 한계농지정비 지구지정 및 고시

##### (1) 도지사 직권에 의한 지정 및 고시

- 도지사는 한계농지등 중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 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다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 정비지구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정비지구 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 (2)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 (가)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신청자가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인 경우

-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 경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정비지구 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의견서를 첨부
-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으로부터 접수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신청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구지정 신청자에게 통보

(다) 토지소유자가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가 한계농지 등의 정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토지소유자가 7인 이상인 경우)를 구성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을 시장·군수에게 신청
- 한계농지정비사업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주요사업내용, 지구현황(위치도 포함), 정비하고자 하는 지구내의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사업비 부담에 관한 의견서
- 시장·군수는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한계농지정비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구지정요건에 적합하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류

○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 1/25,000)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예정지조사 보고서
- 정비사업의 내용 및 사업기간
- 사업비추정액 및 부담(조달)방안
- 정비지구 편입토지 조서
-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 또는 대상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 관련법상 제약요건 검토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단, 다목적이용중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첨부. 이 경우 예정지조사 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라. 지구지정에 필요한 조사 등의 위탁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구지정에 필요한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마.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이나 다목적이용으로 개발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규모 이상은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시행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원칙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정비사업 시행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성 확보 및 개발이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추진

### 나. 정비사업의 시행자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진공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비사업 참여허용

#### ※ 토지소유자의 참여방법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등 다목적이용, 농어촌휴양단지, 주말농원 등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선정한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가 한계농지정비사업에의 참여를 원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토록 함. 다만, 농림수산업적이용의 경우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의 방법으로 참여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사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정비사업의 종류, 대상정비지구의 범위,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사업비 부담방법,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방법,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등 보상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라.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필요한 때에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마.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

바.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사업비 내역서,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시행전후 면적조서, 사업중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사. 수요자의 모집 및 분양

- 사업의 홍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한계농지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된 토지의 분양, 임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토지분양, 임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요자 모집 : 사업시행자는 정비된 토지 등의 수요자를 사전 확보하고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승인을 득한후 수요자를 모집할 수 있음

- 분양·임대절차등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주택·기타시설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정비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65조 및 제73조를 준용
- 분양가격의 결정 : 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
- 분양시의 특례
  - 정비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함
  - 정비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농민이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1,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취득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아니함.

#### 아.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농지개발조합,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관리·운영·이관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조성시설은 시장·군수가 관리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에 의한 오염방지그라우팅, 폐쇄공공관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보 고

- 사업시행승인결과 보고 : 시행계획 승인시 보고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시행계획변경보고 : 시행계획변경 승인시 보고
- 준공검사결과보고 : 준공검사후 즉시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나. 신청자격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 토지소유자가 사업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 참여를 요청

다. 신청절차

- 예정지조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진공
- 지구지정 승인요청 : 시장·군수 → 도지사
- 지구지정 지정승인 : 도지사 → 농림부장관
- 지구지정 및 고시 : 도지사

라. 구비서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별지 1호서식)
- 위치도(축척 : 1/25,000)
- 예정지 조사보고서
- 정비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사업비추정액 및 조달방안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구지정에 필요한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이나 다목적 이용으로 개발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규모이상은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시행



##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_\_\_\_\_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내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내 편입될 때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복상에 관한특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199 . . . . .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①



##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_\_\_\_\_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별도 협약에 의거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귀 시.군(사)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로 투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199 . . . . .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①

## 한계농지정비사업 신청서

\_\_\_\_\_ 귀하

우리 토지소유자 일동은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시·군(귀사)의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참여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
  
- 지구현황(위 치 )  
\* 위치도 붙임과 같음
  
- 주요사업 계획
  
- 사업비 부담에 관한 의견
  
- 토지소유자 동의서 : 따로 붙임

신청인(대표자)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붙 임 : 1. 위 치 도 1부.  
2. 토지소유자 동의서 1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금융과입니다.

## 1. 목 적

- 정부가 영농준비기에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2. 추진방향

- 벼 농사 위주의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
- 과수, 채소, 잡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에 대한 지원

## 3. 근거법령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00호)

##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98	'99
총 지원규모		억 원 240,700	98,700	28,000	29,500	34,000	38,000
사업비 (예산규모)	계	22,140	5,340	3,860	3,310	2,860	2,520
	재특회계	22,140	5,340	3,860	3,310	2,860	2,52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자금 >

- 일반농업경영자(벼농사) 및 전문농업경영자(채소, 과수 등 특수작목)
- 농업법인경영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등)
- 재해대상 농가

###### < 농기업경영자금 >

-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대상자선정후 3년이상 영농종사후계자, 전업농규모이상의 농업인, 선도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지원조건

###### < 농업경영자금 >

- 연리 5%, 1년 이내 상환(일반농업경영자금은 12월말)

###### < 농기업경영자금 >

- 연리 5%, 시설자금 2~5년, 운전자금 1년 이내 상환(계속지원이 불가 피한 경우 1년간 연기조치 가능)

##### ○ 사업내용

######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및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경종농업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 자금용도
  - 일반농업경영자금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전문농업경영자금 : 보리 등 맥류, 과수, 채소, 잠업, 원예 등 특작 농가의 농업경영비

- 원예작물 : 특수조합 관내의 시설채소, 과수, 원예 등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수작물 재배농가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농가당 800만원 이내

## ② 농업회사법인

- 지원대상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자금용도 : 농업회사법인 운영비
- 지원금액 : 법인당 2천만원 이내
- 법인의 경영자금으로 용자받을 경우 출자자 개인의 경영자금은 용자 불가

## ③ 미곡종합처리장

- 지원대상 : 농림부계획에 의거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
- 자금용도 : 원료곡 구매비
- 지원금액 : 농림부의 『미곡종합처리장 자금지원계획』에 의함
  - 개별농가가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구매비로 용자받을 경우 다른 용도의 경영자금은 용자 불가

## ④ 재해대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지원 키로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 금액

## ⑤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자금용도 :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
- 지원금액 : 법인 또는 단체당 2천만원 이내
  - 지원자금은 농업경영 성격에 따라 일반농업경영자금 또는 전문농업경영자금중에서 조합장이 조정 지원하되, 법인 또는 단체명의로 용자받을 경우 출자자 또는 회원 개인경영자금은 지원 불가

⑥ 농기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대상자선정후 3년이상 영농종사후계자, 전업농규모이상의 농업인, 선도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단,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시설보수 및 대체자금, 사업규모확장을 위한 설비구입 자금, 시설현대화자금등
  - 운전자금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농업 관련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전자금
- ※ 지원내용중 제외되는 부문 : 농기계구입자금, 토지구입비, 기조성된 건물 및 축산업·수산업·임업분야
- 지원금액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시설자금은 70%, 운전자금은 100%이내
- ※ 소요금액에 따라 심사기관을 달리하고 실제융자업무는 농협시·군 지부에서 취급

< 금액별 심사기관 >

구 분		시·군지부	시·도지역본부	중앙본부
개별경영체	시설자금	1억원	3억원	3억원이상
	운전자금	0.5	1.5	1.5
법인경영체	시설자금	3	10	10
	운전자금	1	3	3

\* 대출심사역을 운용하고 있는 시·군지부(지점)은 50% 중액운용 나. '97사업비 지원계획

내 용 별	사 업 비					
	계	예산액(재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융자	보조		
계	억원 29,500	29,500	29,500	-	-	-
○ 일반농업경영	19,700	19,700	19,700	-	-	-
○ 전문농업경영	5,800	5,800	5,800	-	-	-
○ 농업경영체	700	700	700	-	-	-
○ 재 해 대 책	2,300	2,300	2,300	-	-	-
○ 농기업경영	1,000	1,000	1,000	-	-	-

\* 예산액은 총지원규모 기준임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업경영자금 : 농림부 농업금융과 (02 - 503 - 7218)
- 농기업경영자금 : 농림부 농촌인력과(02 - 503 - 7216)

다. 대상자 선정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에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농기업경영자금 : 실수요자가 농협시·군지부에 신청하여 시·군지부에 서 지원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농림부에서 연간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 농협중앙회에 시달
- 농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융자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역 조합까지 시달(농기업경영자금은 시·군지부까지)
- 지역조합에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재배정
- 지역농협(농기업경영자금은 시·군지부)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 배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에 의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지도·감독
- 정책사업 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

### 나. 보고사항(농협중앙회 → 농림부)

- 농업경영자금운용계획 세부지침 보고
  - ※ 사업종류별 세부운용 지침 수립보고
- 농업경영자금 배정결과 보고(분기별)

시도별	계			사업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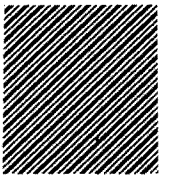
- 농업경영자금 용자실적 보고
  - ※ 사업별 지원현황(연간계획, 용자, 건수, 농가수, 호당대출액)
  - ※ 재원별 계획대 실적
  - ※ 주요사업별 월별 대출현황, 영농규모별 대출현황등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농림부 농업금융과(농업경영자금, 02 - 503 - 7218)  
농촌인력과(농기업경영자금, 02 - 503 - 7216)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02 - 397 - 5986)
- 농협지역본부 저축금융과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및 전문농협



## V. 생활 환경 개선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관리과입니다.

## 1. 목 적

- 우리농산물애용운동 전개등 풍토에 맞는 식생활 추진
- 적정수준의 영양섭취유도로 국민건강 증진

## 2. 추진방향

- 양곡낭비억제 및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
- 각종 매체(TV등)을 통한 대국민홍보추진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교육강화
- 민간단체를 통한 주부교육의 지속적 추진 등

##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 정부가 국민식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 또는 보조금을 교부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사업비	계	백만원 13,148	4,905	784	784	898	5,777
	보 조	8,993	2,988	540	540	648	4,277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4,155	1,917	244	244	250	1,500

주) 42조원 구조개선 및 15조원 농특세사업에서 제외된 금액임.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 경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식생활개선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사업추진비의 일부를 보조지원

##### ○ 지원대상자 :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

##### ○ 사업내용

- 민간단체를 통한 식생활개선교육
- 학교 교육을 통한 식생활개선교육
- 홍보사업 추진

나. '97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백만원 784	540	540	-	-	244
○ 민간단체를 통한 교육	27 회	28	28	28	-	-	-
○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	36개교	175	175	175	-	-	-
○ 홍보 사업	3 회	369	204	204	-	-	165
○ 교육홍보용 교재제작	42천부	23	23	23	-	-	-
○ 운 영 비		189	110	110	-	-	79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식량관리과 → 식생활개선 국민운동본부

나. 사업시행

- 식생활개선 보조사업계획에 의거 실시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계획에 의거 분기별 자금배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 연말정산 사후관리

나. 보고·기타

- 사업종결과 동시 결산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 립 부

나. 신청자격 : 식생활개선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식생활개선 국민운동본부

다. 신청절차

-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 <sup>요 구</sup> → 농림부 <sup>신 청</sup> → 재정경제원

라. 구비서류

- 예산설명서
- '96 예산결산서

108 -1	<b>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b> (일반정주권개발)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 1. 목적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

## 2. 추진방향

### 가. 기본방향

- 농촌의 면단위 중심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 배치

### 나. 장기사업목표

- 2004년까지 전국 1,236개 면중 오지(400)면, 도서(53), 무인(10)면 등을 제외한 773개 정주권개발대상면 1차지원 완료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내지 제38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면수)							
- 보조사업		773	112	48	58	60	495
- 용자사업		773	178	89	39	60	417
사업비	계	2,879,688	676,916	239,713	238,605	234,000	1,490,454
	국고(양여금)	1,569,691	376,852	113,816	124,112	126,000	828,911
	지방비	650,099	154,051	48,778	53,743	54,000	340,077
	용자	659,898	146,013	77,119	61,300	54,000	321,466

주1] 사업량은 완료면 기준

주2] 사업비는 42조원 구조개선사업 위주로 작성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면개발계획수립

##### (1) 목적

- 정주권개발 대상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 농어촌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로서의 역할
- 기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 (2) 연차별 계획수립

- 2001년까지 773개의 면개발계획 수립완료
  - 매년 시·군별 사업추진 진도를 참고하여 연간 계획수립 면수 결정

구 분	계	'95까지	'96	'97	'98	'99~2001
면수	773	479	57	50	50	137

- '97년도 개발계획수립 대상면 : 별도시달



(3) 계획수립주체 : 시장·군수

- 농어촌진흥공사등에 위탁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면당 계획수립비 : 43백만원(시·군의 지방양여금등 보조사업비에 계상)

(4) 대상면 선정

- 농림부장관의 면개발계획수립 방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면 선정

(5) 계획수립절차

- 면개발계획 수립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안) 작성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과 1단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1단계 추진계획이 중심마을에 대한 집중투자 여부등을 검토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 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람

(6) 개발계획 수립 소요기간 : 1년으로 함

- 시장·군수는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기 계약체결, 예산의 조치등을 취하여야 함

(7) 개발계획의 내용

- 정주생활권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개발방향
- 지역현황
- 농촌 정주체계 정비계획
- 각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단계별 투융자계획)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자원조사 대상항목 중 농촌생활환경정비분야

## (8) 개발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개발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아래의 경미한 사항변경과 인접지역과 연계된 사업계획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정
  - 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 (9)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투융자계획은 사업내용, 성격, 규모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작성하되 42조원 농발계획등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게 수립
  - 정주권개발 대상사업 : 지원가능한 사업비 투융자규모(50억원 수준)를 기준으로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2단계로 구분
  - 타부문사업 : 단위사업별로 투융자계획 수립

○ 산악지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 소득원 개발등(예 :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 등)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단위사업과 동일한 지원기준 적용

○ 정주권개발대상면이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면은 계획수립 대상 후순위로 조정

○ 개발계획서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수립 참여자 명기

○ 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 (10) 개발계획 수립의 효과

- 농어촌정비법 제3조에 의한 자원조사 기초자료 활용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권개발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됨.

나. 일반정주권개발사업

(1) 사업내용설명

(가)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 농촌지역 도로정비 :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등(법정도로는 제외)
- 농촌산업개발 : 공동영농어시설(집하장, 공동작업장, 가공·저장시설 등) 농로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재해방지시설 : 하천정비, 마을안전시설 등
- 주택정비 : 신축, 개량 등

(나)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면당 39 ~ 45억원 수준(보조 30억원, 융자 9 ~ 15억원)  
지원규모 초과사업은 별도 재원으로 자체적 추진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지원완료 위주로 지원
  - 보조사업 : 지방양여금을 시·군의 면수비율에 의해 배분
  - 융자사업 : 면당 9~15억원 범위내에서 주택신축 및 개량자금등 지원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천만원, 년리 5.5%,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5백만원, 년리 3%, 3년거치 10년상환

(다) '97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면수)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양여금)	읍자 (농특회계)		
일반정주권개발		238,605	185,412	124,112	61,300	53,193	-
- 보조사업	58	177,303	124,112	124,112	-	53,193	-
- 융자사업	39	61,300	61,300	-	61,300	-	-

※ 사업량은 지원완료면 기준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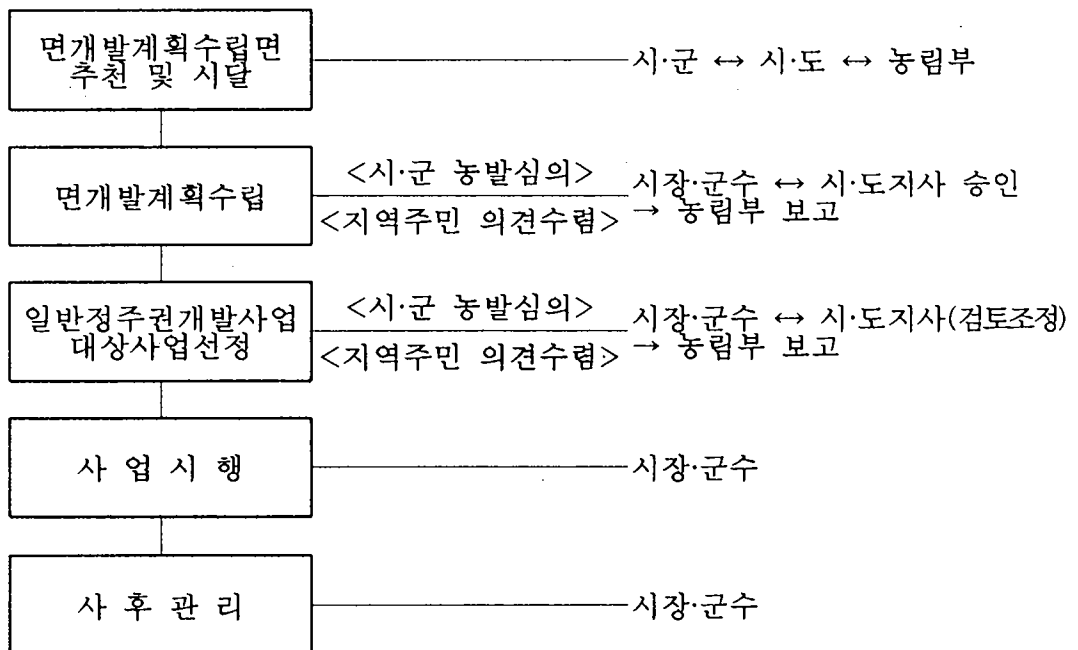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또는 농정과(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내무국 사회진흥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 가. 대상사업선정

#### (1) 사업대상면 선정

-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시행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완료위주로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

#### (2) 대상지역 선정

- 면개발계획서에 의거 면당 1 ~ 3개의 중심마을을 선정하고 면개발계획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면지역내의 중심마을은 교통·산업·교육·문화의 중심이 되고, 발전잠재력이 큰 마을을 선정
- '95, '96년도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중 개편당시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이거나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가능(보조사업비는 당해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범위내에서 지원)

#### (3) 대상사업 선정

- 개발계획서상의 1단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사업선정시 제외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의거 1단계 추진계획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 선정된 중심마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1단계 추진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 여부, 중심마을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하고 그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나.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상의 1단계 추진계획에 의거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년도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용지매수, 공사준비 등을 실시하고 2차년도에 완공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

#### (1) 보조사업

- 사업시행은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사업자가 시행시 현지 여건상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공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등을 보관하여야 함.

#### (2) 읍자사업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및 주민(사업자)
- 사업비 지원방향
  - 농촌주택정비, 농촌용수시설, 주민편익시설등 지원
  -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보조사업면과 연계 지원)

○용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용자희망자를 해당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등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 여부, 타부문용자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용자대상자 선정기관(시장·군수등)은 대상자 선정시 용자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제공능력등 용자가능성에 대하여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용자방법

- 사업시행자가 농민 또는 민간업체인 경우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을 사업시행자의 여신자금관리계좌에 입금후 사업실적확인(행정기관 또는 사업선정권자)결과에 따라 용자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등인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입금없이 용자금 일시지급 가능

○용자종결기한 : 매 회계년도말(12.31)

-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용자금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별표 1)

나. 사업의 위탁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표 2)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환지·교환·분합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름

#### 라.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참조

### <사업비 지원>

#### 가. 예산의 지원

- 예산의 지원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시·군의 면수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며, 시장·군수는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면 위주로 집중지원하며, 융자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지원

#### 나.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매년도 예산의 년도말 검정 결과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6호 서식)
  - 농림부가 년도말정산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경우 그 지침에 의함
- 매년도 사업실적을 부문별로 작성제출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4호서식)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대상사업중 공동이용시설 및 수익시설은 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동일지원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융자 또는 자부담시킬 수 있으며, 완공후 수익자에게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 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필요한 관리비를 사업관리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매년도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일반정주권개발 대상사업 추진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나. 보고

##### (1) 면개발계획 수립

- 면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추천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1호 서식)

##### (2) 정주권개발사업 시행

- 정주권개발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  
(별지 제2호 서식)
- 정주권개발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집행상황 보고 : 매분기익월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 일반정주권개발대상사업 선정결과 보고 : 매년 3.10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일반정주권개발사업 부문별 추진현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완료면에 대한 전체 추진실적 : 익년도 1.31까지  
(별지 제7호 서식)

[별표 1]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1. 용자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권자
○ 문화마을 조성사업	○ 정주권개발대상지역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진공) ○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지구에 한함	시·도지사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내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진공)	시·도지사
○ 주택신축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신축(개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주택개량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개량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농촌용수 시설 (상·하수도 포함)	○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	시·도지사

2. 용자지원조건

사업명	금리	용자기간(년)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 문화마을 용지매수	3%	4	2	2	○ 사업지구당 100억원 이내	○ 소요사업비의 100% 이내
○ 임대주택	5	20	5	15	○ 지구당 5억원 이내	○ 전체사업비의 50%이내
○ 주택신축 (문화마을)	5.5 (5)	20	5	15	○ 호당 2천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70% 이내
○ 주택개량	3	10	3	7	○ 호당 5백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주민편익 시설	5	5	2	3	○ 사업자당 3천만원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 농촌용수 시설 (상·하수도 포함)	3	20	5	15	○ 지구당 3억원 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 3. 자금의 용도 및 읍자대상자

사 업 명	자 금 의 용 도	읍자대상자
○ 문화마을조성사업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의 용지매입등	시장·군수 (농진공)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	시장·군수 (농진공)
○ 주택신축	○ 주택신축(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소요되는 자금	주 민
○ 주택개량	○ 부엌·목욕탕·화장실·담장등 기존주택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자금	주 민
○ 주민편익시설	○ 영농어지원시설, 시장정비 및 조성등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추진	사업자
○ 농촌용수 (상·하수도 포함)	○ 농촌지역의 용수(생활용수, 상·하수도등)사업을 시행하는데 부족한 지방비에 지원	시장·군수

[별표 2]

## 사 업 의 위 탁

○ 목 적 : 정주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어촌 진흥공사, 농협등 농림수산 관련단체를 참여토록 함

○ 대상사업 예시

- 도로, 용수등 사회기간 시설 : 농진공, 농조연 등
- 유통·가공시설, 곡물건조보관시설, 농기계수리보관시설, 농산물집하장 : 농협, 수협, 축협등
- 공동영농어시설 : 농협, 수협, 축협 등
- 다목적 복지회관(도서실, 경로당, 체육시설, 탁아소, 목욕탕등) : 농협, 수협 등

○ 사업추진방법

구 분	시장·군수의 위탁사업	농림수산 관련단체의 자체사업
사업방법	○ 시장·군수로 부터 위탁받아시행	○ 정주권개발계획에 따라 농림수산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연관 시행
자금지원	○ 전액보조	○ 정주권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설비중 50%보조(시설 부지는 자체확보)
관리운영	○ 시장·군수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관리운영 위탁가능)	○ 관련단체가 시설물의 소유·관리 운영



[별지 제2호 서식]

## '97정주권개발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        시도 )

(단위 : 백만원)

시군	대상 면수	시행면 (지구)	합 계		문화마을조성			일반정주권개발				비고	
			보조	용자	보조	용 자			보조	용 자			
						계	용지 매입	주택 신축		계	주택 신축		주택 개량
계							( )			( )	( )	( )	

- ※ 1. ( )는 주택호수등 물량
- 2. 보조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지방비

[별지 제3호 서식]

**'97정주권개발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집행상황(○/4분기)**

(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대상 면수	시행면 (지구)	합 계		문화마을조성			일반정주권개발				비 고	
			보조	용자	보조	용 자		보조	용 자				
						계	용지 매입		주택 신축	계	주택 신축		주택개 량
계							( )			( )	( )	( )	

- ※ 1. ( )는 주택호수등 물량
- 2. 보조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지방비

[별지 제4호 서식]

일반정주권개발 대상사업 선정결과(추진실적)

( 시도, 시·군, 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명	단 위	'97 계 획 (실 적)					비 고
			사업량	사 업 비			용 자	
				계	보 조			
				소계	양여금	지방비		
마을기반정비	계							
	소계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Km						
	상하수도 기타	개소 Km 식						
농촌도로정비	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중도포장 인도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Km 식						
농촌산업개발	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생산기반정비	계							
	농로 정리 생산지 관망 영농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문화복지시설	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향토문화휴게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농촌용수 및 배수시설	계							
	저수지 관정 지역배수 기타	개소 개소 Km 식						
환경보전시설	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문물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재해방지시설	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Km 개소 개소						
농촌주택정비	계							
	주택신축 주택개량	동 동						
기타	계							
	지역개발 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 면 식						

※ 1. 면, 시·군총괄, 시도총괄표 작성 2. 선정결과와 추진실적을 같은 표로 이용(선정결과/사업실적)



[별지 제5호 서식]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추진상황

( 시도, 시군, 면 )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명	단위	'97 계 획			추진실적( 월말 현재)			진도 (B/A) (%)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보 조		용 자	계	
계	소계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Km							
	상수도 하수도 기타	개소 Km 식							
농촌도로정비	마을간도로	Km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기타	개소 Km 개소 개소 개소 Km 식							
농촌산업개발	농산물집하장	개소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생산기반정비	농로	Km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기타	ha 개소 개소 개소 식							
문화복지시설	복지회관	개소							
	마을회관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향토문화시설 휴게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농촌용수 및 배수시설	저수지	개소							
	관정 지역배수 기타	개소 개소 Km 식							
환경보전시설	오수처리시설	개소							
	쓰레기처리시설 문물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재해방지시설	하천정비	Km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개소 개소							
농촌주택정비	주택신축	동							
	주택개량	동							
기타	지역개발	개소							
	면개발 기타	개소 면 식							

\* 면, 시·군총괄, 시·도총괄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지원 완료면의 일반정주권개발개발사업 추진실적

( 시도 시·군 면 )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명	단위	지 원 사 업 비					비 고	
			사업량	계	보 조				용 자
					소계	양여금	지방비		
	계								
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공동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생산기반정비	소계								
	농로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시 영농시설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게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농촌용수 및 배수시설	소계								
	저수지 관정 지역배수 기타	개소 개소 Km 개소 식							
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문물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Km 개소 개소 식							
농촌주택정비	소계								
	주택신축 주택개량	동 동							
기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 면 개 식							

108 -2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문화마을조성)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 1. 목 적

농촌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기존마을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농촌주택단지를 조성, 현대적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연계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농어촌마을 조성

##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발전가능성이 큰 정주생활권 면단위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주택단지, 상·하수도, 마을내 도로, 전기·통신시설 등 생활환경정비와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 개발과 병행·연계 추진함

나. 장기 사업목표 : 2004년까지 전국 정주생활권개발대상면에 773개의 문화마을을 조성함(면당 1개소)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29조 내지 제42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지구수)	771	49	21	24	34	643	
사업비	계	3,861,415	160,951	68,460	103,151	235,500	3,293,353
	국고(양여금)	1,081,700	44,479	30,316	40,174	51,540	915,191
	지방비	462,915	18,452	12,993	17,217	30,660	383,593
	융자	2,316,800	98,020	25,151	45,760	153,300	1,994,569

주1] 사업량은 착수지구 기준

주2] 사업비는 42조원 구조개선사업 위주로 작성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현대적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 재정비
- 기반시설(택지조성, 단지진입로, 마을안길정비, 생활용수 및 배수, 전기·통신 시설등)과 현대식 주택의 신축 및 개량
- 복지회관,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작업장 등 주민편익시설
- 마을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보전시설
- 농수산물집하장, 농수산물가공시설, 농기계수리소, 공동건조장, 보관시설등 산업시설 유치

#### 나.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지구당 3년 내외에 50억 수준(보조 20, 용자 30) 지원
  - 보조 : 마을기반시설 20억원(지방양여금70%, 지방비30%)
  - 용자 : 용지매수 및 보상(연리 3%, 2년거치 2년상환)  
주택신축자금(호당 2천만원, 연리 5%, 5년거치 15년상환)

#### 다. '97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양여금)	용자 (농특 회계)		
계		103,151	85,934	40,174	45,760	17,217	-
○ 단지조성	64	88,591	71,374	40,174	31,200	17,217	-
○ 주택건축	36	14,560	14,560	-	14,56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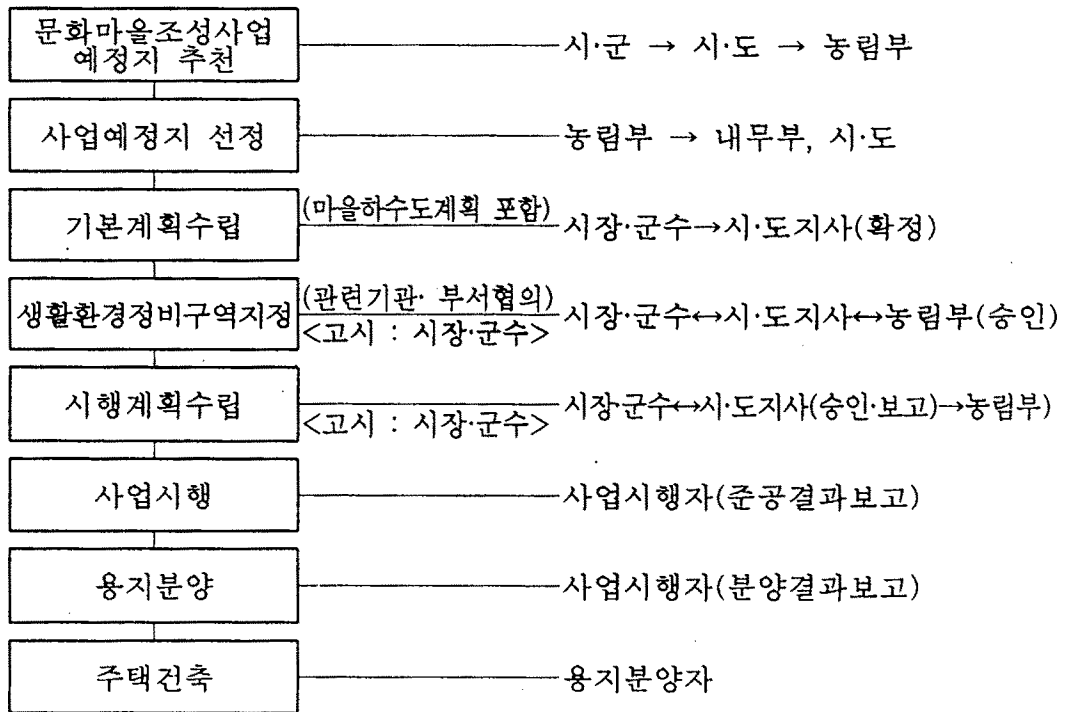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또는 농정과(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내무국 사회진흥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문화마을조성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조사, 실시설계,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어촌진흥공사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시행시에는 가능한한 문화마을 및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연계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등을 일괄하여 위탁하며, 이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수탁시행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사업시행자는 단지조성과 병행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을 지정하되 다음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추천
  - 기존마을의 정비와 분산된 농어촌마을의 집단화로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필요한 지역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공단지 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농촌 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교통·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큰 마을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의지가 있는 마을

-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감정가격에 의하여 용지매수 및 보상이 가능한 지역
  - 타부문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가등 사업의 추진 효율성이 높은 지역
  -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으로서 면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을 선정
- 쌀자급기반을 구축하고 우량농지보전 및 논면적 잠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논이 편입되는 지역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예정지선정
- 농업진흥지역의 논은 대상지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외의 논은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
    - 경지정리사업등 생산기반정비가 완료된 논은 대상지에서 제외(도로, 상·하수도등 기간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
    - 지목은 논이나 생산조건이 열악한 저습지논이나 한계농지는 편입 허용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취락지구)내의 논은 편입 허용
    - 도시계획구역내의 생산녹지로서 기반정비가 안된 논은 편입 허용

## (2) 선정절차(농어촌정비법 제32조)

-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마을조성사업 조사대상 예정지를 선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등 전문기관의 현지답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1개면에 1개지구. 단, 문화마을조성사업을 개발중이거나 기 개발된 면은 제외)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신규착수 예정지중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한 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추천
- 시·도지사가 추천한 지구에 대하여 필요시 농림부장관이 현지확인을 거쳐사업예정지구 선정 통보

## 나. 계획수립

### (1) 기본계획

- 시장·군수는 다음년도 사업예정지구가 선정되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계상된 지방양여금중 일부를 기본계획수립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설정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개요,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마을하수도시설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회관, 농기계보관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용지만을 공급할 경우 건축 공사비에 대한 재원 및 조달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로 확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농어촌관련 연구기관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에게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 기본계획수립자는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문화마을 단지조성, 마을하수도시설, 인근(인접) 기존마을 정비계획, 주택건축 등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도로등)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무총리훈령 제299호에 의한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필요시)하여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하여 그 의견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 농림부소관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및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사업등)과 타부처소관 연관사업(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은 “농·산·어촌마을 현대화사업통합지침(정비51370-216, '96. 6. 7)”에 의하여 사업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계획 및 지원계획을 결정하며,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하고, 기본계획서와 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승인 요청을 하여야함.(별지 제1호 서식)
-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생활환경정비구역을 지정 승인함.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얻은 때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고시토록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 (2) 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가 직접 실시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농어촌정비법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
  -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농촌마을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택지조성 계획 및 주택등 건축계획
  - 편익·복지시설, 환경정비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 농촌의 부존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사항
  - 농촌의 마을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산업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나.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 예산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을 승인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다.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함(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5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시·도지사는 변경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100범위안에서의 증감
  - 물량변경으로 인한 5% 이내의 공사비 증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자는 조사대상지구가 선정되면 해당주민들에게 감정가에 따라 용지매수 및 보상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별표 1)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제반규정에 따름
- 농림부장관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조성된 공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93조) 단,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 징구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 마. 용지분양 및 주택등의 건축계획

- 사업시행자는 단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주택등의 건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주택등의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분준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택등의 건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등의 건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름. 단,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로서 공급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
- 사업시행자는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건축시 단지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지도를 하며, 사업시행자는 택지 분양자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체결일(준공전분양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1년 이내에, 공동주택의 경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 바.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공사감리는 시장·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등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7조)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할을 기함

## 사.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등 요율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에 의함

## 아. 공사준공 및 유지관리

-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비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준공확인후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분양대상이 아닌 토지 등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인계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준공후 필요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시행자에게 맡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위탁시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사업비 지원>

### 가. 예산 지원

-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2~3년간 지원
- 읍자사업은 용지매수를 위한 읍자금은 사업착수 1차년도에 지원하고, 주택건축자금의 읍자금은 용지분양하는 년도부터 지원함

### 나. 자금의 운용관리

-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확보된 재원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필요한 용도에 우선지원할 수 있음
-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 : (별표 2)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투자된 융자금 및 민자불 택지등 분양금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 회수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용지분양 및 주택건축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실비로 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획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고, 주택등의 건설을 직접시행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분양대금을 수납하여 공사추진상황에 따라 주택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주택신축자금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충당할 수 있음.
- 전체 소요사업비중 양여금 보정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면)의 일반 정주권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구별 양여금 보정지원액이 소요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당해지구의 공동이용시설과 일반정주권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 농림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사업 등)과 연계 지원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이 당해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에 상호연계하여 종합지원되도록 추진
- 융자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용지분양자 등이 직접 건축시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소요액을 보고하고,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상황(토지감정등)을 검토하여 용지매입등 융자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소요액 및 소요시기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융자지원시 유의사항
  - 주택자금의 융자금 지급은 택지분양자가 택지를 분양받은 후 1년이내에 착공된 주택에 한함

- 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여부, 타부문융자 중복지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택자금 융자대상 : 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포함), 공동주택
- 시장·군수가 융자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에는 당해 시·군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위한 개인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분양확인서 및 건축공사 착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융자를 신청할 경우 융자취급기관은 융자신청자에게 후취담보로 여신자금관리계좌에 입금후 건축공사 실적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융자금 취급기관은 융자금의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융자지원조건 : 정주권개발 융자사업의(별표1)참조

####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매년도 예산의 년도말 검정 결과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5호 서식)
- 농림부가 년도말정산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경우 그 지침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용지등의 분양

-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조성 및 설치한 택지, 주택과 시설물의 분양은 농림부가 정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등의 분양업무처리규정"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택지나 주택등의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분양을 시행하며(수탁시행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수와 협의),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분양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분양대상자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주택자금등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

- 조성용지 및 주택의 분양을 위해 최초 분양공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용지 등의 소유권은 용지매수보상을 집행한 사업시행자(수탁시행자 포함)에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차입한 용자금을 기한내에 상환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별도의 특별회계로,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의 활용은 다음 순위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당해지구에 필요한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
  - 시설물 인수인계전까지의 당해지구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와 인접한 기존마을의 정비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 분양을 시행한 지구중 공동주택용지등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된 용지가 있는 경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단독주택용지등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는 분양수익금 또는 기타(지방비등)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나. 보 고

- 문화마을조성사업(단지조성부문)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 : 계획수립시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4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사업 분양계획 및 결과보고 : 수시

#### 다. 사업추진일정

-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지구 추천(시·도 → 농림부) : 전년 3.15까지
- 사업예정지구 선정시달(농림부 → 시·도) : 전년 5월 말까지
- 기본계획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요청(시·도→농림부) : 전년 11월 말까지
-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승인(농림부 → 시·도) : 당해년도 1.20까지
- 시행계획 수립 및 용지매수 보상 : 당해년도 7월 말까지



라. 참고사항

- 시장·군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기반사업이 종합적으로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94, '95년도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중, 개편당시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당해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중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함(주택신축등 읍자사업비는 농특회계 예산에서 계속지원)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정주권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계규정에 의함.

[별표 1]

## 토지 및 지장물 매각동의서

\_\_\_\_\_군수(시장)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정주생활권개발 문화마을조성(마을하수처리시설 포함)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 일체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보상 전이라도 우선공사 또는 사용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첨언함)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예 정 면 적	비 고
시 군	읍면동	리					

1 9 9 . . . . .

승락자 주소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별표 2]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

(단위 : %)

구 분		재원별 비율		비 고
		보 조 (지방양여금)	용 자 (농특회계)	
문화마을 조성사업	○ 용지확보	-	100	○ 발생이자등 포함
	○ 공 사 비	100	-	○ 자재대, 지장전주이설비, 토취장복구비등 포함
	○ 잡 지 출	100	-	○ 이전등기비, 토지감정료 분양공고비등 포함
	○ 관 리 비	100	-	○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분양주택건축관리비, 사업관리비, 국토이용계획, 획변경협의, 시설물관리비, 환경성검토비 포함
마을하수처리시설	○ 용지확보및 제공사비	100	-	
기존마을정비	○ 기반시설사업	100	-	○ 정주권개발비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 용지매수보상	100	-	

[별지 제1호서식]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서									
사업명	○○ ○○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대상 의 요 개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면 적	m <sup>2</sup> (      평)							
	토지이용 현황(m <sup>2</sup> )	지목별 면 적							
		비율(%)							
	용도지역 현황(m <sup>2</sup> )	용도별	계	도시지역	준도시 지 역	농림지역	준농림 지 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 적									
용도지역 변경내용									
정비내용									
사업기간									
<p>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199 . . . . .</p> <p style="margin-top: 10px;">신청자 :      도지사(인)</p> <p style="margin-top: 10px;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농 립 부 장 관 귀 하</p>									
<p>&lt;구비서류 : 각 3부&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지사 의견서(관련부서 의견첨부)</li> <li>2.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lt;각 4부&gt;</li> <li>3. 토지이용계획</li> <li>4.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li> <li>5. 기본계획서(환경성검토서 : 필요시)</li> <li>6. 사업비확보에 관한사항</li> <li>7.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별지 제2호 서식]

**문화마을조성사업 사업비 수지예산서**

-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 : . . . . .
- 시행 계획 승인 : . . . . .
- 규모 : m<sup>2</sup>(단독주택: 필지, 공동주택: 필지< 호>, 근린시설: 필지)

(수입)

(단위: 천원)

구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 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	( )		
○ 보조							
- 국고							
- 지방양여							
- 지방							
○ 용자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출)

(단위: 천원)

구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 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	( )		
○ 공사비							
- 부지조성							
- 도로							
- 상수도							
- 하수도							
- 조경							
- 전기통신							
- 기타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이차							
○ 사업관리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일반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별지 제3-1호서식]

## 문화마을조성사업 공정계획(지구별)

시공업자 : (인)

작성 자 : (인)

지구명 : 지구

사업시행년월일 :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과 목	단 위	승인 액		(전년) 까지		(금년) 계획		(금년) 이후		진도 (%)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당 년 계	1/4				2/4				3/4				4/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	%	%	%	%	%	%	%	%	%	%	%	%	%	%												
합계																																							
공사비																																							
-부지 조성																																							
-도로																																							
-상수도																																							
-하수도																																							
-조경																																							
-전기																																							
-통신																																							
-기타																																							
자재대																																							
용자매수																																							
-용지																																							
-매수																																							
-보상																																							
-이자																																							
사업관																																							
리비등																																							
-측량																																							
-설계																																							
-공사																																							
-감독																																							
-사업																																							
-관리																																							
-비출																																							
-잡지																																							
-기타																																							
기타																																							

※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지정년도	조성면적 (㎡)	주택호수 (호)	총 계획 (A)			'96 까 지 (B)			'97 계 획						누계진도 (B+D)/A (%)	비고
						계	보조	용자	계	보조	용자	계 획(C)			( )월말까지 실적(D)				
단지조성	주택건축	계	보조	용자	계							보조	용자	계	보조	용자			
시	면	리																	
계																			

- ※ 1.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2. 비고란에는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분양계획등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사업 1997년도 예산 년도말 정산

(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면 (지구명)	'97예산(A)			'97년도말 정산(B)			증 감(A-B)			증감 사유	
		계	보조		계	보조		계	보조			
			양여 금	지방 비		융자	양여 금		지방 비	융자		양여 금
계												

108 -3	<b>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b> (농촌마을하수도설치)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 1. 목 적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배출 초기단계에서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 및 농경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청결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쾌적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함

## 2. 추진방향

### 가. 기본방향

- 전국 면단위 이하의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할 하거나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집한 하수의 처리시설 설치
  - 문화마을조성사업등 생활기반시설이 정비된 마을 우선 지원
  - 수질오염이 극심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필요한 지역

### 나. 장기사업목표

- 2004년까지 전국 정주생활권개발대상 면단위지역에 773개소 설치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1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개소)	773	14	16	20	24	699	
사업비	계	310,800	5,600	6,400	8,000	9,600	281,200
	국 고	310,800	5,600	6,400	8,000	9,600	281,200

주1] 사업비는 42조원 구조개선사업 위주로 작성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1) 사업내용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와 기존마을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
  - 하수도를 통해 수집한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 (2) 지원조건

- 사업비 지원 : 지구당 4억원 수준(국고 100%)

####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구 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마을하수도시설	20	8,000	8,000	8,000	0	0	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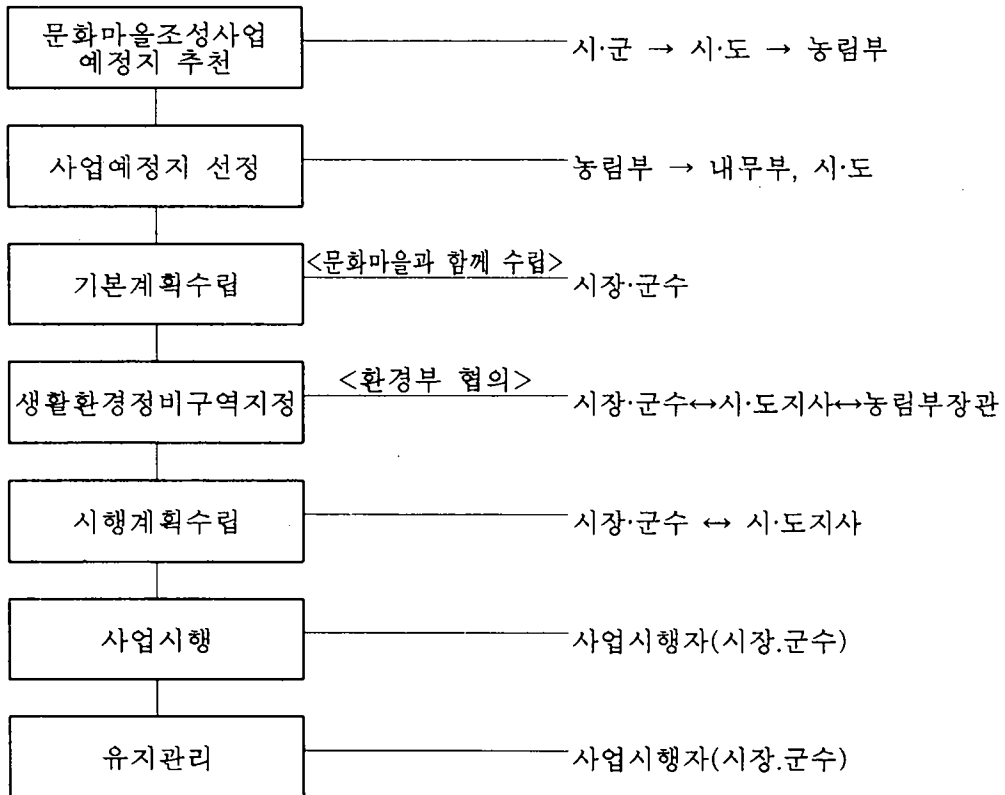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또는 농정과(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내무국 사회진흥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등에 위탁하여 시행(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2항)할 수 있음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로 기선정된 지구와 하수체계상 병행처리가 가능한 인근마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은 가급적 마을규모가 50호 수준이상인 지역으로써
  - 기존마을의 하수체계,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환경개선 효과가 큰 마을
  - 환경오염이 심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마을

### 나. 기본계획

- 계획수립(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은 마을하수도업무편람(환경부 1996)을 참고하여 수립하며, 하수도법에 맞도록 계획수립
- 마을하수도시설의 처리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식으로 계획

#### < 마을하수도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 >

(단위: mg/ℓ)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부유물질량 (SS)	비 고
집중처리시설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현장처리시설	30이하	40이하	30이하	

※ 총질소,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의 지역에 적용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의 마을하수도시설의 기본계획은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함. 단,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할 수 있음

-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하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서에 관한 사항
  - 슬러지처리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기존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을 수립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붙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다. 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현지여건, 계획의 타당성, 재원마련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의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할 수 있음

#### <사업시행>

- 가. 용지매수 및 보상 :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준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매수한 토지는 시장·군수명의로 등기함.

## 나.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법 조항 동일)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 물량변경으로 인한 5% 이내의 공사비 증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 사업계획의 내용중 처리공법의 변경이나 처리용량의 변경(10%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설계감리등 요율

-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오·폐수처리시설)의 조사설계, 공사감리, 관리비등의 요율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 에 의함

## 라.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입주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홍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 마. 사업의 준공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비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준공확인 후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 지원>

#### 가. 예산의 지원

- 사업비의 예산은 지구당 4억원(농특회계)을 보조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별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당해년 예산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재원(지방비 등)확보 추진

#### 나.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매년도 예산의 년도말 검정 결과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4호 서식)
  - 농림부가 년도말정산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경우 그 지침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공사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위탁사업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준공시부터 인수인계시까지의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 조례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의 유지 및 처리수질의 관리를 위하여 년 4회 이상 지속적으로 처리수의 수질을 측정·관리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하여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함

#### 나. 보고

-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 : 계획수립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추진현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설치 사업비 수지예산서**

- 기본계획승인 : 199 . . . .
  - 시행계획승인 : 199 . . . .
  - 준공 예정일 : 199 . . . .
  - 처리 용 량 : m<sup>3</sup>/일(처리계획호수 : 호, 처리계획인구 : 명)
-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	( )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	( )		
○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사업관리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일반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별지 제2호 서식]

##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정계획(총괄)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진도 (%)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1/4					2/4					3/4				4/4								
						당년	누계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별지 제2-1호 서식]

##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정계획

시공업자 : (인)  
 작성자 : (인)  
 착공년월일 : \_\_\_\_\_

지구명 : \_\_\_\_\_ 지구, 사업시행년월일 : \_\_\_\_\_, (단위 : 백만원)

과 목	승인 단 액		(전 년) 까지		(금 년) 계획		(금년) 이 후		진도 (%)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당 년	1/4			2/4			3/4			4/4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b>합 계</b>																										
<b>공사비</b>																										
-토목공사 -오수관로 -오수처리 조 -조경공사 -부대공사 -기타																										
-기계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b>자재대</b>																										
<b>용지매수</b>																										
-용지매수 -보상																										
<b>사업관리 비등</b>																										
-측량설 계비 -공사감 독비 -사업관 리비 -잡지출 -기타																										
<b>예비비</b>																										
<b>기 타</b>																										

※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    시·도 )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처리계획		주요시설		총계획(A)		'96까지(B)		'97 계 획						누계 진도 (B+D)/ A (%)	비 고		
										계획(C)			( )월말까지 실적(D)					진도 (D/C) (%)	
시 군 면 리	처리 용량 (m <sup>3</sup> / 일)	처리 호수 (호)	처리 인구 (명)	처리 장 (m <sup>3</sup> )	하수 관로 (m)	계	국 고	양 여 금	지 방 비	계	국 고	양 여 금	지 방 비	계	국 고	양 여 금	지 방 비		
																		계	

- ※ 1.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2. 비고란에는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착공시기, 완료시기, 미착공시 추진상황 (설계중, 발주준비중, 협의중 등)등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997년도 예산 년도말 정산

(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면 (지구명)	'97예산(A)				'97년도말 정산(B)				증 감(A-B)				증감 사유
		계	국고	양여 금	지방 비	계	국고	양여 금	지방 비	계	국고	양여 금	지방 비	
계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 1. 목 적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계획에서 현실적으로 제외된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 2. 추진방향

-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암반지하수를 개발, 음용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와 농업·축산용수 등 다목적용수 공급
-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 시설채소재배 수요 등을 사전예측하여 필요수량 확보
-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
- 2004년까지 5,000개소의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3.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개소)		5,000	1,051	100	313	470	3,066
사업비	계	850,000	93,000	80,000	80,000	80,000	525,000
	국고	425,000	46,500	40,000	40,000	40,000	262,500
	지방교부금	425,000	46,500	40,000	40,000	40,000	262,5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사업내용

○ 사업추진배경 :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시행

##### ○ 사업내용

- 지하수기초조사 : 지질조사,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등

- 수 원 공 개 발 :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검사, 수중모타펌프, 양수장육, 전기시설, 오염방지그라우팅, 폐공처리 등

※지구당 시추조사는 필요심도까지 1공을 시행한 후, 실패시는 추가로 1공을 시추조사할 수 있음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로 적정수량 확보심도까지 착공하고, 우물자재 구경은 200mm, 1일채수량은 공당 150톤 이상으로 하며, 산간, 해안,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도지사 책임하에 공당 1일 채수량 100톤 이상으로 조정 가능

- 이용시설설치 : 송·배수관, 배수지(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등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용가 부담

#####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이용마을 및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 지원단가 : 1지구당 170백만원(수원공개발(지하수기초조사 포함) 80, 이용시설설치 90)

○ 지원조건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 50%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안(백만원)			지 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 고	용 자		
계		80,000	40,000	40,000	-	40,000	-
수원 공개 발 이용시설설치	313	53,090	26,545	26,545	-	26,545	-
이용시설설치	299	26,910	13,455	13,455	-	13,455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전화 : 02-504-9404, 9405)

○ 시·도 : 기반조성과(농지개량과, 지역계획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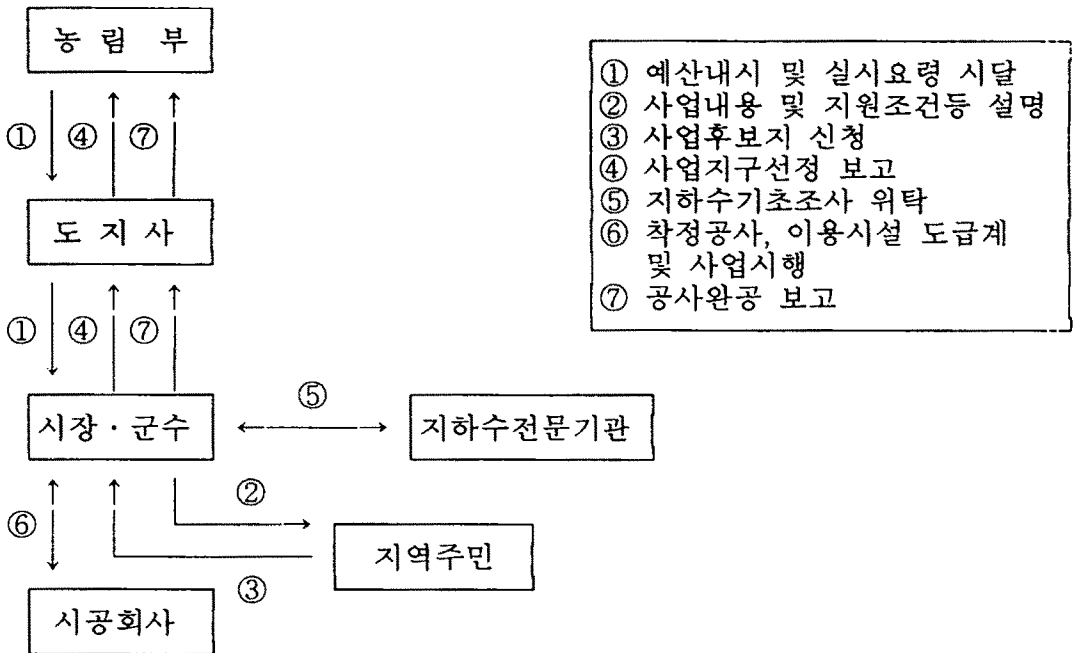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절차

(1) 선정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기 관 명	추진내용
농림부	○ 기본지침 작성
시·도지사	○ 대상지 검토확정
시장·군수	○ 사업홍보(사업내용, 지원조건 등), 대상지선정
지역주민	○ 사업후보지 신청

(2) 사업시행 체계도



마.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전국 면단위이하 농촌지역 중 우물 및 하천수 이용 마을, 간이상수도틀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로서, 이용 가구수가 많은 마을(50호이상의 마을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마을
-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개발후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2) 사업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 설치비용 등 자부담능력, 주민호응도, 사후관리능력, 사업의 효율성, 개발시급성 등을 감안 선정

○지역주민이 자발적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사후관리 등에 적극적인 지원여부 등을 고려(정부에서 강요하는 사업이 아님을 주지시킬 것)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지 선정시 제외

- 상수도계획 수립예정이거나 수립된 지역
- 자연수이용 마을이더라도 수질오염이 안된 수량이 풍부한 지역
- 인구감소로 앞으로 존속할 수 없는 지역
- 수물예정지 등 항구적 주거지로 부적합한 지역

※정기적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지적된 시·군은 시·도지사의 차년도 신규사업대상지 검토 확정시 제외 원칙

## 바. 사업시행

###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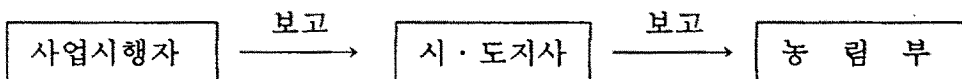
○공사발주 : 시장·군수

### (2) 공정계획

○수립자 : 시장·군수

○수립방법 : 당해년도 예산규모를 감안 수원공개발 및 이용시설설치로 구분 수립

○수립절차



○효과 : 사업시행자 공정계획 준수 의무

- 공사진도가 공정계획에 미달시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
-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 (3) 시행계획 변경

- 현지역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시행. 단, 지구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4)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협의보상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

### (5) 설계 및 시공

#### <세부설계시 고려사항>

- 정주권개발사업과 동일 지구일 경우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설계 실시
- 각종 시설 및 자재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단가적용 : 농업용지하수 사업비 산정기준(수리 51322-478, '94.10.12)을 참고하여 동일공종의 타공인 품셈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 <지하수기초조사 및 지하수개발영향조사>

- 시장·군수는 국무총리훈령 제304호 “관정의개발·이용에따른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의거 지하수부존량 등에 대한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3조의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토록 함. 다만, 해당지역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영향권역내의 지하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는 등 지하수개발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수원공개발>

-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양수시험 등은 지하수기초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장·군수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지하수조사업무대행기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건설업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전문건설업체에 개발토록 함

- 수원공의 확공위치는 안정수위이하의 심도까지 적합하게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양정길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의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착정 및 우물자재 등 설치후 공내소독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는 반드시 확인
- 수원공개발시(착정)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 등 마을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대표가 날인

※ 수원공개발시에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 지하수의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채수량부족 및 수질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개발을 포기하거나 관정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 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수질검사 : 수원공개발후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법 관련규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항목검사를 실시
  - 검사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견시에는 관정시설을 폐쇄하거나 농업용수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토록 하고, 대체시설을 개발 추진.
  - (별표1)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
  - 가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이 미설치된 지구의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지구에 한하여 이용
  - 이용시설설치후 생활용수를 공급하기전에 반드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항목검사를 재실시하여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용수공급

#### < 이용시설설치>

- 이용시설은 정비51370-246('95.7.21)호로 시달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 설계요령”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
  - 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하도록 충분히 높은 곳에 설치하되 동파 및 수온변화가 없도록 설치하고, 규모는 지역실정에 맞는 용수사용량(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을 고려하여 결정(예 : 도시지역 1일 용수사용량 : 450 ℓ/인)
  - 송·배수관 등은 동결심도 이하 및 증차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정수시설 설치비는 최고 1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되는 비용은 지방비 등을 투입토록 함.

## (6) 공사감리

- 시장·군수는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가능함

## (7) 사업준공

- 공사완료후 계약서, 설계서 등 이행여부 확인 검사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관정 등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 사. 사업비 지원

### (1) 예산의 지원

- 1개소당 170백만원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 50%

### (2) 자금의 운용관리

- 도지사는 지구여건을 감안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구간 조정시행 가능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관리자 : 시장·군수
  - 수도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적격자(시·군 수 도과 등)와 수혜주민 대표자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시설물을 관리

- 관리방법 : 시설물의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비치
  - 수혜자 자율조직을 유도하여 관리
- 관리비용 등 : 시장·군수가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 적립조치 (지역주민 의견 반영)
- 수질검사 : 관련규정에 의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조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대장균군수·암모니아성질소 및 질산성질소에 관한 검사는 매분기 1회이상, 별표1의 전항목검사는 매년 1회이상 실시 (검사비용은 시·군 부담)
  - 개발완료후 이용시설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대체시설 개발등 사후조치후 결과보고
  -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2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거 시행
- 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 실시,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지원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 활용)
- 시설물보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시설 안내판 등 제작설치. 특히, 양수장, 물탱크, 염소소독기 관리 철저

## 나. 보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매년 8.30까지
- 사업시행인가 결과 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공정계획수립 결과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매월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 시장·군수는 매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종료후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기타

-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실시요령,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수도법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기준 등 제규정을 적용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면단위이하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중 우물,하천수등 자연수 이용마을
- 간이상수도 이용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다. 신청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라. 구비서류

- 생활용수개발 신청서
- 위치도
- 시설현황 및 생활용수대상 현황



[별표 1]

##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생물에 관한 기준(2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세균	100CFU/ml	하수오물, 폐기물,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수처리 효율의 지표로 이용되며, 세균에 의한 오염여부의 판단자료
2 대장균군	불검출/50ml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지표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10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납(Pb)	0.05mg/ℓ	안료, 도료, 활자제조업, 연관제조업, 인쇄공장, 유리제조공장 등의 폐수 및 납관에서의 유출	0.5mg/day이상 섭취시 축적성 만성중독 - 정신착란, 심근다비, 악성빈혈 급성중독 - 복통, 구토, 소아 : 신경, 면역장애
4 불소(F)	1mg/ℓ	지하수중의 천연상태(불소인회석), 살충제, 방부제, 불소화학	1mg/ℓ 이하 - 충치예방효과 만성중독(1mg/ℓ 이상) - 반상치 신장: 지방산산화효소활성저하, 간 : 질소, 지방함량 감소
5 비소(As)	0.05mg/ℓ	광산제련공업, 의약품 및 비소계 살충제 제조공장 폐수, 안료 및 도료공업 유기, 무기상태(3, 5가 : 독성크다)	만성중독(0.21mg/ℓ 이상) - 수족 지각장애, 수족각화증, 빈혈, 흑피증, 손톱, 모발의 위축, 급성중독(성인 : 5~50mg섭취) - 구토, 설사 100~150mg : 경구치사량
6 세레늄(Se)	0.01mg/ℓ	전기부품(광전지), 정류기제조에 이용	위장장애, 피부의 황달성착색, 치아장애, 위장관으로 93%흡수, 알칼리병, 혈운증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은(Hg)	불검출	8소다공업, 농약제조, 수 은정제공장, 도료공장폐 수, 폐건전지 무기상태(1,2가염: 15% 흡수), 유기수은(메틸수 은 : 미생물에 의해 생 성, 100%흡수되어 먹이 사슬에 축적)	만성중독: 언어장애, 지각이상, 신경쇠약, 난청유발, 생식선 자극(돌연변이) 급성중독: 위장병, 구내염, 신장장애(단백뇨) 유기수은이 축적된 담수어의 섭취(일본 : 미나마타병)
8	시안(CN)	불검출	도금공장, 가스공업, 코 크스공장, 정유공장 등 폐수 염소처리에 의한 무해 한 시안산염으로	세포호흡저해, 질식성경련, 의 식장애, 뇌의 젖산함량증가로 인한 혼수상태와 뇌손상 50~60mg : 경구치사량 0.05mg/l 이상 : 물고기에 유해
9	6가크롬 (Cr)	0.05mg/l	염색공업, 피혁제조, 석 유화학공업, 도금공장폐 수	만성중독- 피부궤양, 폐암유발 급성중독- 미각장애, 위장염 0.1mg/l : 음용수로서 유해
10	암모니아 성 질소 (NH <sub>4</sub> -N)	0.5mg/l	가정하수, 산업폐수, 동 물배설물, 비료, 폐기물	
11	질산성 질소 (NO <sub>3</sub> -N)	10mg/l	의 침출수, 자동차 및 연소기관, 대기중의 낙 진, 토양내의 유기물질	유아 : 10mg/l 이상의 물과 우 유는 청색증(Blue Baby)유발 (Methemoglobinemia : 혈액과 반응하여 호흡장애)
12	카드뮴 (Cd)	0.01mg/l	광산(강내수의 산성화에 의한 용출), 광재, 습식 제련공정중 가용성염의 용출, 도금공장폐수 및 급수설비에 의한 오염	간, 신장, 갑상선, 뼈에 축적 만성중독 - 내분비, 칼슘대사, 신장, 위장장애, 골연화증 카드뮴에 오염된 쌀의 섭취(일 본 : 이따이 이따이병)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15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3	페놀 (C-H-OH) 0.005mg/ℓ	석탄, 석유정제, 도시가스, 제약, 페놀계 합성수지공장폐수, 살충제의 미생물 분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 생성(독성보다 악취가 문제) 만성중독 : 중추신경계 마비
14	총트리할로메탄(THM) CHCl & CHBr Cl & CHBr 0.1mg/ℓ	자연유기물(폴빈산, 휴민산)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발암성물질(THM) 생성	발암성 물질 만성중독 - 불안, 불면, 흥분, 간위축, 신장장애 급성중독 - 중추신경계 마비, 피부탈지
15	다이아지논 0.02mg/ℓ	유기인제 농약물질, 살충제 합성제조, 석유제품 촉매	맹독성, 발암성물질, 신경과 뇌신경계 마비증상, 근육경련
16	파라티온 0.06mg/ℓ		
17	말라티온 0.25mg/ℓ		
18	페니트로티온 0.04mg/ℓ		
19	카바릴 0.07mg/ℓ		구토, 설사, 기관지수축, 경련, 시력감퇴, 혼수, 호흡곤란
20	1,1,1-트리클로로에탄 C H Cl 0.1mg/ℓ		눈 점막자극 고농도 : 마취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C Cl 0.01mg/ℓ	금속탈지공업, 드라이클리닝 용매, 염소화탄산수소류생산공장	중추신경계 억제, 불쾌감, 마취 고농도 : 의식불명, 반사기능저하, 간장장애, 다발성신경염, 간종양유발(새앙쥐)
22	트리카로로에틸렌(TCE) ) C HCl 0.03mg/ℓ	금속산업 : 비윤활용매, 드라이클리닝 용매, 식품추출용매, 흡입마취제	급성중독 - 중추신경계억제, 두통, 간장해, 관절이상 간종양유발(새앙쥐)
23	디클로로메탄 CH Cl 0.02mg/ℓ		
24	벤젠 CH 0.01mg/ℓ	화학공장 : 페놀, 사이크로헥산 생산의 중간물질	만성중독 : 빈혈, 백혈구감소, 면역기능저하
25	톨루엔 C H CH 0.7mg/ℓ	공업: 플라스틱, 페인트 경화제의 합성을 위한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기형, 발암, 변이성은 없음
26	에틸벤젠 C H C H 0.3mg/ℓ	중간물질이나 용매, 기체 코크생산의 부산물	현기증, 호흡곤란
27	크실렌 CH <sub>4</sub> (CH <sub>3</sub> ) <sub>2</sub> 0.5mg/ℓ		메스꺼움, 구토, 의식불명 유발, 신장 및 간장손상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15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28	경도	300mg/ℓ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서 유래(Ca, Mg, Sr, Ba)	세탁, 보일러용수 장애 다량존재시 불쾌한 맛
29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ℓ	폐기된 유기물	유기물 오염정도 지표
30	냄새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이외는 무미	용수원의 수질변화, 물처리공정의 결함, 급수관의 화학적 부식, 미생물 성장을 암시	
31	맛	무취		
32	동(Cu)	1mg/ℓ	동제련공장, 금속표면(도금)업소, 수도용 동관	1mg/ℓ : 청색, 착색 1.5~3mg/ℓ : 금속성 맛 5mg/ℓ : 짙은 맛 80~170mg/ℓ 섭취 : 간장장애
33	색도	5도	미생물, 플랑크톤의 번식 용해성물질, 오수 등의 혼입	심미적 나쁜 영향
34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	0.5mg/ℓ	합성세제	1.0~1.5mg/ℓ : 기름기있고, 생선 냄새 규제이유 : 맛, 거품
35	수소이온농도(PH)	5.8~8.5	알칼리폐수 또는 산폐수	낮은 PH : 수도시설의 부식 높은 PH : 쓴맛, 미끈미끈한 느낌, PH8.0이하에서 염소소독이 효과적
36	아연(Zn)	1mg/ℓ	광산제련공업, 지하수중 천연유래	20~30mg/ℓ : 금속맛, 짙은맛 급성중독 : 구토, 탈수, 근육조절불능, 전해질 불균형
37	염소이온(Cl)	150mg/ℓ	세균소독을 위해 투입	불쾌한 맛, 부식유발
38	중발잔유물	500mg/ℓ	맛, 경도, 부식성에 영향	급수시스템의 부식, 스케일 형성
39	철(Fe)	0.3mg/ℓ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수중에서 천연유래	0.3mg/ℓ : 황갈색, 적갈색 0.5~1mg/ℓ : 금속성맛 급성중독 - 설사, 구토, 혈액중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40	망간(Mn)	0.3mg/ℓ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 수중에서 천연유래	0.05mg/ℓ : 흑색, 흑갈색 0.5~1mg/ℓ : 금속성맛 56mg/ℓ : 개의 치사량
41	탁도	2도	가정 및 산업용수의 일 반적인 수질오염지표	살균소독방해, 유기체에 의한 질병감염 우려, 부유물질의 함유 의미
42	황산이온 (SO <sub>4</sub> ).	200mg/ℓ	산업폐수, 대기방출, 화 석연료의 연소	1000mg/ℓ : 설사유발 알카리도 낮은 물에서 급수계 금속부식
43	알루미늄 (Al)	0.2mg/ℓ	산업폐기물, 광물, 토양 침출, 응집처리	0.1mg/ℓ 이상 : 변색(퇴색) 경구섭취시 거의 배설(배제외), 호흡기흡입시 허파와 임파선에 축적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시행인가 결과) 보고**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개발공수	급수대상							사업비			선정기준		수맥조사		비고	
		군	면	리		생활용수			관개용수		축산수산공업용수	계	국고	지방교부세	기타	정주권지구	일반지구	실시	미 실시		
						총이용량	이용량	가구수	급수인구	이용량											답작
계					공	m <sup>3</sup> /일	m <sup>3</sup> /일	호	명	m <sup>3</sup> /일	ha	ha	m <sup>3</sup> /일								

- ※ 1. 생활용수는 250 l -300 l /인/일 기준
- 2. 개발공수는 필요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1지구당 사업비(수원공 및 이용시설)는 170백만원 계상
- 3. 선정기준, 수맥조사란은 해당량에 ○표
- 4. 비고란에는 기타 참고자료 기재
- 5. 1:25,000 지형도 원도에 지구위치 표시(도면을 자르지 말것)

[별지 제2호서식]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정계획

○○군 ○○면 ○○마을

사업시행년월일 :

착공년월일 :

(단위 : 천원)

과 목	승인액		○○년도 까지			년도계획		년도이후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공정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수원공	공													
○이용 시설	m' m'													
-양수장														
-물탱크														
-송수관	m													
-기 타														
○용지 매수 및 보 상비														
○측량 설계비														
○공사 감독비														
○관리비														
○기 타														

[별지 제3호서식]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진도보고

지구명	위 치			급 수 계 획				사업계획			사 업 비			진 도		특기사항			
	군	면	리	생활용수		관개용수		기타용수	개발공수	배수지	송배수관	계	국고	지방교부세	기타		계	수원공시설	이용시설
				가구수	인구	답작	전작												
				호	인	ha	ha		공	m'	m								



[별지 제4호 서식]

### 지하수개발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지구명:      위치:      도    군    면    리    지번:      관리자: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이용현황	○ 급수면적 :      ha - 답       :      ha - 전       :      ha ○ 생활용수 :      호(   명) ○ 기타용수 :			
주 요 시 설 내 용				
○ 착 정				
- 관 정 : 구경    m/m, 심도    m				
- 양수량 :        m <sup>3</sup> /일				
- 우물자재설치 : 파이프        m, 유공관        m				
- 수 위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 이용시설				
- 물 탱 크 :        m <sup>3</sup>				
- 양 수 장 :        평				
- 송 · 배수관 :     m				
○ 시공업체				
○ (수중)모타펌프				
- 구경 (    )m/m, 설치심도 (    )m				
- 마력 (    )HP				
- 제품명 :				
주 상 도				
심 도	층 후	주상도	지 질	비 고
m	m			

○ 오염방지시설 조치현황

구 분	규 격
상부보호공	높이 : cm, 가로 : cm, 세로 : cm
	지표면에서 보호공까지의 거리 : cm
케 이 싱	구경 : cm, 심도 : m
그라우팅처리	처리심도 : m, 처리두께 : cm
기 타	우물자재 및 관정내 소독여부 (○, ×)
	유량계 설치 (○, ×)
	출수장치 설치 (○, ×)
	지하수위 측정관 (○, ×)
	상부보호경 반경 1m내 경사도 : 도

○ 수질검사 실시현황

실시일자	검사의뢰기관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결과 조치사항

- 주) 1.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 작성  
 2. 조치사항란은 불합격시 조치사항을 기재

○ 이용현황 및 수위측정현황

이 용 현 황			수 위 측 정 결 과		
년·월·일	이용량(톤)	기록자	측정일자	수위(EL.m)	측정자

[별지 제5호 서식]

##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 1. 검사결과 총괄

시·군	시설수 (개소)	급수인구 (명)	검체수 (개)	검사결과(개)		비 고 (검사미 실시 건수, 사유)
				적 합	부적합	
계						
○○시						
○○시						
○○군						
○○군						
○○군						

### 2. 부적합 내역

지구명	소재지	1일 평균 이용자수	부적합 항목 및 검사결과	조치내용	비 고

<참고>

## 【시설기준】

### 수 도 법

제13조(시설기준등)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의 질·량,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수도용자재 및 시설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수도법시행령

제18조(시설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의 질·양 및 지리적 조건과 당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필요한 양의 양질의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2. 갈수기에도 필요한 양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3. 필요한 양의 원수를 송수할 수 있는 펌프·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4. 필요한 양의 원수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정수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 등의 정수시설을 갖출 것.
5. 필요한 양의 정수를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기타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
6. 필요한 양의 정수를 일정한도이상의 압력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 기타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②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하되, 공업진흥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제조된 수도용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단체표준의 승인을 얻어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수도용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음용수에 사용하는 수도용자재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수도시설의 위치 및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④수도시설은 수압·토압·지진 기타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의 오염 또는 누수의 염려가 없어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시설기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은 계획된 취수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고, 취수원의 유심변화나 하상상승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저수시설은 취수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 설치하고 득을 쌓는 곳과 저수지 밑의 지반이 견고할 것.
3. 하천·호소 또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수시설에 여과지를 설치할 것.
4. 송수시설은 원칙적으로 관수로로 하여야 하되,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질이 견고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수로로 대체하여 설치할 것.
5. 급수구역 지반의 높낮이가 심한 경우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구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되, 배수시설에는 배수지·감압밸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정한 수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국무총리훈령 제304호 ('94.11.12)

관정의개발·이용에따른지하수오염방지를위한업무처리지침

제3조(지하수의 기초조사) 농림수산부장관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 부존량 등에 대한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 등을 통한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공공관정을 개발하기로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관정 개발가능지역)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공공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

1. 농림수산부장관·상공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에 의하여 지하수조사가 완료된 지역
2. 시장·군수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지하수조사를 의뢰하여  
조사가 완료된 지역
  -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중 한국자원연구소
  - 나.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 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5조(지하수개발 영향조사) ①시장·군수는 공공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하여 제4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점에서  
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영향권역내의 지하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  
거나 수질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영향권역내의 지하  
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는 공공관정을 개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하수의 보전조치) 시장·군수가 공공관정을 개발하여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상부보호공은 콘크리트제품으로 가로·세로·높이는 각각 100cm이상, 두께는 15cm이상의 크기로 하며, 상단부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cm이상 높게 설치한다.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깊이는 3m이상으로 설치하며, 암반층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선까지 설치한다.
3.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외부의 그라우팅은 두께 5cm 이상이 되도록 하며, 차수용시멘트로 밑에서부터 충전한다.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주변 반경 1m이내의 경사도는 10도이상으로 한다.
5.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시의 굴착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파쇄물질·착정용수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한다.
6.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내에 적산유량계·출수장치 및 지하수위 측정관을 설치한다.

제7조(지하수관리실태의 점검) 시장·군수는 관할지역내에서 개발·이용되는 관정으로서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관정에 대하여 오염방지조치 등의 관리실태를 매년 2회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번호
2. 위치
3. 개발연도
4. 관정개요(심도·구경·양수량 및 용도)
5. 시공업체명
6. 관리책임자 직·성명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사항별 조치현황
8.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른 연도별 수질 변동상황

제8조(공공관정개발포기 및 폐쇄시의 조치) 시장·군수가 공공관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한 후 채수량 부족등으로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관정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굴착 깊이까지 불투수성재료(시멘트슬러리등)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공매작업)한다.
2. 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호벽(케이싱)이나 유공관(파이프)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이를 제거한 후 토지굴착 깊이까지 불투수성재료(시멘트슬러리등)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공매작업)한다.

제9조(폐쇄공공관정의 관리) 시장·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처리하는 관정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관리번호
2. 위치
3. 관정개요(심도·구경 및 양수량)
4. 시공업체명
5. 폐공발생연월일
6. 폐공사유
7. 폐공처리연월일
8. 폐공처리방법(폐공처리과정에 대한 사진 첨부)
9. 확인자 직·성명



〈참고〉

## 【공사감리】

### 수 도 법

제14조(수도공사기술자의 배치)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공사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수도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독자의 자격)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공사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졸업후 2년이상 토목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2년이상 수도와 관련된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 수도법시행규칙

제7조(수도공사감독자의 자격) 영 제1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참고>

## 【시설관리】

### 수 도 법

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장치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수도법시행령

제22조(수도시설관리자)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1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5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3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4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2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8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4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10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7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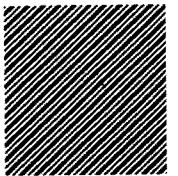
②시설용량이 1일1천톤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당해 수도가 소독설비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도법시행규칙

제9조(수도관리자의 자격)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당해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 여 백

# Ⅵ. 기 타 사 업



#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정기획과입니다.

## 1. 목 적

- 국가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의 노고위로 및 자긍심 고취
- 농업발전을 위한 온 국민의 일체감 조성

## 2. 추진방향

- 농업관련행사의 통합실시로 농업인 축제분위기 유도
  - “농업인주간”설정 : 농업인의 날(11.11)을 전후한 각 2주일
-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자발적 참여유도
- 중앙단위 행사와 지역별 행사를 병행하여 전국민 화합의 장 마련
-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 구성

## 3. 근거법령

-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96.5.30, 대통령령제15005호)

## 4.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중앙단위행사 : 기념식, 식품대축제등 행사와 우수농업인에 대한 포상실시
- 지역별행사 : 전통민속행사, 권농행사, 문화·체육행사등 지역별 자체실정에 맞는 행사계획을 세워 “농업인주간”내에 실시

### <지원계획>

- 국고보조 : 500백만원(중앙단위행사 소요비의 일부에 대해 정액지원)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림 부 :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정기획과 02)503-7261~3